

| SRI-기본-2017-11 |

수원시 불평등도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income Inequality in Suwon

조용준

국문 요약

연구진

| | |
|-------|--------------------|
| 연구책임자 |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 참여연구원 | 신지윤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및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대되어왔다. 최근 한국의 지니계수는 0.3 초반~0.2후반대로서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꾸준히 기록해왔지만 90년부터 장기시계열을 살펴보면 지니계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현실의 체감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고소득층의 과소대표와 신고누락의 문제가 발생하는 불평등 지표 측정에 관한 이론적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소득불평등을 넘어 자산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전세계적으로 대두되었다. 토마 피케티 같은 논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적되어가는 자산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산 및 소득 등의 경제적 불평등이 보건, 교육, 환경, 여가, 정치참여 등 여러 생활상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다. 이처럼 불평등 문제는 글로벌한 이슈이다. 이에 지자체와 지역 차원에서도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그 동안 주류 및 비주류 경제학에서 제기된 불평등에 대한 이론과 측정방법 및 그 쟁점들을 망라하고, 자영업자의 빠른 붕괴의 탓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일부를 노동소득으로 처리한 실질적인 노동소득분배율 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었다는 분석을 전개하며 아울러 지니계수의 측정방법과 지니계수가 갖고 있는 분배론적 함의를 더 깊이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2014~5년 수원시 사회조사에 기초하여 수원시 내의 지니계수를 분석하고 수원시 내에서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의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가진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지니계수, 노동소득분배율, 불평등, 양극화, 수원시

© 2017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7년 10월 31일
발행 2017년 10월 31일
디자인 아이콘커뮤니케이션 Tel. 031-245-5500
ISBN 979-11-87778-83-7 (9332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조용준. 2017. 「수원시 불평등도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 차례 |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 1. 연구의 배경 | 1 |
| 2. 연구의 목적 | 4 |
| 3. 연구의 한계 | 4 |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
| 1. 연구범위 | 5 |
| 2. 연구방법 및 내용 | 5 |
| 제2장 소득 불평등 이론 및 측정 방법 | 7 |
| 제1절 소득 불평등에 관한 기존 학설 | 7 |
| 1. 고전학파의 견해 | 7 |
| 2. 쿠즈네츠의 U자 가설 | 8 |
| 3. 마르크스 및 비주류 경제학의 이론 | 8 |
| 4. 피케티의 이론 | 17 |
| 제2절 소득 불평등 측정 방법론 | 22 |
| 1. 소득 양극화 지수 | 22 |
| 2. 소득 불평등 지수: 지니계수와 로렌츠 곡선 | 28 |
| 3. 그 외의 소득 불평등 지수 | 30 |
| 제3절 노동소득분배율과 불평등 지수 | 35 |
| 1. 노동소득 분배율 측정의 쟁점 | 35 |
| 제3장 지역사회 불평등 연구 | 43 |
| 제1절 지역사회 불평등에 관한 선행연구 | 43 |
| 제2절 지역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 | 46 |
| 1. 환경 | 46 |
| 2. 건강 | 49 |
| 3. 교육 | 54 |
| 4. 주민참여 | 56 |

| 표 차례 |

| | |
|-----------------------------------|-----|
| 5. 행복도 | 59 |
| 제3절 총론 | 63 |
| 제4장 소득 불평등 현황 분석 | 65 |
| 제1절 대한민국 소득 불평등 현황 | 65 |
| 1.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소득분배율 | 65 |
| 2. 외환위기 전후의 소득 집중도 | 66 |
| 3. 외환위기 전후의 지니계수 | 68 |
| 4. 국제적 비교 및 쟁점 | 69 |
| 제2절 경기도 및 수원시의 소득 불평등 | 74 |
| 1. 경기도 시군 간 소득 격차 | 74 |
| 2. 수원시 가구 소득분포 현황 | 75 |
| 3. 수원시의 행정구별 지니계수와 지역격차 | 96 |
| 제5장 수원시의 소득격차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101 |
| 제1절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01 |
| 1. 소득과 환경의 관계 | 101 |
| 2. 소득격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02 |
| 제2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 | 104 |
| 제3절 교육에 미치는 영향 | 105 |
| 제4절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 108 |
| 제5절 행복에 미치는 영향 | 112 |
| 1. 소득과 행복의 관계 | 112 |
| 2. 소득격차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 113 |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15 |
| 제1절 요약 | 115 |
| 제2절 결론 | 119 |

| | |
|--|----|
| <표 2-1> 성장 체제의 유지 가능성 | 16 |
| <표 2-2> 본원소득의 경제주체별 구성 | 37 |
| <표 2-3> 요소비용국민소득 도출 과정 | 38 |
| <표 2-4> 제도부문별 국민소득의 구성 | 39 |
| <표 2-5> 수원시 사회조사 소득유형별 설문문항 | 39 |
| <표 3-1> 지역사회 소득불평등도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 44 |
| <표 3-2>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에 대한 실증연구 사례 | 47 |
| <표 3-3> 소득불평등과 환경에 관한 주요 실증연구 | 49 |
| <표 3-4> 소득불평등이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51 |
| <표 3-5>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관한 주요 실증연구 (해외사례) | 52 |
| <표 3-6> 주민참여의 정의 및 유형 | 58 |
| <표 3-7> 시나리오별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 간의 관계 | 62 |
| <표 3-8> 지역사회 소득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정리 | 63 |
| <표 4-1> 노동소득분배율(1953~2016) | 65 |
| <표 4-2> 우리나라 상위 소득 비중 (1979~2010) | 67 |
| <표 4-3> 국가 지니계수와 경기도 지니계수 | 74 |
| <표 4-4> 수원시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 76 |
| <표 4-5> 장안구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 79 |
| <표 4-6> 권선구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 80 |
| <표 4-7> 팔달구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 81 |
| <표 4-8> 영통구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 82 |
| <표 4-9>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별 현황: 가구수 | 84 |
| <표 4-10>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별 현황: 가구비율 | 85 |
| <표 4-11>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별 현황: 총소득 | 86 |
| <표 4-12>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별 현황: 소득비율 | 87 |
| <표 4-13>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별 현황 요약: 가구수 | 88 |
| <표 4-14>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별 현황 요약: 가구비율 | 88 |
| <표 4-15>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별 현황 요약: 소득 | 89 |
| <표 4-16>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별 현황 요약: 소득비율 | 89 |

| | |
|---|-----|
| <표 4-17> 재산소득의 소득구간별 가구수 및 비중 | 90 |
| <표 4-18> 자산소득의 소득구간별 가구수 및 비중 | 92 |
| <표 4-19> 근로(사업)소득의 소득구간별 가구수 및 비중 | 93 |
| <표 4-20>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 분포 | 95 |
| <표 4-21> 2015년 수원시와 대한민국 지니계수 | 97 |
| <표 4-22> 2015년 수원시 및 수원시 각 구의 지니계수 | 99 |
| <표 5-1> 2015년 수원시 사회조사(가구원) - 교육정도 | 105 |
| <표 5-2> 행정구(區)별 학력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2015) | 107 |
| <표 5-3> 행정구(區)별 제6회 시·도지사선거 투표율(2014.6.) | 109 |
| <표 5-4> 행정구(區)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2016.4.) | 109 |
| <표 5-5> 제6회 시도지사 선거 투표율 VS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 110 |
| <표 5-6> 정당(정치단체)활동 참여 정도(2014) | 110 |
| <표 5-7> 행정구(區)별 행복도(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과 표준편차(2015) | 113 |

| 그림 차례 |

| | |
|--|----|
| <그림 2-1> 주요 선진국의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 10 |
| <그림 2-2> 유효수요 이론: 칼레츠키 모형 | 12 |
| <그림 2-3> 소득과 부의 상위 10% 비중의 장기 추이 | 18 |
| <그림 2-4> 유럽과 미국의 자본/소득 비율(β)의 추이 | 19 |
| <그림 2-5> 부유한 국가들에서의 자본소득분배율 | 20 |
| <그림 2-6> 전 세계 경제성장률과 자본수익률(세후)의 장기추이 | 21 |
| <그림 2-7> 양극화의 예시(Wolfson, 1994) | 22 |
| <그림 2-8> Wolfson 지수(김현호, 2007) | 23 |
| <그림 2-9> Extended-ER지수(김현호, 2007) | 27 |
| <그림 2-10> 로렌츠 곡선(김현호, 2007) | 28 |
| <그림 2-11> 지니계수(김현호, 2007) | 29 |
| <그림 2-12>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과 보정된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 42 |
| <그림 3-1> 환경쿠즈네츠곡선 개념도 | 46 |
| <그림 3-2> 소득과 기대여명 사이의 이론적 관계 | 50 |
| <그림 3-3> 소득증가와 행복의 관계 (美, 1972~2006) | 60 |
| <그림 4-1> 노동소득분배율(1953~2016) | 66 |
| <그림 4-2> 소득 집중도(1979~2010) | 68 |
| <그림 4-3> 지니계수 (1990~2016) | 68 |
| <그림 4-4> OECD의 노동소득분배율 국제비교 (1990~2009) | 69 |
| <그림 4-5> 요소비용 국민소득의 구성항목별 비중 (%) | 70 |
| <그림 4-6> 상위1%의 소득 집중도 국제비교 (1913~2010) | 71 |
| <그림 4-7> OECD 19개 국가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1970~2012) | 72 |
| <그림 4-8> OECD 19개 국가의 상위 1% 소득 집중도 | 73 |
| <그림 4-9> 우리나라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1990~2012) | 73 |
| <그림 4-10> 수원시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 77 |
| <그림 4-11> 수원시와 전국 2인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 78 |
| <그림 4-12> 수원시 장안구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 79 |
| <그림 4-13> 수원시 권선구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 80 |
| <그림 4-14> 수원시 팔달구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 82 |

| | |
|---|-----|
| <그림 4-15> 수원시 영통구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 83 |
| <그림 4-16>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재산소득 분포 | 91 |
| <그림 4-17>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자산소득 분포 | 92 |
| <그림 4-18>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 분포 | 94 |
| <그림 4-19>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 분포 | 95 |
| <그림 4-20> 수원시 행정구별 지니계수 | 98 |
| <그림 5-1> 소득수준별 환경수도실천운동 참여의향 | 101 |
| <그림 5-2> 환경수도실천운동 참여 의향(2015) | 102 |
| <그림 5-3> 환경보전(마을청소) 등 관련 봉사활동 참여 비율(2015) | 103 |
| <그림 5-4> 환경보호활동 참여 비율(2014) | 103 |
| <그림 5-5> 각 행정구(區)별 주관적 건강상태(2014) | 104 |
| <그림 5-6> 수원시 및 행정구(區)의 학력수준별 분포(2015) | 106 |
| <그림 5-7> 행정구(區)별 사교육 참여율(2014) | 107 |
| <그림 5-8> 행정구(區)별 선거투표율 | 108 |
| <그림 5-9> 행정구(區)별 정당(정치단체)활동 참여율(적극참여)(2014) | 111 |
| <그림 5-10> 행정구(區)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2015) | 111 |
| <그림 5-11> 소득수준별 행복도(2015) | 112 |
| <그림 5-12> 행정구(區)별 행복도(평균)(2015) | 113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사회적 불평등의 대두

작금에 회자되는 흙수저, 금수저, 헬조선 등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는 신조어들이다. 불평등 문제의 확산은 사회에서 심각한 계층갈등을 유발시키며 사회적 불만으로 확대되어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대립과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불평등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며 그 중 소득불평등은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변수들과 더해져 삶의 질 문제에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구주제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사회에는 여러 차원의 불평등 문제들이 존재한다. 보건·의료, 환경, 안전, 교육, 소비, 부채, 행복도, 주민참여 등에 대한 여러 불평등 문제가 존재하며 경제적 불평등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배후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했다(스티글리츠, 2013).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법 체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수원시처럼 시정의 주민참여를 천명하는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시정참여 동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비단 스티글리츠 뿐 아니라 여러 선행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유사한 시각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들의 견해를 토대로 우선 수원시의 경제적 불평등도 연구를 실시하며 이런 연구가 시민들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외환위기 이후 증대한 불평등에 대한 경각심

다수의 연구자들은 한국사회에서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한 시점을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지목했다. 외환위기 이후 서민대중 및 노동자 계급이 느끼는 경제적 불평등은 체감상으로 악화되었으며, 실제로 2015년 한국의 지니계수(OECD, 가처분소득 기준)는 0.295로 OECD 국가 중에 중위권을 기록했다.

이 지표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동향조사(통계청)에 기반을 둔 것으로써

2006년부터 조사했기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 시점의 지니계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2006년 이전에는 지니계수를 전혀 측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른 조사를 통한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도시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측정한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가 있다. 그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지니계수는 0.257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2009년에는 0.295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으며 그 후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5년 현재에는 0.269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며,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소득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소득불평등 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불평등 측정방법과 이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지니계수 측정방법은 설문조사(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신고 되는 조세자료와 달리 고소득층 및 초고소득층의 소득이 누락되거나 과소측정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김낙년(2016)은 기존의 지니계수 측정에서 누락된 고소득자들의 소득, 금융소득, 이전소득과 조세연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을 국세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및 보정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안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홍민기(2013) 역시 가계동향조사와 국세통계 자료를 결합해서 소득분포를 현실에 가깝게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실제로 피케티와 사에즈(Piketty & Saez, 2003)는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상위 집단을 각각 10%, 1%, 0.1%로 나누어 상위소득자들의 소득 집중도라는 지표를 개발하여 국제적이고 장기적인 소득분배현황 비교를 실시했다. 김낙년(2012)은 이 지표를 바탕으로 1976년~2010년 동안 한국사회에서의 소득불평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이 기간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자본과 노동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소득불평등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는 학설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그 중 피케티(2014)는 소득이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노동과의 대체탄력성이 높은 자본이라는 존재의 특성상, 자본의 보수(이윤)에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축적이 진행될수록 전체소득 중 자본소득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자본의 축적이 진행될수록 이윤의 상승세가 꺾이며 노동-자본의 소득 몫은 역사적으로 일정하다는 기존의 학설과 배치되는 이론이다. 또한 전병유(2015)는 고소득층에서 자본소득의 비중이 높은 사회경제적 특성상 자본에게 유리한 소득분배(자본소득분배율의 상승)는 전반적인 분배 지표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3) 글로벌 이슈로서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큰 관심이 모아졌으나,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시기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2007~2008년) 이후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피케티(Thomas Piketty, 2014),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2013),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ć, 2017), 앳킨슨(Anthony B. Atkinson, 2015) 등 소득분배를 연구하는 여러 경제학자들에게 연구주제를 제공하였다.

국내에서는 전병유(2016) 등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일례로 『한국의 불평등 2016』에서는 소득, 자산, 교육, 지역, 정치 5개의 영역에 걸쳐 불평등 문제를 분석하였다. 위에 언급된 5개 영역 가운데 ‘지역’ 불평등 문제에서는 주로 지역 간 소득 격차 및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4) 지자체 차원의 불평등 연구의 필요성

기존의 지역 불평등 문제가 주로 ‘지역 간’ 불평등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윤형호·임병인(2012)은 ‘직업고용조사’에서 서울시를 여러 권역으로 나누어 2001~2009년 동안 권역 간 소득격차와 권역 내 소득불평등을 연구하였다. 또한 김태형·권세원·이윤진(2012)은 서울시민의 개인 및 지역효과에 의한 건강불평등도를 측정하였다. 서울특별시 제외하고는 광역단위에서조차 지역 간 불평등 문제를 다룬 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충남지역 내 시·군 GRDP 자료를 이용하여 충남지역 내 지역 간 불평등 연구를 수행한 임병철(2012) 정도를 제외하면 광역단체조차도 개인의 소득 및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적인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시와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 지역 내 불평등연구가 진행된 적은 있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역 간 불평등 문제는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 자료부족이다.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매우 민감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집 자체가 어렵다. 둘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원시와 같은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역 내 소득불평등 및 자산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수원시를 비롯한 몇몇 기초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 통계자료들은 조사 대상들의 소득 현황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지역 내 경제 불평등 문제 연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 선행연구자들이 진행했던 불평등 연구에 대한 학설·이론 및 측정방법을 모두 소개하는 것이다. 특히, 불평등 측정 문제와 이론에 관한 최근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불평등과 관련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지역 차원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경제적 불평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건강, 행복도, 환경, 교육, 정치참여 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원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수원시의 소득 및 재산 불평등 현황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년 실시되는 ‘수원시 사회조사’(수원시)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2014 수원시 사회조사’에는 소득구간에 대한 가구주 설문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2015년부터는 주된 소득원천에 대한 설문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시 내 소득분포는 물론 근로소득 및 자산소득의 분포에 대해 진일보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의 한계

사회조사 통계 자료에 적시된 소득구간에 대한 응답을 통한 소득 불평등 연구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다.

이런 종류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인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신뢰성에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사회조사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소득응답구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는 최상위 소득 구간을 월700만 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극소수이기는 하지만)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 대한 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응답의 신뢰성이다.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자들은 ‘소득’ 항목에 있어서는 항상 과대 계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파악한 국세청의 소득 및 납세 자료가 필요하지만 구득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추진한 이유는 지자체 차원의 경제 불평등 연구는 필요하고 이 연구는 그 효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 및 그 행정구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일부 시계열 자료를 포함하면 보수적으로 2003~2015년이지만 구득가능한 수원시 소득 자료는 2014년과 2015년 두 해로 한정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소득불평등에 대한 이론과 측정방법에 대해서 가능한 많이 살펴본 후, 그 쟁점에 대해서 정리·분석한다. 일부 필요부분만을 발췌하여 소개하지 않는 것은 본 연구가 특정 논지에 대한 논문이 아니라 기본과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원시 사회조사’의 자료를 통해 수원시의 ‘월평균 소득 수준별 분포’, ‘소득 수준별 재산소득의 비중’, ‘근로소득자의 소득수준별 분포’, ‘재산소득자의 소득 수준별 분포’,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및 기타 소득의 비율’ 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 자료를 통해 수원시의 근로 및 재산소득 분포를 국민계정과 비교해볼 것이다.

소득 자료는 수원시 사회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구간평균소득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4개 구별 소득분포를 추정하여 지니계수를 산출한다. 또한 수원시 전체의 소득분포 자료를 통해 수원시 전체와 4개구의 지니계수를 추정·비교한다.

수원시 전체와 4개구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득불평등이 다른 불평등에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불평등이 시민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향후 연구방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원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사회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조언도 포함할 것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불평등 측정방법 및 이론 분석, 수원시의 노동소득 분배율, 소득집중도, 지니계수와 같은 분배지표들에 대한 분석이다. 또한 지역사회 불평등 선행연구 정리·분석내용을 포함하며, 정책제언 및 향후 기초자치단체의 불평등 연구 방향 제시도 포함될 것이다.

제2장 소득 불평등 이론 및 측정 방법

제1절 소득 불평등에 관한 기존 학설

1. 고전학파의 견해

고전학파에서 분배의 문제는 1차적으로 계급 간 소득분배의 문제였다. 고전학파 이론은 자본, 노동, 토지를 통해 창출된 소득은 자본가, 노동자, 지주에게 각각 이윤, 임금, 지대라는 형태로 분배되는 모델에 기초했다. 특히 고전파의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 프루동의 급진파도 불평등의 문제를 이러한 계급 간 분배의 문제로 보았다. 고전학파를 집대성한 데이비드 리카도 역시 계급 간의 소득분배를 ‘정치경제학의 기본 문제’ (The Principle Problem in Political Economy)로 규정한 바 있다. 사회계급과 경제의 문제를 동시에 다룬다는 의미에서 고전학파의 경제학은 ‘정치경제학’ 이라고 명명되었다.

한편, 다수의 고전파 경제학자는 자본축적이 진행될수록 이윤율이 하락할 것이라 예측했다. 아담 스미스가 위와 같은 견해를 채택한 이래로, 리카도는 자본축적의 속도가 토지 생산성을 상회함으로써 지대의 상승으로 인해 이윤율이 하락한다고 생각했고, 일부 고전학파 경제학자는 자본의 축적속도가 인구의 상승속도를 상회함으로써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이윤율이 0에 수렴하는 ‘정상상태(steady state)’로 수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저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소득분배의 문제가 균형점에 도달하는 ‘정상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자본축적이 진행될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으로 해석되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윤율의 하락 때문에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하중으로 인해 붕괴할 것이라는 종말론적 견해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후 한계주의 혁명과 신고전파 경제학이 도래하고 시장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신뢰가 구체화되면서 사회적 소득분배의 문제는 주류 경제학의 관심영역에서 밀려났다. 다수의 주류경제학 모형은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본과 노동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개별경제주체는 완전경쟁적인 요소시장에서 자신이 확보한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만큼 보수를 받으므로 ‘분배문제’란 사실상 이론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이에 대해서 피케티(2014)는 그 동안 주류경제학이 불평등의 문제에서 밀려나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계층과 계급의 관계에 주목하기보다는 대표적 경제주체(Representative agent) 가설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임을 지적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불평등 문제를 경제 분석의 한가운데에 되돌려놓고 19세기에 처음 제기되었던 질문들을 다시 제기했어야 했다.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은 부의 분배를 소홀히 했다”(피케티, 2014).

2. 쿠즈네츠의 U자 가설

한편 주류경제학자들은 지속적인 성장이 장기적으로 소득의 분배를 균형(Equilibrium)으로 수렴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견지해왔다. 대표적인 학설로 ‘쿠즈네츠의 U자 가설’이 존재한다. 1955년 미국경제학회 회장 취임강연에서 ‘일종의 추측’이라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제기된 가설(이연우, 1994)이나, 이는 이후 많은 주류경제학자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경제발전(소득수준) 단계와 소득 분배상태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학설이다. 그의 이름을 빌어 만든 쿠즈네츠 곡선(Kuznets Curve)에 따르면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불평등도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패턴이 존재한다. 이는 역 U자형 곡선(Inverted U-Curve)으로 표현되며,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불평등이 심화되지만 정점을 지나면 자연스럽게 완화된다는 이론이다.

쿠즈네츠 가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사이,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전후(前後)에 OECD 일부 국가에서 나타난 경제성장과 사회구조, 발전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설명력이 높았고 학계에서도 일부 합의점을 이룬 이론이기도 하다. 예컨대 19세기 중반 산업자본주의 초기단계의 국가에서 노동계급은 극심한 빈곤과 산업재해에 시달렸지만 상품시장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생활수준이 증가하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쿠즈네츠 곡선이 모든 국가 및 지역의 불평등 추세에 대해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이론인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쿠즈네츠 곡선은 당시 성장과 분배 모두 호조를 보였던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 (1950~60)에 제출된 가설임에 유의해야 한다.

3. 마르크스 및 비주류 경제학의 이론

1) 프루동의 이론

19세기 프랑스 빈곤층의 극심한 불평등에 문제의식을 느낀 조제프 프루동(Pierre Joseph Proudhon)은 소작료·임대료·지대·이자·이윤 생활자의 안락한 생활에 대해 격렬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불로소득 고소득자들에 대해 “소유는 도둑질이다!” 라는 급진적인 선언을 한다. 무엇보다 프루동은 『소유란 무엇인가』에서 소유의 본질

을 ‘노동을 하지 않고 소득을 벌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한다.

그에게 있어서 소작료·임대료·지대·이자·이윤 같은 소득범주는 ‘불로소득’이다. 프루동은 이를 철폐하고 직접생산자들의 상호주의적(reciprocal)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데서 진정한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평등이 도래할 것이라는 급진적 사상을 표현했다. 이 같은 사상은 바쿠닌과 같은 ана키즘 사상으로 계승되며 ана코생디칼리즘(Anarcho syndicalisme) 노동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는 현대사회의 협동조합, 신용조합, 대안화폐 등 사회적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2) 마르크스의 이론

마르크스 역시 프루동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불평등 문제를 고발한 급진사상가이지만, 마르크스는 생산관계가 아닌 교환관계의 불평등에만 천착한다며 프루동파를 비판했다(『철학의 빈곤』). 대신에 그는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으로서는 임금노동 관계 및 자본이라는 생산-유통의 기본단위에 주목한다. 자본은 가치증식하는 화폐·상품으로서 노동을 고용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운동을 반복하지 않은 한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 이러한 자본의 메커니즘 속에서 존재하는 임금은 노동의 재생산비용이며 이를 통해 발생한 이윤은 노동이 생산한 가치의 잉여(surplus)이다.

이러한 모형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경로는 이윤율, 자본과 노동의 소득분배율, 자본의 축적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경로는 노동의 착취율(주어진 노동에서 얼마만큼의 잉여가치를 뽑아낼 것인가)과 이윤의 축적율(회수한 이윤을 얼마만큼 재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자본의 회전율 등 생산과 유통의 영역에서 보이는 자본의 행태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관점 아래에서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묘사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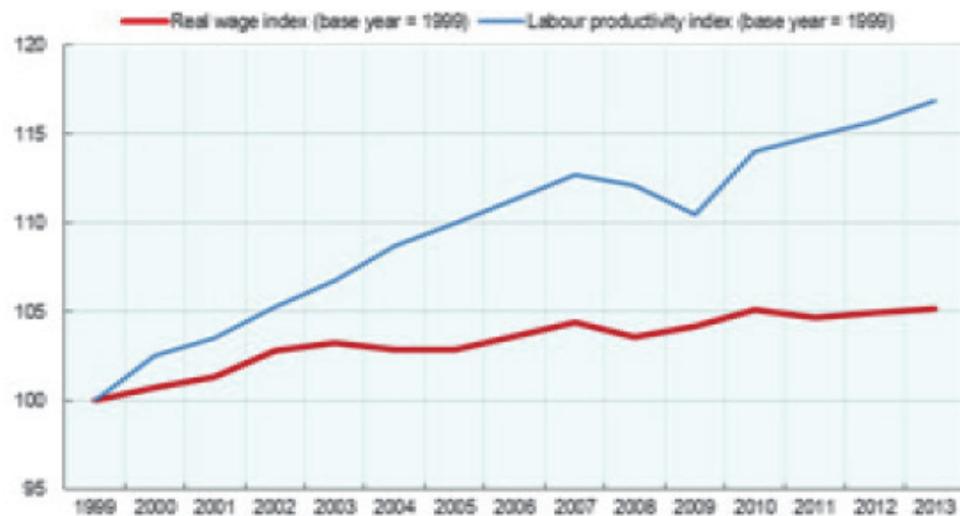
또한 마르크스는 무한한 가치증식을 추구하는 자본이 임금노동(wage labour)에 대한 착취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 주목하며, 자본주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시스템일 수밖에 없고 실물과 금융이 괴리되어 있는 구조임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반복적으로 공황과 정치적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계급에 돌아가게 됨을 지적했다. 결국, 서민대중의 불평등과 삶의 불안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산영역에서 임금노동 관계를 철폐하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입각한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마르크스 사회주의 사상은 ‘과학적 사회주의’로 통용되며 국제사회주의 운동과 일부 급진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쳤으나 결과적으로 불평등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3) 포스트케인즈주의 이론

(1) 포스트케인즈주의 이론의 특징

일부 케인즈주의와 포스트케인즈주의(이하 PK)는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임금과 이윤으로 분할하는 ‘갈등적’ 시스템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표상한다. 노동과 자본은 자신들이 창출한 소득의 분배를 둘러싸고 경합하는 관계인 것이다. 또한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노동 간의 협상에서 서로가 갖는 사회적 힘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나아가 노동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각종 고용관행, 제도, 규칙 등에 의해 얽혀 있다. 이에 따라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노동소득 분배의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주류의 이론과 달리, PK는 자본 친화적 분배가 우세한 경제에서는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주장한다(라부아스톡해머, 2012).

(b)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1999~2013)



자료: 이상현, 2014

<그림 2-1> 주요 선진국의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2) 칼레츠키의 장기 유효수요이론

칼레츠키(Kalecki, 1990)는 자본주의 경제를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구성된 수요 주도적(demand led) 경제를 모형화한 케인즈-마르크스주의적 ‘유효수요이론’을 정식화했다. 유효수요이론이란 국민경제의 안정 상태에서 소비(C)와 투자(I)로 이뤄진 지출(E)의 증

가는 이에 상응하는 고용(L)과 생산(Q) 및 소득(Y)을 증가시킨다는 이론이며, 그 균형은 총 지출과 총소득이 일치하는 상태(E=Y) 또는 자발적 투자와 자발적 저축이 일치하는 상태(I=S)로 정의된다.(박만섭,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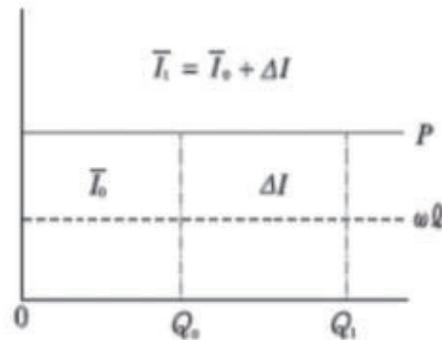
칼레츠키 모형에서 저축과 투자 간의 인과관계는 주류 이론과는 다르게 저축에서 투자가 아닌 투자에서 저축으로 향하게 된다. 후기 케인즈 이론에 따르면 투자는 사전적 저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는 주로 은행신용을 통해 조달된다. 이와 같이 칼레츠키 유효수요이론은 기업의 수요에 따라 은행이 신용창조를 통해 화폐를 공급한다는 내생화폐론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만일 기업의 투자가 귀금속의 양이나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지준금과 같은 양적인 제약에 직면해 있다면 칼레츠키의 유효수요이론은 처음부터 성립하기 어렵다.

칼레츠키의 유효수요이론은 일반적인 케인즈학과 주류경제학의 유효수요이론과도 사뭇 다르다. 주류경제학은 단기유효수요가 통화당국의 화폐공급에 달려있다 생각하고 있으나, 내생화폐론을 지지하는 PK 학자들은 이와 같은 통념을 거부하고 있다. 화폐공급은 통화당국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화폐수요에 의해 결정되고 그 수요를 만족시키는 주된 수단은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의 신용창조(대출)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류경제학은 민간소비와 투자를 통한 유효수요의 증가가 잠시동안만 생산과 고용을 상승시킬 것으로 보고 있으나 칼레츠키는 유효수요가 장기적으로도 생산과 고용을 견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칼레츠키의 이론에서는 기업이 생산, 고용,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기업의 투자지출(I)은 추가적인 고용(L)과 생산규모(Q)를 결정하는 반면 노동자는 오직 임금협상(w)과 소비(C)에 대한 결정만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 비대칭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기업과 노동자 계급은 모형 내에서 동질적인 경제 주체로 합산될 수 없다. 고전학과 모형에서처럼 노동자의 소득 전부를 소비에 지출한다고 가정할 때 경제 전체의 유효수요의 변동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미인대회 비유)과 야성적 충동에 좌우되는 기업의 투자이다. 앞서 보았듯이 이 투자에 대한 사전적인 양적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투자가 사전적인 저축에 의해 제약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가지 시나리오(박만섭, 2012)를 통해 칼레츠키의 유효수요이론을 살펴보면, <그림 2-2>는 단일상품생산 경제에서 신규투자(ΔI)에 따른 생산량(Q)과 생산물 가치(PQ)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격P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투자지출이 증가(ΔI)하게 되면 생산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하며 새로운 균형(PQ1=I1+wQ1)과 소득수준(PQ1)에 도달한다. 위에서 처

럼 노동자의 소득 전부를 소비에 지출한다고 가정(고전파적 가정)할 때 소비는 임금으로 충당된다($C=wI$). 이러한 노동자의 소비재 지출 전체는 궁극적으로 전체 기업의 수입으로 환류 된다. 그렇다면 이윤은 결국 기업의 투자지출에 의해 결정된다. 칼레츠키가 상정하는 수요주도(demand-led) 경제에서 이윤은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 생산물 가치(PQ) 중에서 임금비용($wIQ=C$)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투자지출(I)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칼레츠키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이론을 설명한다.



자료: 박만섭, 2012
 <그림 2-2> 유효수요 이론: 칼레츠키 모형

“분명한 사실은 자본가가 특정 기간에 그 이전보다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결정을 할 수는 있어도, 이익을 늘리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윤을 결정하는 것은 투자와 소비에 대한 자본가의 결정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라부아(2016)에서 재인용]

한편 노동자가 임금소득 전부를 소비한다는 가정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가계저축을 모형에 도입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투자성향이 노동자의 저축성향을 상회할 때 이윤은 여전히 기업의 투자성향에 좌우된다(Graziani, 2003). 이에 따라 칼도어와 같은 PK 학자는 “노동자는 번만큼 쓰지만 자본가는 쓰는 만큼 번다.” 고 표현했다. 이러한 언급은 본질적으로 기업과 자본가가 제공하는 고용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노동자와 자신의 지출이 수입과 이윤의 원천이 되는 기업가 및 자본가 사이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가리킨다.

(3) 칼레츠키의 성장/분배이론

칼레츠키의 유효수요이론은 현대 PK 학자들에 의해 성장이론으로 재구성된 바 있다. 칼레츠키 성장모형(Rowthorn, 1981)은 ① 완전가동률 미만의 가동률(u)이 일반적인 경제 ② 기대이윤율(re)에 입각한 투자결정과 야성적 충동에 좌우되는 자율적인 투자결정(γ_0) ③ 불완전경쟁 시장과 ④ 기업의 마크업(θ)에 의한 가격결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PK 학자들

이 정식화한 칼레츠키 성장모형의 기본형은 다음과 같다.¹⁾

$$\begin{aligned} \text{생산: } Y &= uK, \text{ (단 } u < 1/a_K) \\ \text{저축률: } g^s &= s_e r \\ \text{투자율: } g^i &= \gamma_0 + \gamma_1 u + \gamma_2 r_e \\ \text{(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 g^i &= \gamma_0 + \gamma_1 u) \\ \text{저축=투자균형: } I &= S \\ \text{가격결정식: } p &= (1 + \theta) w a_L \\ \text{이윤율: } r &= \frac{\Pi}{K} = \frac{(Y - K) - w a_L Y}{K} = (u - 1) - w a_L u \end{aligned}$$

K는 자본스톡, r은 이윤율, Π 는 이윤, S_c 는 자본가의 저축성향, a_L 은 생산물 1 단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투입량을 의미하는 노동투입계수, a_K 는 자본투입계수, $1/a_L$ 은 노동의 한계생산성, $1/a_K$ 는 자본의 한계생산성, w는 임금이다. 또한 $w a_L$ 은 1 단위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이다.

칼레츠키주의자는 이번 기(期)의 생산(Y)이 주어진 자본스톡(K)에 대한 자본가동률(u)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는데, 설비가동률(u)은 보통 완전가동률 하의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의 비율로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자본스톡과 생산량의 비율로 나타낸다($u=Y/K$).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생산이 가동률에 의해 좌우된다는 가정이다. 생산이 가동률 함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가 완전가동률 미만으로 자본을 이용하고 그에 따른 유휴자본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또한 완전가동률 미만의 경제에서 가동률($u=Y/K$)은 반드시 자본의 한계생산성($1/a_K$)보다 낮다. 특히 이러한 완전가동률 미만의 경제에서 주류경제학이 상정하는 수익체감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으며 기업은 일정한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에 일정한 마진율을 붙인 가격으로 생산과 고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저축률은 이윤율과 자본가 저축성향의 합이다. 이는 기업을 운영하는 자본가가 이윤의 일정부분을 투자의 재원으로 저축한다는 의미이다. 뿐만아니라 투자율은 기업의 야성적 충동에 의한 자율적 투자결정(γ_0)과 설비가동률(u)에 좌우된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불완전경쟁 시장이고 기업은 주어진 단위노동 비용에 일정한 마크업 비율을 부가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위의 식을 통해 균형가동률과 자본축적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양 자의 합이 경제성장률로 정의된다.

우선 저축=투자균형에서 균형가동률 u^* 를 구하고 여기에 이윤율 식을 대입하면 균형가동률(u^*) 식이 도출된다.

1) 수식은 조복현(2015)의 정리를 참고하여 약간의 수정을 거쳤다.

$$u^* = \frac{s_c + \gamma_0}{s_c(1 - wa_0) - \gamma_1}$$

자본축적률(g)은 위 식을 투자율 식에 대입함으로써 도출된다.

$$g = \gamma_0 + \left[\frac{s_c + \gamma_0}{s_c(1 - wa_0) - \gamma_1} \right] \gamma_1$$

마지막으로 재화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전제하는 균형경제성장률은 자본 축적률과 균형가동률의 합계로 나타난다.

$$\text{균형경제성장률} = u^* + g$$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형에서 실질임금(w)의 증가가 균형가동률(u*)과 자본축적률(g)을 증가시키며 경제성장률(u*+g)의 증가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에 유리한 소득분배가 유효수요를 자극하여 장기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칼레츠키의 유효수요이론은 많은 PK 학자들의 분배·성장이론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다음과 같은 분배론적 함의를 지닌다.

우선 칼레츠키언(Kaleckian) 모형에서는 이윤의 크기가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경제의 순생산물과 부가가치를 둘러싸고 경합하는 관계에 놓여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실질임금(w)의 증가는 이윤의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임금의 증가로 인해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하여 고용과 더불어 경제 전체의 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더 나아가 칼레츠키는 불완전 경쟁과 불완전가동률이 일반적인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윤의 증가가 오히려 노동자의 소비를 감소시켜서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투자와 이윤을 그리고 경제 성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Kalecki, 1971[2010]).

또한 PK 학자들은 임금을 줄이는 것이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킨다는 세간의 통념에 대해 ‘합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라고 지적한다. 즉 임금을 줄이는 것이 개별 기업에게 현명한 판단일 수 있으나 모든 기업이 같은 선택을 할 경우 매출 1단위에 붙는 기업의 마진율(1+θ)은 올라가겠지만 앞서 보았듯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 한 거시경제의 총이윤은 변하지 않는다. 이윤의 원천은 결국 기업 자신의 투자이기 때문이다. 결국 임금을 감소시키면 이윤의 크기는 그대로이지만 임금감소로 인해 경제 전체의 불륨만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만일에 기업이 이윤 하락에 시달리게 된다면 이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그들 스스

로 투자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4) 소득주도 성장론

칼레츠키의 영향을 받은 일부 PK 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분배-성장의 패턴을 이른바 ‘임금주도 성장체제’와 ‘이윤주도 성장체제’로 구분한다. 현실경제에서 임금은 ‘생산 비용’이자 동시에 ‘시장구매력’이기 때문에 임금의 상승은 소비의 증가로 인해 내수(유효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용압박을 통해 투자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전자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후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때, 이 두 가지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다. 임금상승의 효과 중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 경제의 성격을 달리 볼 수 있는 것이다(라부아스톡해머, 2012).

만일 소득분배가 이윤(임금)에 유리하게 바뀐다면 그것이 총수요의 증가율 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제 시스템을 ‘이윤(임금)주도 성장체제’(profit(wage) led growth regime)라고 부른다. 만약 임금주도적인 성장체제라면 노동에 유리한 소득분배와 경제정책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처럼 칼레츠키의 성장-분배 이론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당위적인 맥락에서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라는 맥락 하에 분배의 중요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임금주도 성장체제경제에서는 자본친화적인 시장정책과 소득분배 정책은 오히려 불안정한 저성장 경로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분배정책과 경제체제의 경우, 성장은 외부자극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성장패턴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라부아스톡해머, 2012)

이것이 바로 대다수의 PK 학자들이 기존의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이다. 다수의 국가들은 개별적인 경제적 특성이 있고 일부는 임금주도적 성장 시스템이라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의 획일적인 이식은 이들에게도 이윤주도적 축적모형을 강요했고 이것이 결국 경제의 불안정과 저성장을 가속화시켰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PK 학자들의 이러한 성장/분배 이론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 혹은 임금주도 성장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아래의 <표 2-1>은 각각의 성장체제에 맞는 분배정책의 관계를 구분한 것이다.

<표 2-1> 성장 체제의 유지 가능성

| 구분 | | 분배정책 | |
|------|------|---------------|---------------|
| | | 친자본 | 친노동 |
| 성장체제 | 이윤주도 | 이윤주도 성장 프로세스 | 침체 또는 불안정한 성장 |
| | 임금주도 | 침체 또는 불안정한 성장 | 임금주도 성장 프로세스 |

자료: 라부아스톡해머, 2012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가 ‘이윤주도 성장체제’ 인지 ‘임금주도 성장체제’ 인지의 여부이다. 김진일(2013)의 경우, 1970~2011년 동안에 한국 경제가 대내적으로는 임금주도의 성장체제였으나, 대외적인 부문을 고려할 경우 전반적으로 이윤주도 성장체제라고 설명한다. 주상영(2013)은 한국의 자영업자 소득 전체를 자본소득으로 보는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 산정 기준을 비판하고, 이를 보정한 노동소득분배율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노동소득분배 지표를 보정할 때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노동소득분배의 개선이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박강우(2015) 역시 주상영과 비슷한 방식으로 노동소득분배율 자료를 보정하면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임금주도 성장체제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종합하자면,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출주도적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대한민국이 산업화 초기에는 이윤주도적 성장체제였을지는 모르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구조적 단절(structural break)로 인해 임금주도 성장체제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친화적 소득분배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내에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임금주도 성장체제 아래에서 노동에 유리한 소득분배가 총수요와 내수의 진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칼레츠키의 성장 및 분배이론은 내수의 비중이 높은 지역경제에서 노동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정책이 지역 경제발전에 더 유리함을 시사한다. 지역경제가 자체적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육성하여 지자체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며, 이와 동시에 노동소득분배의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

4. 피케티의 이론

지금까지의 경제적 불평등을 다루었던 대다수의 연구는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국제적인 차원에서 장기적 불평등 추세 및 비교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것은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대다수의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편 『21세기 자본』을 통해 전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피케티는 20여 개국의 세계 최상위 소득 계층 데이터베이스 (WTID: World Top Income Database)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자료의 한계를 극복했다. 피케티는 글로벌 불평등 문제를 상위 1%, 10% 소득자의 소득집중도 내지는 자산집중도를 통해 측정했는데, 이 자료는 대개 소득세 및 상속세에 대한 자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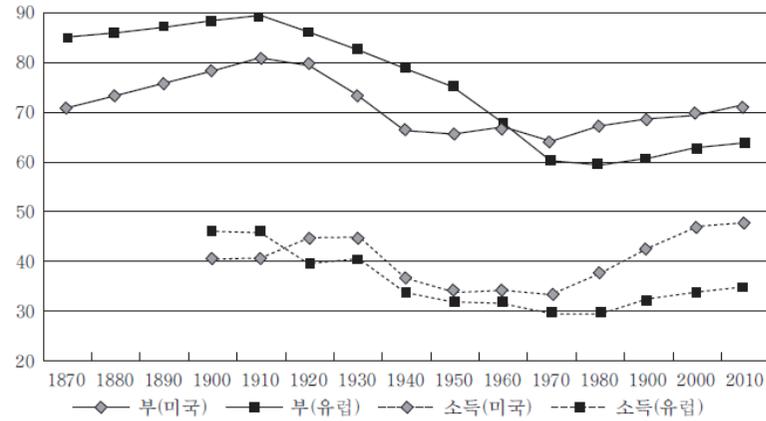
이는 고소득층의 통계자료 누락과 각종 불평등 지수의 과소측정 시비를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한국의 불평등 연구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나아가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주의에서 부의 집중이 경제적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지적한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소득 불평등에만 주목했던 종래의 접근방식은 일면적이라고 비판하며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추세를 동시에 보며 그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 역시 불평등 연구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크며 본 연구의 관점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자산의 불평등이란 대다수의 자산과 자산소득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피케티는 마르크스의 인식을 계승하여 소득불평등의 배후에는 자산 불평등이 놓여 있으며 이러한 자산의 불평등은 전쟁·혁명·인플레이션 등의 외부충격과 국가 및 사회의 개입(누진적 소득세와 상속세 등을 통한 재분배 정책)이 없는 한 점차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산 불평등이 누적될수록 소득 불평등 문제 역시 심화된다. 특히 장기적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바라본 피케티는 2차 세계대전 전후(前後)부터 심화된 자산의 불평등에 힘입어 21세기 현대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1차 세계 대전 이전의 이른바 ‘벨 에포크 시대’²⁾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경고했다.

<그림 2-3>은 유럽과 미국의 상위 10% 소득 및 부의 비중을 측정한 것이다. 유럽과 미국 모두 20세기 중후반부터 다시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경향을 관찰 할 수 있다.

2) 벨 에포크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서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전성기의 평화와 번영을 회상하는 말



자료: 피케티,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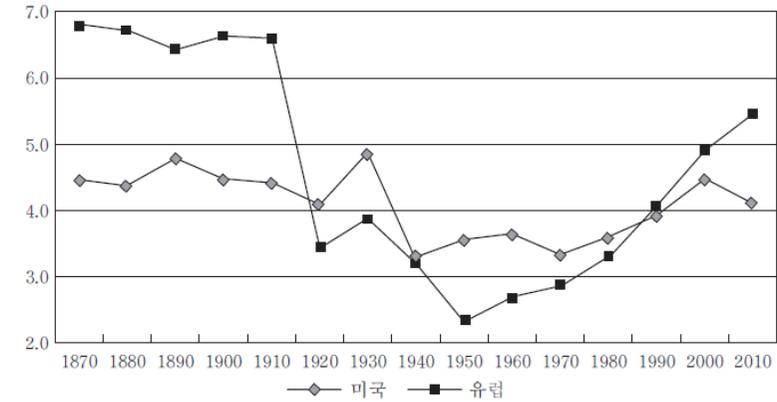
<그림 2-3> 소득과 부의 상위 10% 비중의 장기 추이

피케티는 몇 가지 수식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불평등에 대한 메커니즘을 개념화하려 시도한다. 우선 자본주의 경제는 국부/국민소득의 비율인 β 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난다.

$$\beta = K/Y$$

K는 한 시점에서 측정된 국가 전체 부의 총량(스톡)이며 Y는 한 기간 동안 창출된 국민소득의 총량(유량)을 의미한다. β 는 한편으로 현재의 국부를 축적하기 위해 몇 년간 현재의 국민소득을 투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β 는 물가수준에 구애받지 않고 각 국가의 자본축적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자본의 축적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를 통해 피케티는 2차 세계대전 전후를 지나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축적의 정도(β)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며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하 <그림 2-4>는 미국과 유럽의 자본/소득 비율의 추세를 그린 그래프이다.



자료: 피케티, 2014

<그림 2-4> 유럽과 미국의 자본/소득 비율(β)의 추이

그 다음으로 피케티는 다음과 같은 ‘자본주의의 제1기본법칙’을 소개한다.

$$\alpha = r \times \beta$$

α 는 자본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며 자본소득분배율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식은 자본의 소득 몫을 결정하는 식으로서 항상 성립하는 회계항등식이다. 위 식을 분해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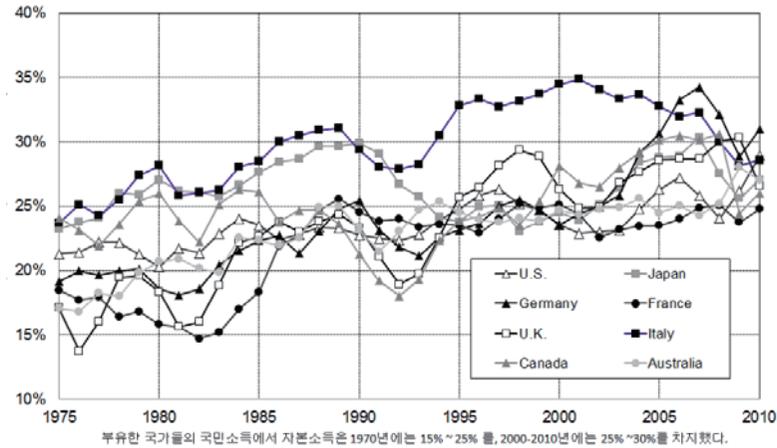
$$\alpha = r \times \beta = r \times (K/Y) = (r \times K)/Y = \text{자본소득}/\text{국민소득}$$

자본수익률(r)이 일정하다면 자본축적의 수준(β)이 커질수록 자본의 소득 몫도 점점 커지게 되며 극단적인 경우 자본이 국민소득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 물론 주류경제학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주류경제학 이론(대표적인 것이 CES 생산함수)에서는 자본의 축적수준이 상승할수록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며 이에 따라 자본의 수익률(r)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류경제학의 관점에 따르면 자본의 소득 몫(α)은 자본축적의 수준이 상승한다고 해서 덩달아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금융제도의 혁신과 기술혁신에 따라 기존의 자본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케티는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은 CES 생산함수가 가정하는 1보다 클 것이라 예측한다. 더군다나 자본수익률이 오롯이 자본의 한계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자본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자본 대 노동의 소득분배는 점차 노동에게 불리하고

자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아래의 <그림 2-5>는 자본소득분배율의 국가별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70년대 중반 이후 장기적으로 소득분배가 자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piketty.pse.ens.fr/capital21c

<그림 2-5> 부유한 국가들에서의 자본소득분배율

그 다음으로 피케티가 언급하는 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은 다음과 같다.

$$\beta = 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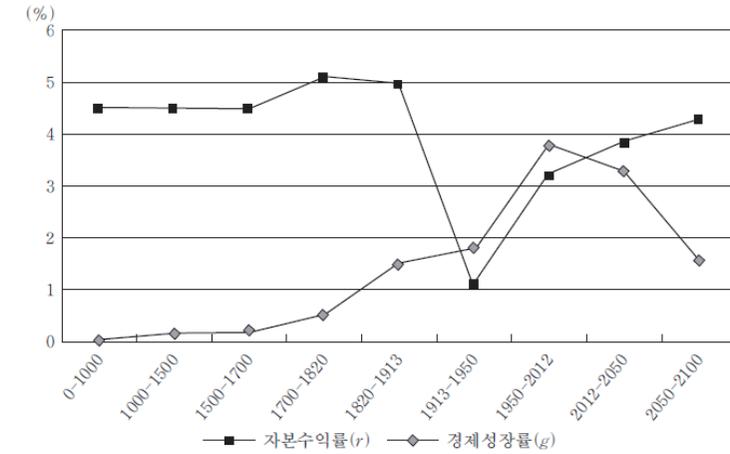
위 식은 자본의 축적수준(β)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준다. s 는 국민소득의 저축률이며 g 는 국민소득 경제성장률이다. 위 식은 해로드-도마-솔로우 모형에서 차용한 것으로서 s 와 g 가 주어져 있을 때 β 로 장기적·점근적으로 수렴한다는 의미임에 주의해야 한다. 위 식은 저축률이 일정할 때 경제성장률이 침체할수록 역설적으로 자본의 축적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 피케티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근본적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은 부등식으로 표현한다.

$$r > g$$

r 은 연평균 자본수익률을 뜻하며, 자본에서 얻는 이윤, 배당금, 이자, 임대료 등의 자본소득과 자본총액의 비율을 의미 하며 g 는 국민소득의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r > g$ 의 격

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것은 자본의 축적속도가 경제 성장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r-g)$ 의 격차는 양차 세계 대전 전후라는 일시적인 국면을 제외하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이처럼 피케티는 20세기 후반부터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구조로 회귀했음을 지적한다. <그림 2-6>은 이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피케티, 2014

<그림 2-6> 전 세계 경제성장률과 자본수익률(세후)의 장기추이

이처럼 자본수익률이 오랜 기간 동안 성장률을 웃돌면 부의 분배에서 부의 집중도와 양극화 위험성이 커지고, 상속재산이 노동을 통해 축적한 부를 압도하게 된다. 이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견지하는 사회정의와 능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결국 자본주의 경제의 분배구조에 조세제도와 분배정책으로 개입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 경제는 민주주의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피케티의 연구는 김낙년(2012, 2013, 2016)과 김낙년·김종일(2013)에 의해 계승된다. 이들은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심화된 국내의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추이를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 장기적으로 악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역시도 소득 및 부의 상위계층 집중도가 점차 심화되어 가는 추세를 겪었다는 점에서 최근의 글로벌 불평등 문제와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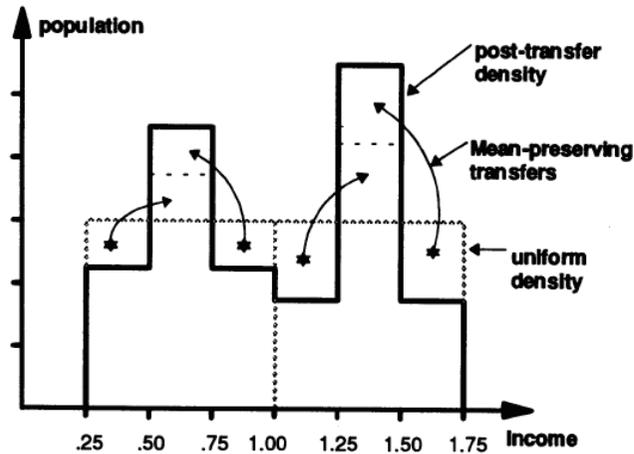
제2절 소득 불평등 측정 방법론

1. 소득 양극화 지수

1) 불평등 지수와 양극화 지수의 차이

광의의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지수로는 크게 불평등 지수와 양극화(다극화)지수가 존재한다. 불평등지수가 소득이라는 단일범주에 대한 일반적 불평등을 측정하는 개념이라면 양극화(다극화)는 그 사회의 집단 간의 상대적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김현호, 2007)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불평등지수는 소득이나 자산 등의 전체 평균과 분산에 주목한다.

양극화 지수를 확장한 다극화지수는 모집단이 두 개의 평균을 중심으로 묶이는 군집화(cluster) 현상에 주목한다. <그림 2-7>은 양극화 및 다극화의 예시이다.



<그림 2-7> 양극화의 예시(Wolfson, 1994)

전통적으로 불평등지수와 양극화지수에 대한 연구는 소득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소비, 건강, 행복도 등 다양한 변수들이 연구 분야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 중 어떤 분야를 선택하든, 이처럼 정책목표와 정책당국의 관심에 따라서 불평등 지수와 양극화 지수 두 가지 지표 중 하나를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과거에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용어가 언론과 공직사회에서도 자주 혼동된 바 있다.

불평등지수는 완전한 균등 분배가 이루어진 상태를 출발점으로 하여 현실의 분배 상태를 평가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단, 불평등지수나 양극화지수와 같은 한 가지 지수를 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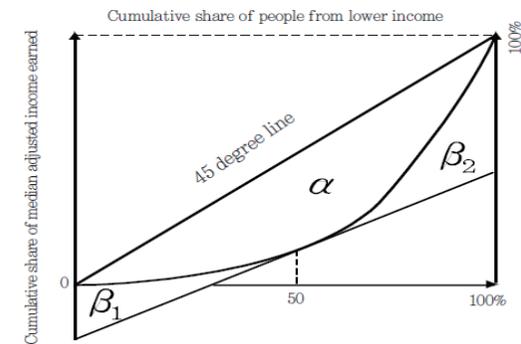
신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불평등지수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분배가 더 균등한 상태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더 공정해졌다는 뜻에서의 개선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불평등지수는 n차원의 분배 상태를 1차원의 거리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일부 양극화 지수와 불평등 지수는 사회적 효용과 개인의 효용구조에 대한 다양한 주관과 가치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하의 학계에서 다루는 불평등 지수와 양극화 지수 측정방법과 그 근간이 되는 이론을 소개한다. 우선 양극화지수는 다음과 같다.

2) Wolfson 지수

Wolfson(1994)는 소득 양극화를 중산층의 붕괴(middle class collapse)로 간주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언론과 학자들이 수용하는 양극화의 정의이다. 이때 양극화란 특정한 공리체계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로렌츠 곡선으로부터 도출된다. Wolfson 지수는 줄여서 W지수라고도 불리는데, 중위소득으로부터 소득의 분산정도가 클수록 소득의 양극화도 커진다는 직관에 기반을 둔다.

Wolfson 지수는 같은 로렌츠 곡선을 활용하여 다음 <그림 2-8>과 같이 유도된다.



<그림 2-8> Wolfson 지수(김현호, 2007)

<그림 2-8>의 세로축은 소득비중의 누적분포를 의미하며 가로축은 인구비중의 누적분포를 의미한다. 한편 인구비중의 가장 중간에 놓여 있는 ‘중위소득’에 접해 있는 선의 기울기는 중위소득자의 한계소득 누적분을 의미한다. W지수는 이러한 중위소득자의 한계소득 누적분을 하위소득자와 상위소득자의 한계소득 누적분과 비교하여 ‘중산층의 몰락’의 정도를 측정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한다.

이상은 기하학적 설명이었고 수리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로렌츠 곡선의 중위소득 접선

(가로축 50% 지점의 로렌츠 곡선 기울기)을 통한 사다리꼴의 면적, $\alpha + \beta_1 + \beta_2$ 에서 α 를 빼고 이를 중위소득(m)/평균소득(μ) 비율로 나누어 정규화한 뒤 지니계수와 척도(0~1)를 맞추기 위해 4를 곱하면 0과 1 사이의 Wolfson 지수를 얻을 수 있다.

$$W = 4 \times (\alpha + \beta_1 + \beta_2 - \alpha) / \left(\frac{m}{\mu}\right)$$

이를 바꿔 말하면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W = 2(2(0.5 - L(0.5)) - G) / \left(\frac{m}{\mu}\right)$$

단, $L(0.5)$ = 중위소득자의 소득점유율, G 는 지니계수

W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양극화가 심하며 중위소득계층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Wolfson 지수는 중위소득자의 인구비중을 기준으로 양극화를 측정하는 지수라고 할 수 있다. W지수는 직관적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ER지수와 같은 타 양극화 지수에 비해 극화 현상의 범위를 협소하게 포착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3) ER지수

ER지수란 Esteban&Ray(1994)가 제안한 양극화 지수이다. 사회적 갈등 중심의 양극화 혹은 다극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수는 동질성-이질성 접근법(identification-alienation approach)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극화 지수라고도 불린다. 이 양극화 측정방법은 ‘모집단 내 소집단의 소득이 특정 값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을수록 집단 내의 동질성이 커지며 다른 집단과의 소득 부조화가 커질수록 집단 간의 이질성이 커진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집단 내 동질성과 집단 간 이질성이 핵심 개념이다.

이때 사회적 양극화는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하는 개인 간의 유효반감(effective antagonism)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이때 개인의 유효반감 함수(T)는 아래와 같이 동질성과 이질성의 증가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T(I(x, F), A(x, y)), \text{st. } \frac{\partial T}{\partial I} > 0, \frac{\partial T}{\partial A} > 0$$

주어진 소득분포(F)에 대하여, 소득수준이 x 인 개인이 느끼는 동질성의 정도는 $I(x, F)$, 개인소득 수준이 y 인 타 집단 소속의 개인에게 느끼는 이질성의 정도는 $A(x, y)$ 라는 함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결국 집단 내의 동질성이 강할수록, 집단 간의 이질성이 강할수록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사회전체의 유효반감은 개인의 동질성과 이질성으로 측정된 유효반감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P(F) = \int \int T(I(x|F), A(x, y)) dF(x) dF(y)$$

그 다음 문제는 함수 T, I, r 을 정의하는 것이다. 여기서 Esteban & Ray(1994)는 상호비교 가능한 다극화 지수를 제시하기 위한 몇 가지 공리의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유경준, 2007)한다.

1. 각 집단 내에서는 높은 정도의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2. 집단과 집단 사이에는 높은 정도의 이질성이 있어야 한다.
3. 적당한 규모의 집단이 소수로 존재해야 한다.
4. 집단들의 문제이며, 분리된 개인은 중요하지 않다.

Esteban & Ray(1994)는 위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다극화지수를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제시한다. 우선 y 가 N 개의 극점(spike)으로 인해 외생적으로 구분된다고 가정하며 전체평균이 1이 되도록 정규화한다. 이때 단일변수 y (ex소득)는 유한한 폐쇄구간 $[a, b]$ 상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를 밀도함수 f 로 표시하며 밀도함수 f 는 N 개의 극점으로 구성된 집합 ρ 로 표시할 수 있다.

$$\rho = (y_0, y_1, \dots, y_n; \pi_1, \dots, \pi_n; \mu_1, \dots, \mu_n), \text{st. } (y_0 = a, y_n = b)$$

여기서 y_i 는 각 집단의 구간별 극점, π_i 는 각 집단에 속할 확률, μ_i 는 각 집단 내에서의 조건부 평균값을 의미한다.

$$\pi_i = \int_{y_{i-1}}^{y_i} f(y) dy$$

$$\mu_i = E(y|y_{i-1} < y < y_i) = \frac{1}{\pi_i} \int_{y_{i-1}}^{y_i} y f(y) dy$$

여기서 ER지수는 π_i 와 μ_i 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R(\alpha, \pi, \mu) = \sum_i \sum_j \pi_i^{1+\alpha} \pi_j |\mu_i - \mu_j|$$

결국 ER 지수는 y 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소집단의 수만큼 쪼개 각 집단별 평균과 확률을 이용하여 다극화지수를 측정하는 개념인 셈이다. 위 식에서 볼 수 있듯이 ER 지수는 동일집단의 동질성 함수(π_i^α)와 집단 간의 이질성 함수($|\mu_i - \mu_j|$) 그리고 각 구간별 확률(π_i, π_j)을 곱한 가중평균 값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α 는 동질성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로써, 불평등 지수와 구별되도록 하는 값이다. α 값이 클수록 ER지수는 표준적 지니계수와 멀어지게 되고 0일 때 지니계수와 같아지게 된다. 이 α 에 관해 Eseteban & Ray(1994)는 다극화 지수에 관한 일정한 공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0 \leq \alpha \leq 1.6$ 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처럼 ER지수는 중산층의 소멸뿐만 아니라 특정집단에 소득분포가 집중되는 현상을 다극화로 포착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단, 외생적으로 소득분포의 극점을 나눔으로써 이론적 가정의 자의성 문제에 노출된다는 점과, 각 그룹 간 소득을 선형비교($|\mu_i - \mu_j|$)함으로써 다극화의 정도를 다소 과대 측정한다는 문제를 지닌다. 이 문제를 일정부분 개선하는 것이 이른바, ‘개선된 ER지수’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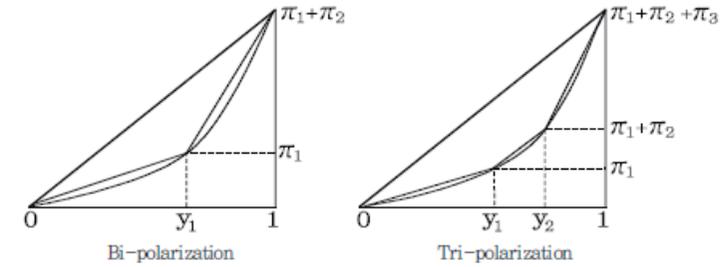
4) 개선된 ER지수

Esteban, Gradin & Ray(2006)는 기존 ER지수의 다극화 과대추정 문제를 오차($\epsilon(f, \rho)$)의 조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 이때, 이러한 오차는 밀도함수의 형태와 극점을 어디에 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극점의 수는 연구자의 직관에 따라 외생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지만 극점의 위치는 적어도 내생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는 극점의 위치가 각 소집단 내의 분산이 전체 분산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에 착안해 Esteban, Gradin & Ray(2006)와 Duclos, Esteban & Ray(2004)가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오차를 최소화하는 ρ 를 선택하는 것이다.

$$\epsilon(f, \rho) = \frac{1}{2} \sum_i \int_{y_{i-1}}^{y_i} \int_{y_{i-1}}^{y_i} |x - z| f(x) f(z) dx dz$$

위 식은 소집단 내에서 두 소득 값의 차이를 평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식을 기하학적으로 보면, N개의 극점으로 이뤄진 ρ 는 원래의 로렌츠 곡선을 N개의 선분으로 이뤄진 선형 로렌츠 곡선으로 변형시킨 것에 해당한다.



<그림 2-9> Extended-ER지수(김현호, 2007)

위 <그림 2-9>에서 볼 수 있듯이, $\epsilon(f, \rho)$ 를 극소화하는 ρ 는 원래의 로렌츠 곡선과 선형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다. 오차를 극소화하는 최적화된 ρ^* 에서 $\epsilon(f, \rho^*) = G(f) - G(\rho^*)$ 가 성립 한다(단, $G(\cdot)$ 는 괄호 안 분포에 해당하는 지니계수). 이때 오차를 극소화($\epsilon(f, \rho^*)$)하는 ρ^* 는 다음과 같은 수리적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y_i^* = \lambda \mu_i^* + (1 - \lambda) \mu^{*i+1}$$

$$\lambda = \frac{\pi_i^*}{\pi_i^* + \pi^{*i+1}}$$

인접한 두 구간을 분할하는 소득수준(극점)은 두 구간의 조건부 평균값들의 가중평균이어야 한다. 최적화된 ρ^* 를 반영한 다극화지수는 다음과 같다.

$$P^*(f; \alpha; \beta) = ER(\alpha, \beta^*) - \beta \epsilon(f, \rho^*)$$

(단, β 는 오차의 가중치)

혹은

$$P^*(f; \alpha; \beta) = ER(\alpha, \beta^*) - \beta(G(f) - G(\r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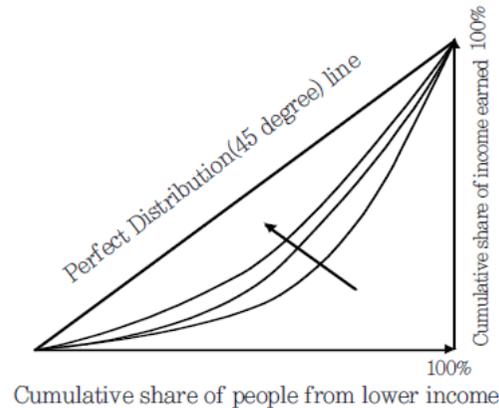
이때 파라미터인 $\alpha = \beta = 1$ 인 경우 개선된 ER지수는 Wolfson지수와 동일하게 된다. 이렇듯 개선된 ER지수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극점을 내생적으로 결정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점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ER지수에서도 극점의 수

자체는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계층 구분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시 양극화 연구는 대개 2분화된 지수를 주로 사용한다. 단, 이때에는 계산이 까다로워지고 연구가 이론적 직관에서 지나치게 멀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소득 불평등 지수: 지니계수와 로렌츠 곡선

1)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측정에 관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불평등 지수이다. 지니계수 역시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로렌츠 곡선은 사람들을 소득의 크기대로 순서를 매긴 뒤,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로축에서 인구를 누적해 가고, 세로축에는 그들의 소득을 누적해 감으로써 그려지는 하나의 곡선이다. 하위 소득 집단의 로렌츠 곡선상의 기울기와 고소득 집단의 곡선상의 기울기 차이가 작으면 불평등도가 낮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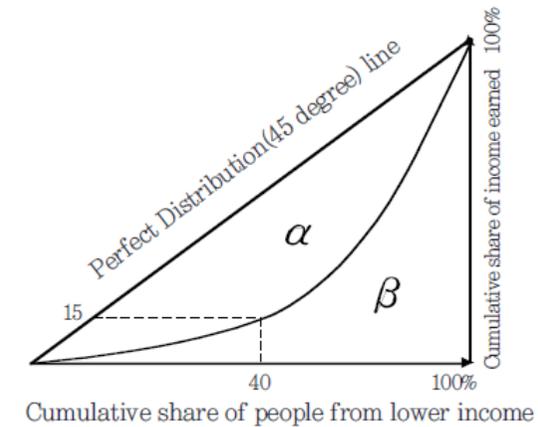
<그림 2-10>로렌츠 곡선(김현호, 2007)

<그림 2-10>에서 횡축은 소득 순으로 배열된 인구의 누적 %값을 나타내고 종축은 횡축에 주어진 누적인구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누적 %값을 나타낸다. 로렌츠 곡선이 45° 선과 일치할 경우 전인구의 소득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배되어 있는 완전 평등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상태가 ‘공정한’ 분배상태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로렌츠 곡선은 그 자체만으로는 집단 간의 불평등에 관한 서수적(ordinal) 비교만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더 나아가 로렌츠 곡선이 교차할 경우 서수적 비교도 불가능해진다.

로렌츠 곡선의 단점을 보완하여 불평등 정도를 기수적(cardinal)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는 평균편차를 구하고, 그 다음으로 절대 지니계수를 구하며, 마지막으로 상대 지니계수라는 정규화된 불평등 지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G = \frac{1}{2n(n-1)} \sum_{i=1}^n \sum_{j=1}^n |y_i - y_j|$$

우선 절대적 지니계수는 아래와 같이 전인구를 둘씩 조합(${}_nP_2$)하여 구해진 소득격차 절대값의 합을 조합수($n(n-1)$)의 두 배로 나누어 구한다.



<그림 2-11> 지니계수(김현호, 2007)

그 다음에 상대적 지니계수는 위 식을 평균소득으로 나누어 정규화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처럼 불평등 비교를 위해서는 상대적 지니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 가능한 자료를 이용한다면 상대적 지니계수는 불평등 상태를 광범위한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에서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다.

기하학적으로 보면 지니계수는 현실의 로렌츠 곡선과 완전 균등분배 상태의 로렌츠 곡선과의 거리들을 합산한 것이다. 위 그림에서 초승달 모양의 α 면적의 두 배 값이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균등분배를,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분배를 나타낸다. 통상적으로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나아가 지니계수는 모든 소득쌍을 비교함으로써 모든 소득수준에서의 소득변화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는 경우 더 강한 사회후생함수에 대

한 가정 없이는 두 분배상태의 불평등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피구-달튼의 공리

분배이론에서 피구-달튼(Pigou-Dalton)의 ‘이전의 원칙’이 가지는 타당성을 오랫동안 인정해왔다. 피구-달튼의 공리란 전체분포의 평균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가정 아래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시킨다면 새로운 분배 상태에서 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다는 내용이다. 불평등 지수가 피구-달튼의 공리를 만족해야 한다. 앞서 본 지니계수는 피구-달튼의 공리를 만족하는 대표적인 불평등 지수이며, 그 외 불평등 지수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피구-달튼의 공리는 중요한 잣대로 사용된다.

3. 그 외의 소득 불평등 지수

1) 대수의 분산

대수의 분산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도 불평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대수의 분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V = \frac{1}{n} \sum_{i=1}^n (\log y_i - \alpha)^2 \quad \text{단, } \alpha = \frac{1}{n} \sum_{i=1}^n \log y_i$$

즉, 대수의 분산은 개별 소득의 대수(로그값)로써 하나의 분포를 만들어 해당 분포의 분산으로 구한 값이다. 한 사회의 소득분배상태가 대수정규분포를 취한다면 대수분산은 그 분포에 대해 분산의 최우 추정치가 된다. 또한 대수의 분산은 저소득층에 생긴 소득변화에 불평등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수의 분산은 평균소득의 변화에 대해 독립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다른 불평등 지수와 달리 피구-달튼의 공리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불평등 문제를 분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널리 쓰이지는 않는다.

2)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변이계수는 소득의 표준편차(σ)를 평균(μ)으로 나눈 수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적인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하는 변이계수의 공식이다.

$$CV = \frac{\sigma}{\mu}$$

이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변이계수는 소득의 단위가 다른 비교대상(예, 원화소득과 달러소득)에 관해서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단, 소득변화의 불평등개선 효과가 소득수준과는 독립적이라는 단점을 지닌다. 만일 낮은 소득수준에서 일어난 소득변화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 싶다면 변이계수는 적절하지 못한 선택이 될 것이다.

3) 타일지수

타일지수는 정보이론의 ‘엔트로피(entropy)’ 개념을 불평등도의 측정에 사용한다. 정보이론의 맥락에서 어떤 사상 E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할 때 그 사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메시지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h)은 p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것에 착안한 불평등 지표이다. 우선 어떤 사건에 결부되어 있는 정보의 양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h(p) = \log \frac{1}{p}, \quad h(1-p) = \log \frac{1}{1-p}$$

위 정의와 확률의 성질을 이용하여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기대정보량(H)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

$$H = ph(p) + (1-p)h(1-p) = p \log \frac{1}{p} + (1-p) \log \frac{1}{1-p}$$

위 식을 여러 경우의 수와 결부된 확률에 적용시켜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축약할 수 있다.

$$H = \sum_{i=1}^n p_i \log \frac{1}{p_i}$$

이러한 논의를 소득분포를 둘러싼 기대정보량에 대한 논의에도 적용할 수 있다. 타일지수(T)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 = \sum_{i=1}^N \left(\frac{y_i}{\sum_{j=1}^N y_j} \right) \times \log \left(\frac{y_i}{\mu} \right) = \sum_{i=1}^N \left(\frac{y_i}{\sum_{j=1}^N y_j} \right) \times \log \left(\frac{N \cdot y_i}{\sum_{j=1}^N y_j} \right) = \sum_{i=1}^N (S_i) \times \log(NS_i)$$

여기서 y_i 는 i 번째 개인의 소득, μ 는 평균소득, N 은 전체인구, S_i 는 개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위 식을 간단히 축약해서 변형하면 아래와 같다.

$$T = \sum_{i=1}^N S_i \log N - \sum_{i=1}^N S_i \log \frac{1}{S_i} = H^* - H$$

H^* 는 모든 소득이 $1/N$ 로 균등하게 분배된 상태로서 다른 어떤 분배상태의 엔트로피값보다 크며 H 는 실제 분배 상태에 대한 엔트로피 값으로 해석된다. 분배상태가 평등할수록 타일러지수는 0에 가까워진다.

타일지수의 장점은 전체 집단의 불평등 지수를 아래와 같이 각 하위집단의 불평등 지수의 합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T = \sum_{k=1}^m s^k T_k + \sum_{k=1}^m s^k \log \frac{\mu^k}{\mu}$$

m 은 하위집단의 개수, k 는 k 번째 하위집단, s_k 는 k 번째 하위집단의 전체소득 비중, μ 는 평균소득을, μ^k 는 k 번째 하위집단의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이러한 타일 지수는 저소득층의 소득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다. 단, 지니계수와 같은 불평등 지수는 예컨대 1이라는 절대적 상한치를 갖고 있는 것에 반해, 타일 지수가 가변적인 상한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앳킨슨 지수

앳킨슨 지수란 불평등을 평가하는 사회후생함수를 먼저 찾아놓고 이를 반영한 불평등 지수를 구하는 불평등 측정 방법이다. 앞서 보았던 로렌츠 곡선상으로 45도 선이 보여주는 것 같은 완전 균등분배 상태도 반드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느껴지지 않는 듯이, 불평등에 대한 측정도 결국 공정함에 대한 사회적 감각을 전제한다. 이처럼 앳킨슨 지수는 사회적후생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불평등에 대한 실증적 측정치와 대비되는 규범적 측정치(normative measure)로도 분류된다.

우선, 앳킨슨 지수에는 사람들이 사회의 소득불평등도를 자신의 소득실현에 관한 위험(risk)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피하는 효용함수를 공유한다는 가정이 녹아있다. 즉 앳킨슨 지수란 불확실성하의 기대효용 극대화 선택이론에 기반을 둔 불평등 지수라고 할 수 있다.

효용이론에 기반을 둔 앳킨슨 지수는 특히 균등분배대등소득(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level of income) 개념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현재의 분배 상태에서 오는 사회적 후생과 동일한 사회적 후생을 주는, 모두에게 완전히 균등한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불평등에 의해 사회적 후생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균등분배대등소득은 현실의 평균소득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우선 앳킨슨 지수 배후에 있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SW(y) = \frac{1}{n} \sum_{i=1}^n V(y_i)$$

사회후생함수는 소득의 함수인 각 개인의 효용함수의 평균으로 정의된다. 앳킨슨 지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효용함수가 소득에 대해 연속의(continuous) 강단조적인(monotonic) 오목(convex) 증가함수라는 조건 아래 있어야 한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체적인 형태 중 하나로서 다음과 같이 상대적불평등기피도(ϵ)가 규모에 대해 불변인 형태(constant relative inequality aversion)의 효용함수를 상정할 수 있다.

$$V(y_i) = \frac{y_i^{1-\epsilon}}{1-\epsilon}$$

여기서 앳킨슨 지수(A)는 균등분배대등소득(y_{EDEL})과 기존의 평균소득 간의 비율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 1 - \frac{y_{EDEL}}{\mu}$$

사회후생함수가 모든 개인에 대해 대칭적이며 모든 소득의 비례적 변화에 대해 독립적이라는 가정 아래, 위의 사회적 효용함수를 반영한 앳킨슨 지수는 아래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A = 1 - \left[\sum_{i=1}^n \frac{1}{n} \left(\frac{y_i}{\mu} \right)^{1-\epsilon} \right]^{\frac{1}{1-\epsilon}} \text{ 혹은 } A = 1 - \left[\sum_{i=1}^n f_i \left(\frac{y_i}{\mu} \right)^{1-\epsilon} \right]^{\frac{1}{1-\epsilon}}$$

위 식에서 n은 사회 구성원의 수이고 μ 는 평균소득을 의미하며 f_i 는 i번째 소득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때, 앳킨슨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높은 불평등을 의미한다.

앳킨슨 지수에는 엄밀한 경제학적 미시이론에 기반을 둔 불평등 지수라는 의의가 있다. 다만, 효용함수의 형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이론적 가정의 자의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회적으로 합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효용함수를 상정할 수 있느냐 부터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구체적인 한계는 다음과 같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회피성향을 반영한 ϵ 라는 매개변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불평등도에 대한 평가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만일 $\epsilon=0$ 이면 불평등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의미하고 $\epsilon \rightarrow \infty$ 일 때 최하위계층의 소득만이 문제가 되는 롤즈(Rawls)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 효용함수의 형태에 대한 가정이 불평등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좌우한다는 점이 앳킨슨 지수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5) 쿠즈네츠 지수

쿠즈네츠 지수는 전체 인구를 일정한 소득계층으로 나누어 각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격차를 측정한다. 쿠즈네츠 지수는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었을 때 각 집단의 소득점유율과 실제 소득점유율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의 절댓값을 모두 합한 후 그 평균격차를 구함으로써 산출한다.

$$K = \frac{1}{1 - (2/n)} \sum_{i=1}^n \left| s_i - \frac{1}{n} \right|$$

위 식에서 n은 집단의 수, i는 i번째 집단, s_i 는 i번째 집단의 소득점유율을 의미한다. 쿠즈네츠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정규화된 형태를 지니며 비교의 편리성을 가지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같은 계층 내에서의 소득이전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며 이는 피구-달튼의 공리에 위배된다.

6) 소득집중도

소득집중도는 상위 소득계층 N%의 사회 전체의 소득 점유율을 불평등의 척도로 삼는다. 피케티와 김낙년(2013)의 경우 1%와 10%의 상위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을 불평등의 척도로 사용하며 이에 관해 193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장기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소득불평등도는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불평등의 비교와 장기적인 불평등 추세를 연구하는데 편리하다. 또한 소득집중도에 기반을 둔 최근의 불평등 연구는 국세청의 소득세 과세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과세자료는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통한 자료이므로 비교적 소득의 누락 없이 소득의 불평등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7)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요소소득(Y) 중 노동소득(W)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거시적인 자본과 노동 사이의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라고 할 수 있으며, 상기했듯이 고전과적 맥락에서 분배의 문제를 다룰 때 주로 사용했던 지표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역수를 적절히 변형하면 $1/(Y/W)-1$ 는 마르크스주의 맥락에서 착취율(잉여가치/가변자본)의 대응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주어진 경제의 성장체제(노동소득 주도성장 혹은 자본소득주도성장)에서 앞으로의 경제성장 경로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므로 포스트케인즈주의에서 중요한 변수로 거론된다. 단,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중 무엇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을 둘러싼 쟁점들은 후술할 것이다.

제3절 노동소득분배율과 불평등 지수

1. 노동소득 분배율 측정의 쟁점

1) 노동소득분배율의 의미

한 기간 동안 국민경제에서 창출된 경제적 부가가치 혹은 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이 크게 노동소득(W)과 자본소득(I)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적에서는 부가가치를 임금과 이윤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테면 노동자가 버는 소득에는 임금 외에도 고용주의 사회부담금 등의 형태로 돌아오는 소득이 발생하므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Y = \Pi + W$$

노동소득분배율은 이러한 경제적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소득의 몫을 의미한다. 반대로 자본소득분배율은 자본이 차지하는 소득의 몫이 된다.

$$LS(\text{노동소득분배율}) = W(\text{노동소득}) / Y(\text{국민소득})$$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된다는 것은 경제 전체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몫이 커지고 반대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던 과거에는 불황기에 이윤의 하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노동소득분배율마저 동시에 하락하는 경향이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된다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경제 내에서 창출된 소득 중에서 자본소득의 몫이 증가하고 노동소득의 몫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것이 평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것이다. 자본소득이 고소득층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는 결국 평균적인 노동자가 경제 내에서 창출된 소득의 상당부분이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상대적으로 더 적어진 노동소득마저도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평등하게 배분될 때 평균적 노동소득을 버는 노동자의 소득압박은 더욱 심해진다(이상현, 2013).

한편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에서 첫 번째 관건은 소득 자체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것이고 그 다음 관건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것이다. 가계동향조사처럼 설문조사와 같은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할 때 국민계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하는 국민계정의 각 항목을 어떻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그리고 요소소득 분배율과 연결시킬지에 관한 내용이다.

2) 국민계정을 통한 요소비용국민소득의 측정

국민계정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지출·생산 등의 경제활동과 특정 시점의 국부의 총량을 측정하는 종합계정 내지는 종합재무제표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을 통해 1993년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ing) 분류원칙에 따라 국민계정 통계를 작성하고 발표하고 있다. 또한 현 국민계정체계 아래 측정된 노동소득분배율은 ‘기능별 소득분배율’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이라고도 불린다. 기능별이라 함은 생산 활동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생산요소에 대한 소득분배를 보여준다는 의미이다.

회계 정의상 총생산은 총소득과 총지출과 반드시 일치해야한다. 이에 따라 국민계정에 대한 접근법은 생산 접근법과 지출접근법 그리고 소득 접근법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취해야 할 것은 소득 접근법이다. 먼저 국내총생산(GDP)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로 구성된다. 그리고 여기서 국외순취원본소득을 더하면 국민총소득(GNI)이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계정상에서 총생산과 총소득이 연결된다. 한편 여기서 본원소득이라 함은 생산과정에 참여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산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하는 본원소득의 경제주체별 구성이다.

<표 2-2> 본원소득의 경제주체별 구성

| 경제주체별 | 본원소득 구성내역 |
|------------------|--|
| 비금융법인기업 및 금융법인기업 | 영업잉여+수취 재산소득 - 지급 재산소득 |
| 일반정부 | 생산 및 수입세 - 보조금 + 수취 재산소득 - 지급 재산소득 + 정부소유 비법인기업의 영업잉여 |
| 가계 | 피용자보수 + 혼합소득 + 수취 재산소득 - 지급 재산소득 + 주택의 주거서비스 생산으로 발생한 영업잉여 |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 수취 재산소득 - 지급 재산소득 |

자료: 한국은행

주1) 혼합소득은 가계가 운영하는 비법인기업의 소득으로 영업잉여와 가족구성원의 무급노동 대가도 포함됨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소득은 요소비용국민소득이다. 요소비용 국민소득이란 생산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에 지출된 비용으로 인해 형성된 소득을 의미한다. 요소비용국민소득을 도출해내는 과정은 이하와 같다.

<표 2-3> 요소비용국민소득 도출 과정

| 소득범주 | 소득의 구성 |
|----------|-----------------------------------|
| 국내총생산 | 비용자보수 + 영업잉여 + 고정자본소모 + 순생산 및 수입세 |
| 국민총소득 | 국내총생산 + 국외순수취 본원소득 |
| 국민총가처분소득 | 국민총소득 -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
| 국민가처분소득 | 국민총가처분소득 - 고정자본소모 |
| 요소비용국민소득 | 국민처분가능소득 - 순생산 및 수입세 |

자료: 전병유, 2015

이렇게 도출된 요소비용국민소득은 엄밀히 Hicks(Hicks)적인 소득개념이다. Hicks적 소득개념이란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고 최대한도의 소비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민총소득에서 자본소모(감가상각과 자본설비의 노후화)를 제외하고 외국으로부터 얻은 순자산소득은 포함시켜야 하며 부가가치세나 관세는 제외시켜야 한다. 이렇게 측정된 요소비용국민소득은 제도부문별 국민소득 계정을 통해 볼 수 있다. 요소비용국민소득은 1,637조 원(2016년 기준)이며 국외순수취소득과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제외하면 1,145조 원이다.

한편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근로소득, 자영소득, 재산소득으로 나뉜다. 만일 지역 차원에서 소득조사를 한다면 대개 수원시 사회조사처럼 가구 대상의 설문조사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국가 차원의 소득분배와 수원시 차원의 소득분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계부문의 소득계정을 살펴봐야 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나 일반적인 지역조사에서 측정되는 가계부문의 요소소득 역시 근로소득, 자영소득, 재산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때 근로소득이나 자영소득의 경우 국민계정의 각 항목(각각 비용자보수, 혼합소득)과 잘 대응하나 재산소득은 조금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재산소득은 ① 지대, 배당, 이자 등의 직접적 수취, ② 연금이나 민간보험으로부터의 소득, ③ 자본이득 등이다. 첫 번째 유형의 가계 재산소득은 국민계정상의 이자, 임료, 지대, 해외순수취소득 등과 관련된다. 또한 국민계정상의 가계소득에서 고용주의 사회보장분담금과 공적연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계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귀속 임대료도 재산소득에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자산증가로 인한 소득증가효과는 국민계정상의 가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계정상의 가계소득과 일반적인 설문조사상의 가계소득을 비교할 때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민간보험금과 같은 민간사

적급여나 사적연금과 저축성보험금의 경우 가계의 재산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하는 가계와 기업부문으로 요소비용국민소득이 어떻게 국민계정상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이다.

<표 2-4> 제도부문별 국민소득의 구성

| | |
|------------|---------------------------|
| 가계 본원소득 | 가계본원소득 |
| | 비용자보수 |
| | 개인영업잉여(자영업소득) |
| | 개인순재산소득 |
| | 법인기업분배소득 |
| 기업 본원소득 | 임대료 |
| | 기업본원소득 |
| | 영업잉여 |
| | 비금융법인기업순재산소득 ^a |
| 정부순재산소득 | 금융법인기업순재산소득 ^a |
| | 정부순재산소득 |
| 요소비용국민소득 |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전병유, 2015)

주1) a재산소득-재산지출

주2) 재산소득=개인순재산소득+기업순영업잉여+정부순재산소득

수원시 사회조사의 경우 국민계정과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문문항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원시 사회조사는 주된 소득원 설문문항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다.

<표 2-5> 수원시 사회조사 소득유형별 설문문항

| 가구의 주된 소득원 | | | | | | | |
|--------------------------|---|----------|-------------------------|-----------|-------------------------|-------------|----|
| 가구주의 근로 (사업) 소득 |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공적·사적 연금 및 퇴직금 | 정부 보조금 | 종교 또는 복지단체 보조금 | 친인척의 보조금 | 기타 |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우선 수원시 사회조사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분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 소득자의 비중을 고려할 때 자영업 소득원을 따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나중에 살펴볼 자영소득을 노동소득분배율 상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관된다. 또한 수원시 사회조사에서 재산소득은 이자, 임대료, 배당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의의 재산소득을 넘어선 자본소득의 범위를 포착하기 위해 공적·사적 연금 및 퇴직금의 범주를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개선을 통해 국민계정의 소득유형의 분포와 수원시 사회조사와의 비교가 더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영업자 소득의 처리

이상과 같이 국민계정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할 때, 노동소득분배율은 크게 둘 중 하나로 계산된다.

$$LS = \frac{\text{비용자 보수}}{\text{요소비용국민소득}}$$

$$LS = \frac{\text{비용자 보수}}{\text{비용자 보수} + \text{영업잉여}}$$

한국은행은 첫 번째의 정의를 따른다. 비용자보수와 영업잉여가 요소비용국민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둘 중 어느 것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든 큰 차이는 없으나 국외순수취분원소득과 순수취경상이전 등에 의해 요소비용국민소득은 비용자 보수와 영업잉여의 산술적 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정의를 따를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과소계상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노동소득분배율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분모를 이루는 영업잉여에 자영업자 소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행 방식의 노동소득분배율 계산은 노동소득분배율을 크게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붕괴를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이라는 결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 한국 자영업자들의 상당수는 노동집약적인 형태의 직종 및 업종에 종사하고 사업체 규모도 영세하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 전부를 자본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4가지 방

법들이 있다.

첫째(LS1), 자영업자의 소득 전부를 노동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영세하며 노동집약적이라는 것을 고려한 것이나, 실제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가령 변호사·의사·회계사 전문직종의 소득 전부를 노동소득으로 간주해야 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LS2), 자영업자의 소득 일부를 일정한 비율대로 노동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가령 Krueger(1999)는 자영업자의 소득 2/3을 노동소득으로, 1/3을 자본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경험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 비율이 변하는 경우에는 측정의 부정확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자영업자의 평균노동소득이 노동자의 평균노동소득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하는 법이다. 이는 OECD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것을 한국에 적용하면 일부 기간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100%를 상회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이병희, 2015). 그러므로 이 방식은 본고에서는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넷째, 주상영(2013)의 방식대로(adj_LS) 자영업자 노동소득의 범위를 국민계정의 변수들과 내생적으로 연관시키는 방식이 있다. 주상영(2013)처럼 자영업자의 소득이 자영업자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비용국민소득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비율(비용자보수/법인영업잉여)대로 나눈다는 가정을 도입할 수 있다. 이것을 구체화(specify)하면 다음과 같다.

$$\text{보정된 노동소득분배율 (adj LS)} = \frac{\text{비용자 보수} + \text{자영업자 노동소득}}{\text{요소비용국민소득}}$$

$$\text{자영업자 노동소득} = \text{가계비법인기업 영업잉여} \times \frac{\text{비용자 보수}}{\text{비용자 보수} + \text{법인기업 영업잉여}}$$

어느 쪽의 방식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보정하든 아래와 같이 한국은행 기준의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는 확연히 달라진다. 아래는 국민계정의 요소비용국민소득 중 자영업자 소득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와 같은 방식대로 노동소득에 반영해서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제3장 지역사회 불평등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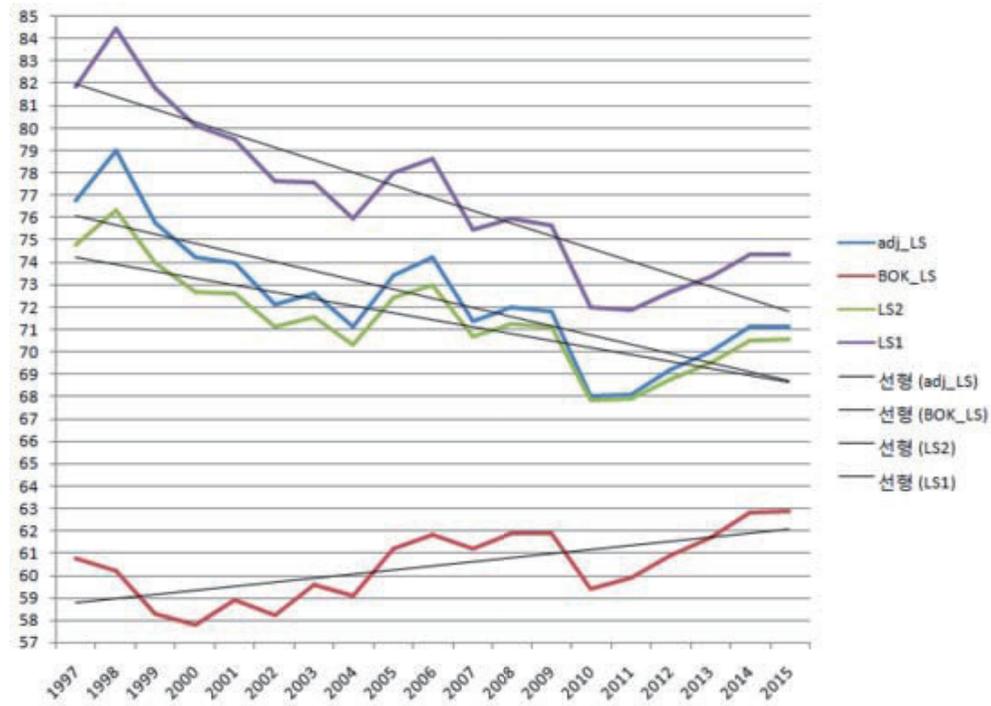
제1절 지역사회 불평등에 관한 선행연구

지역사회 불평등에 관한 국내 연구 중에서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불평등도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대체로 소득의 지역 간 격차나 소득 격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거나(이정우, 1997; 이종훈·권태희, 2005; 김상호·박시현, 2006; 이상은·최유석, 2010), 국가나 광역 시·도 단위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지역 간 불평등 문제(고석남·이시원·정병우, 1997; 박성복, 1997; 황규선·현영남, 2003 등)를 다루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정우(1997)는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통해 수도권과 영·호남 사이에 소득 격차가 있음을 실증분석 하였고, 김상호·박시현(2006)은 163개 시·군의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간 소득격차의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이종훈·권태희(2005)는 2002년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 강남·북간 임금소득격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이상은·최유석(2010)은 2008년 서울시 복지패널자료를 토대로 옥사카(Oaxaca) 요인분해를 실시하여 강남과 비강남지역의 소득격차 발생의 주된 요인이 고소득과 관련된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의 지역 간 분포가 상이한 것에 있었음을 밝혀냈다.

고석남·이시원·정병우(1997)는 1981~1993년 동안의 경상남도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경제성장과 지역 간 경제수준 및 생활수준이 역 U자형 관계임을 입증하였고, 박성복(1997)은 15개 광역자치단체들 간의 지역발전의 불평등 정도를 소득 자료가 아닌 지역지표³⁾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로 계산하여 전체 지역발전의 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인 것을 증명했다.

지역사회의 소득불평등도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김성태·정초시·노근호(1991)는 1970~1986년 동안의 11개 시·도의 소득 자료를 활용해 쿠즈네츠 가설의 검정을 시도하였는데 가설의 명확한 입증은 실패하였으나, 역 U자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노근호·정초시·김성태(1995)는 1970~1991년 간 11개 시·도 소득 자료로 쿠즈네츠 가설의 재검증을 실시하여 앞선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던 역 U자 가설을 입증했다. 황규선·현영남(2003)은 1970~2001년 동안의 11개 광역자치단체 지역내 총생산 자료를 활용하여 쿠즈네츠 가설검정을 시도하였으나, 경제성장과 지역소득 불평등간에



자료: 한국은행 포털

<그림 2-12>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과 보정된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위의 <그림 2-12>를 살펴보면 2011년을 기점으로 최근 노동소득분배율이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연구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영업자 소득을 노동소득에 반영해서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한다.

3) 박성복(1997)은 지역경제, 지방세계화, 지방행정, 지방 사회간접자본, 과학기술수준, 인적자본형성, 생활환경, 사회통합 등 8개 영역의 83개 개별지표들을 지역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지표단위의 동질화, 가중치 부여 등의 보정과정을 거쳐 이를 종합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음.

관계가 역 U자가 아닌 U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KDI(2013)와 한국노동연구원(2014), 이병희(2016)는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불평등 추이를 보기 위해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KDI(2013)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OECD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이 1970년대에 약 60%에서 1996년 67%로 상승하였다가 2009년에는 다시 60%로 하락했고 노동소득불평등도가 1997년 이후 오랫동안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장소득 불평등도가 OECD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다고 보았다. 이병희(2016) 역시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구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외환위기 이후 국민소득에서 노동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표 3-1> 지역사회 소득불평등도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 저자 | 분석대상 | 분석방법 | 주요결과 |
|--------------------|---|----------------------------|--|
| 김성태·정초시·노근호 (1991) | 1970~1986년 간 11개 시·도의 소득 자료 | 변동계수, 상대평균편차, 1인당 소득의 표준편차 | 쿠즈네츠 가설을 명확히 입증하지는 못했으나, 역 U자의 가능성 확인 |
| 노근호·정초시·김성태 (1995) | 1970~1991년 간 11개 시·도의 소득 자료 | 변동계수, 상대평균편차, 대수분산 | 쿠즈네츠의 역 U자 가설 확인 |
| 황규선·현영남 (2003) | 1970~2011년 간 11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제성장과 지역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 | 변동계수, 지니계수, 쿠즈네츠 지수 | 쿠즈네츠 가설의 역U자형이 아닌 U자 형태의 관계가 나타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처음에는 지역소득 격차가 감소하다가 전환점을 지나면서 점차 격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임 |
| 박성복 (1997) | 1997년 광역자치단체 지역지표 | 변동계수, 지니계수 |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불평등 지수로 변이계수와 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 전체 지역발전에 불평등도가 0.4246로 나타남 |
| 윤형호·임병인 (2012) | 2001~2009년 간 서울시 권역 간 소득격차와 |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 서울시 전체 소득불평등은 악화되었으나, 2000년 전후로 시행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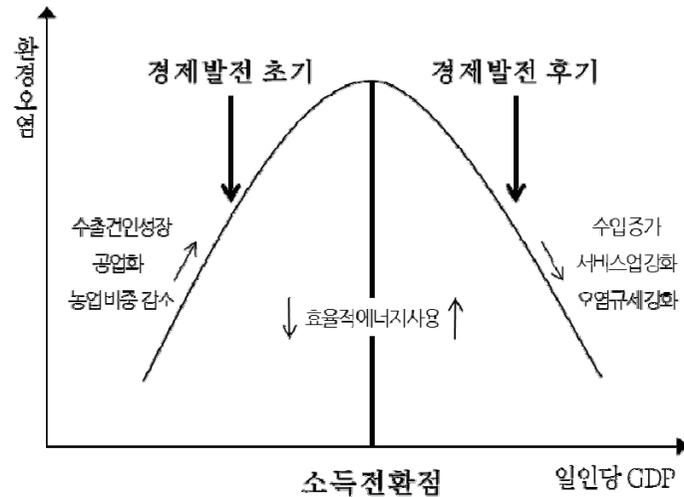
| | | | |
|----------------|-------------------------------------|---------------|---|
| | 소득불평등 추이 분석 | | 균형발전계획이 권역 간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 임병철 (2012) | 2000~2009년 간 충남 지역의 소득불평등도 | 지니계수 | 2000년 0.166에서 2009년 0.268로 충남지역의 소득불평등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 추세 또한 국가 전체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 KDI (2013) | 외환위기 이후 위기극복 경제정책이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분석 | 노동소득분배율, 지니계수 | 소득분배측면에서의 불평등은 노동소득의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집단 내 노동소득 불평등도는 1997년 이후 항구적으로 확대됨 |
| 한국노동연구원 (2014) |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와 요인을 분석 | 노동소득분배율 |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노동소득분배율은 79.8%였으나, 2012년에는 68.1%로 하락, 제조업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 이병희 (2016) | 외환위기 이후 노동 소득분배율과 가구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 분석 | 노동소득분배율 | 외환위기 이후 국민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업저축의 증가, 상위10%의 소득점유율 증가가 동시에 나타남 |

제2절 지역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

1. 환경

1) 환경쿠즈네츠곡선(EKC) 가설

쿠즈네츠 가설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면, 환경쿠즈네츠곡선(Environ- mental Kuznets Curve, EKC) 가설은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간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은 아래 <그림 3-1>과 같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의 문제가 증가하나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환경오염이 감소한다는 것이다(Grossman & Krueger, 1991).



자료: 이상우(2002) 재작성

<그림 3-1> 환경쿠즈네츠곡선 개념도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래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까지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환경쿠즈네츠곡선이 반드시 역 U자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음을 증명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Friedl & Getzner(2003)는 경제성장과 환경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에 의하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정도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가는 N자 형태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는 김정인·오경희(2005)가 우리나라 6대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역 U자형의 환경쿠즈네츠곡선을 도출하고, 소득수준이 계속 증가할수록 환경오염이 다시 증가하게 되는 N자형이 도출됨을 실증하였다.

이 외에도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에 대한 실증연구 중에는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지만, 미시적으로 지역별 소득수준과 환경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는 특징을 보인다.

<표 3-2>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에 대한 실증연구 사례

| 저자 | 분석대상 | 기간 | 종속변수 | 곡선형태 | ECK 확인여부 등 |
|-------------------------|-----------|------------------|------------------------|-------|-------------------|
| Tucker(1995) | 131개국 | 1971-1991 | CO ₂ | 역U자형 | ECK 확인 O |
| Holtz(1995) | 130개국 | 1951-1986 | CO ₂ | 역U자형 | |
| Hilton & Levinso (1997) | 48개국 | 1972-1992 | 자동차 배기가스 | 역U자형 | |
| Suri & Chanman(1998) | 33개국 | 1971-1990 | 1인당 에너지소비 | 역U자형 | |
| 김정인 외(1999) | 10개국 | 1985-1994 | CO ₂ | 역U자형 | |
| Hill & Magnani (2002) | 156개국 | 1970, 1980, 1990 | CO ₂ | 역U자형 | |
| 정장훈 외(2013) | 148개국 | 1992-2005 | CO ₂ | 역U자형 | ECK 확인 X |
| Shafik (1994) | 149개국 | 1960-1990 | CO ₂ | 선형(+) | |
| Kaufmann et al (1998) | 23개국 | 1974-1989 | SO ₂ | U자형 | |
| Friedl & Getzner (2003) | 오스트리아 | 1960-1999 | CO ₂ | N자형 | |
| Lantz & Eng (2006) | 캐나다 5개 지역 | 1970-2000 | CO ₂ | 관계없음 | ECK 확인 O (도시별 분석) |
| 이광수·이민원 (1996) | 한국 5개 지역 | 1985-1992 | 대기, 수질오염 | 역U자형 | |
| 김지욱 외(1998) | 한국 3개 지역 | 1980-1995 | 대기오염 | 역U자형 | |
| Wang et al(2011) | 중국 28개 지역 | 1996-2007 | CO ₂ | 역U자형 | ECK 확인 X (도시별 분석) |
| Lantz & Eng (2006) | 캐나다 5개 지역 | 1970-2000 | CO ₂ | 관계없음 | |
| 김정인·오경희 (2005) | 한국 6개 지역 | 1987-2002 | SO, NO, O ₃ | N자형 | |

자료: 조강희(2016) 참고

2) 소득불평등과 환경에 관한 주요 연구

소득불평등과 환경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연구로는 Boyce(1994)와 Kempf & Rossignol (2007)의 연구가 있다. Boyce(1994)는 소득불평등이 환경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주

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과도한 천연자원 개발을 들었으며, 이는 소득불평등이 심할수록 더욱 악화된다. 이때 고소득층 사람들은 국내 자원의 보호보다 외국 투자를 선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모두의 환경을 악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Kempf & Rossignol(2007)는 중위투표자이론을 토대로 소득불평등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국가의 평균소득은 대체로 중위 소득보다 높게 나타나며, 중위투표자이론에 따라 정책이 채택되기 때문에 중위투표자인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정책이 채택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성장을 통해 자신의 소득이 높아지길 원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소득불평등과 환경의 관계를 분석한 대표적인 실증연구로는 Drabo(2010)가 있다. 2007년 세계 90개국의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배출량과 BOD 자료를 활용해 소득불평등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이다. 분석 결과, Drabo(2010)는 고소득 국가에서 환경오염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이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Scruggs(1998)는 Boyce(1994)의 주장과는 달리, 부유한 사람이 환경 보호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환경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에 더 큰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Ravallion et al.(2000)는 17년간(1975~1992년) 42개국의 연간 데이터를 토대로 소득불평등이 환경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소배출량을 절감시키는 기계는 부유한 사람들이 더욱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대체로 에너지 사용 효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Borghesi(2000)는 126개국 1988~1995년간의 패널데이터와 고·중·저소득국가 37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소득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과 환경쿠즈네츠 곡선 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 소득불평등이 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소득불평등이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기도 하며, 동시에 개선시키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시키는 반면에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소득불평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Scruggs(1998)는 환경의 질을 반영하는 변수가 달라짐에 따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는 것이 관측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황진영·임응순(2013)이 106개국의 자료(1995~2007년)를 가지고 소득불

평등과 환경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했다. 황진영·임응순(2013)은 소득불평등이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환경의 질을 개선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반대로 조강희(2016)는 68개국의 42년간(1971~2012년) 자료를 토대로 소득불평등과 환경오염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온실가스 배출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강한별(2017)은 108개국의 9년간(2000~2008년)의 5개년(짝수 해)의 환경성과지수를 토대로 소득불평등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소득불평등이 환경성과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표본을 OECD와 비(OECD)로 분리하여 추정된 결과, OECD국가에서는 음(-)의 영향을 비OECD국가에서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표본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기대수명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3-3> 소득불평등과 환경에 관한 주요 실증연구

| 저자 | 연구방법론 | | | 주요 결과 |
|-------------------------|--|--------------------------|---------------------------|--|
| | 환경 변수 | 표본 | 추정 방법 | |
| Scruggs (1998) | 용존산소, 분변 대장균, SO ₂ , 미립자 | 1995년 세계 29개국, OECD 17개국 | OLS | 부유한 사람들은 환경을 보호하려 하는 성향이 있어 소득불평등이 환경 개선 |
| Torras and Boyce (1998) | SO ₂ 매년 중입자, 용존산소, 분변 대장균 | 1977-1991년 42개국, 58개국 | OLS | 권력을 공정하게 나눌수록 환경의 질이 좋아짐 |
| Borghesi (2000) | 1인당 CO ₂ 배출량 | 1988-1995년 126개국 | pooled LS, 고정효과 모형 | 소득불평등은 환경에 양과 음의 영향을 동시에 미쳐 소득불평등이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개선하지 못함 |
| Drabo (2000) | GDP당 CO ₂ , SO ₂ , BOD | 1970-2000년 90개국 | OLS, 2SLS, GMM | 소득불평등이 환경을 악화시키며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침 |
| Ravallion et al.(2000) | 탄소배출량, 연료사용량 | 1975-1992년 42개국 | OLS, Pooled LS, 고정효과 모형 | 소득불평등은 환경보존에 긍정적 |
| 황진영·임응순 (2013) | 1인당 CO ₂ (미터톤), GDP당 CO ₂ (kg) | 1995-2007년 106개국 | 최소제곱법, 랜덤효과 모형, 통합한 최소제곱법 | 소득불평등이 환경을 개선시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의성이 감소함 |
| 조강희(2016) | 1인당 CO ₂ 배출량 | 1971-2012년 68개국 | 랜덤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 소득불평등과 환경오염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 |
| 강한별(2017) | 환경성과지수 | 2000-2008 108개국 | 랜덤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 환경성과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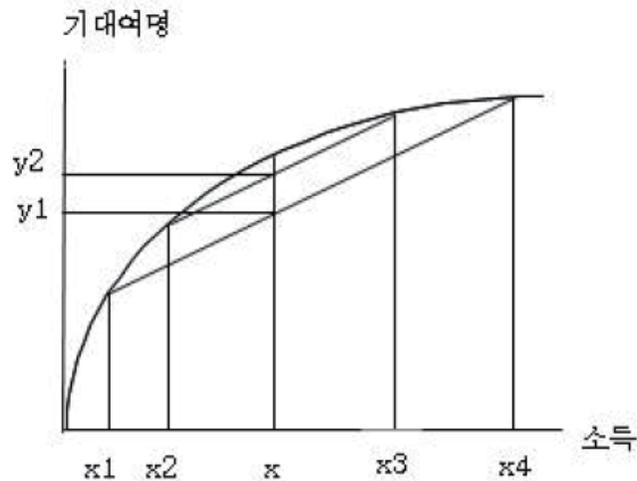
자료: 강한별(2017) 참고

2. 건강

1) 절대소득가설과 상대소득가설

소득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는 빈곤과 같이 건강유지에 필요한 절대소득의 부족이며, 둘째는 소득격차의 심화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전자는 주로 절대소득가설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후자의 소득불평등과 건강 간의 관계는 상대소득가설에서 다루고 있다. 두 가설 모두 소득불평등이 클수록 평균 기대여명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나 그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강영주·정광호, 2012).

절대소득가설의 경우, 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아래 <그림 3-2>와 같이 소득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Berkman 외, 2000),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국민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기대여명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Preston, 1976; Wilkinson, 1996).



자료: Rodger(1979)에서 재인용

<그림 3-2> 소득과 기대여명 사이의 이론적 관계

이를 토대로 절대소득가설은 개인의 건강은 개인소득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회의 소득분배상태와 무관하며(Wagstaff&van Doorslaer, 2000), 소득불평등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그 사회에 소득이 낮은 개인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성적 효과라고 주장⁴⁾한다.

4) <그림 3-2>에서와 같이 소득이 x2, x3인 사회의 기대여명의 평균은 y2임에도 각각 x1과 x4인 사회의 기대여명의 평균이 y1인 것처럼 소득분포가 넓을수록 평균적인 기대여명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와 달리, 상대소득가설은 소득의 불평등이 개인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동일한 소득수준이라도 소득이 불평등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건강이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소득가설에서 제시하는 소득불평등이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아래 <표 3-4>와 같이 4가지 경우로 나뉘볼 수 있다.

신유물론에서 ‘개인 소득’의 경우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빈곤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소득의 감소가 개인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관점(Macinko 외, 2003)으로 절대소득가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투자 감소’ 관점은 소득불평등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켜 개인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았다(Karlsson, 2010). 사회심리학에서 ‘사회적 지위’의 관점은 소득불평등이 클수록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개인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심리학의 ‘사회 응집력’ 관점은 소득불평등이 사회응집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자본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Kawachi 외, 1997). 소득불평등이 심한 지역일수록 주민들 간의 불신이 강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작은데 이러한 요인들이 범죄율 및 사망률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소득불평등이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공공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표 3-4> 소득불평등이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분석수준 | 이론 | 신유물론 | 사회심리학 |
|------|----|---|---|
| 개인 | | 개인 소득(Individual Income): 저소득층은 질병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적어 건강에 악영향 |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 불평등은 저소득층의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건강에 악영향 |
| 사회 | | 사회적 투자 감소(Social Disinvestment): 불평등은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회적, 환경적 조건들에 대한 투자 감소를 유발하여 건강에 악영향 | 사회 응집력(Social Cohesion): 불평등은 사회적 유대를 훼손시키고 저신뢰, 범죄율 증가 등을 유발하여 건강에 악영향 |

자료: 강영주·정광호(2012)

2)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관한 주요 실증 연구

해외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다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사연구가 드문 편이다. 국내 연구는 대부분 소득계층별 건강

및 의료이용 격차를 분석한 것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이용수준이 낮고(이상익·홍성철, 2003), 건강 상태에 관한 모든 지표가 저소득층에 불리하며 건강보험급여액이나 보건 의료비 지출 등에서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공평이 존재(문성현, 2004; 이용재·김승연, 2006; 이용재, 2010; 김진구, 2011)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는 해외 연구들은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Fiscella & Frank(1997)는 소득이 불평등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이 밀집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전체 건강수준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았으나, Judge(1995)는 소득 불평등과 건강 간의 상호연관성이 소득을 통제하면 사라지는 생태학적 오류⁵⁾일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Davey Smith(1996)는 소득 불평등과 건강 수준 사이에 연관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은 각 국가의 물질적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Kennedy(1998)도 미국의 50개 주의 주관적 건강상태 판단에 대한 소득불평등도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소득불평등이 국민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Fiscella & Frank(1997)는 측정오차로 인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실증연구를 통해 소득불평등과 건강 간에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Smith, 1996; Kennedy 외, 1998; Lynch 외, 2000;2005; Wilkinson, 2005; Wilkinson&Pickett, 2009).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대한 해외 주요 실증연구들의 결과는 다음 <표 3-5>로 정리할 수 있다.

<표 3-5>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관한 주요 실증연구 (해외사례)

| 저자 | 대상국가 / 표본집단 | 시점 | 소득불평등 영향 |
|--------------------------|---------------------------|----------------|----------|
| Fiscella & Franks (1997) | 미국 / 카운티 단위 성인 14,407명 | 1971 ~ 1975 | X |
| Daly 외 (1998) | 미국 / 주(州) 단위 성인 6,500명 | 1980, 1990 코호트 | X |
| Kennedy 외 (1998) | 미국 / 50개 주(州) 성인 205,245명 | 1993, 1994 | O |
| Blakely 외 (2000) | 미국 / 50개 주(州) 성인 279,066명 | 1995, 1997 | O |
| Diez_Roux 외 (2000) | 미국 / 50개 주(州) 성인 81,557명 | 1990 | O |
| Blakerly 외 (2002) | 미국 / 대도시와 카운티 성인 18,547명 | 1995, 1997 | X |

5)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는 생태학적 상관관계를 개인적 상관관계로 평가함으로써 범하게 되는 통계적 오류를 나타낸다.

| | | | |
|-------------------------------|--------------------------|-----------------------------------|---------|
| Sturm & Gresenz (2002) | 미국 / 대도시 지역 성인 8,235명 | 1997, 1998 | X |
| Subramnaian 외 (2003) | 미국 / 50개 주(州) 성인 90,000명 | 1995, 1997 | O |
| Subramanian 외 (2003) | 칠레 | 2000 | O |
| Chiang (1999) | 대만 | 1976, 1985, 1995 | O |
| Li & Zhu (2006) | 중국 | 1989, 1991, 1993, 1997, 2000 | O |
| Shibuya 외 (2002) | 일본 | 1995 | X |
| Kondo 외 (2008) | 일본 | 2001 | O |
| Vogli (2005) | 이탈리아 | 1995 ~ 2000 | O |
| Weich 외 (2002) | 영국 | 1991 | O (대도시) |
| Jones 외 (2004) | 영국 | 1997 | X |
| Blakely 외 (2003) | 뉴질랜드 | 1991 ~ 1994 | X |
| Gerdtham & Johannesson (2001) | 스웨덴 | 1997 | X |
| Olser 외 (2004) | 덴마크 | 1964 ~1992 코호트 1976 ~ 1994 코호트 | X |

자료: 강영주·정광호(2012) 참고

위에 제시된 연구들은 미국과 그 외 국가에 대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카운티와 같은 소규모 지역에서는 소득불평등의 건강에 대한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소득불평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크기가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Wilkinson, 2005)고 볼 수 있다. 미국 이외의 해외 사례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낮은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 소득불평등의 건강에 대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칠레, 영국의 대도시와 같이 소득 불평등이 큰 지역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지역단위가 광역단위로 변환되어야 소득불평등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에서 소득불평등과 건강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 시점에서의 횡단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강영주·정광호, 2012).

국내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건강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이와 관

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금이(1999)와 신호성·김동진(2008), 강영주·정광호(2012) 등이 있다. 이금이(1999)는 소득 불평등 정도와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혼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개인의 소득, 성별, 직종, 흡연, 비만 등 개인 특성 변수를 통제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다단계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가 불평등 정도가 작은 지역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 분포 상의 불평등 정도가 개인의 건강 수준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호성·김동진(2008)은 국내 최초로 건강형평성 수준을 측정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건강불평등도를 지수화 하였다. 이들은 개인 소득이 건강불평등 지수 차이의 약 30%를 설명한다고 추정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건강형평성 지수가 비례한다고 분석하였다.

강영주·정광호(2012)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윌킨슨 가설(Wilkinson Hypothesis)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토대로 소득불평등이 개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불평등이 국민 건강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개인 소득, 교육, 연령, 성별을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이 여러 시점에 걸쳐 개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금이(1999)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3. 교육

기존 연구의 경향은 소득불평등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다는 교육이 소득이나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Harvigust, 1961; Mincer, 1963; Stigler, 1970; Boudon, 1973; Becker, 1975; Alesina et al., 2004; Corcoran&Evans, 2010; 이준구, 1990; 오욱환, 2003; 남춘호, 2004; 김경근, 2005; 노경아, 2016 등)와 교육격차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Coleman, 1966; Jencks et al., 1972; Hauser et al., 1971; Berstein, 1973; 강희돈, 1988; 김병성, 2003; 이해영·강태중, 2004 등)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 인적자본이론과 선별이론

교육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과 선별이론(screening theory)이 있다. Mincer(1963)와 Becker(1964, 1975) 등에 의해 제기된 인적자본이론은 교육을 사람에 대한 투자행위로 보고 있다. 교육은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생산성의 대가로 높은 임금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

서 교육비로 사용된 기회비용은 미래의 더 높은 임금소득으로 회수되어 양자 간 비교를 통해 교육에 대한 수익률 계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Becker, 1964; 이준구, 1990)⁶⁾. 따라서 인적자본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학력별 임금격차가 학력별 생산성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남춘호, 2004).

한편, Stiglitz(1975)와 Wolpin(1977) 등의 선별이론은 교육이 능력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신호(signal)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이준구, 1990). 즉, 노동시장에서 고용주는 고용인의 능력을 학벌이나 학력 등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낮은 임금을 받아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김기환, 2009). 그러나 교육이 올바른 선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교육은 개인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능력에 따라 쉽게 왜곡될 수 있다(남춘호, 2004).

결국, 인적자본이론과 선별이론에 따르면 교육수준의 차이는 소득격차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Mincer(1974)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의 교육수준이 가계의 소득수준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ino(1990)의 교육비지출 결정요인분석에서도 가계의 근로소득이 높고 가장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가계의 교육비지출 수준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국내 연구 중, 교육수준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임금함수를 사용해 분석한 이정우(1995)의 연구에서도 가장의 교육수준이 가계의 소득수준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육의 투자수익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득불평등과 교육

현재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외에도 교육격차의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득불평등과 교육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다. Coleman(1996)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가정환경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이나 교사의 질과 같은 요인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수준, 즉 학업 성취도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오랜 명제로 자리하고 있다(김경근, 2005).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국내 연구들은 사교육비 지출 격차를 교육격차의 변수로 활용한 실증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인숙·여정성, 1996; 이성림, 2002;

6) Becker(1964)는 인적자본의 공급과 수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인적자본에 대한 수요·공급곡선을 토대로 적정 인적자본의 투자량과 수익률, 소득결정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

2005; 모수원, 2005; 양정호, 2006; 통계청, 2015 등).

양정호(2006)는 2001~2004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에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하며,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소득계층 간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점차 확대되었음을 발견했다. 통계청(2015)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서도 고소득 가구의 학생 일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약 7배로 나타나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노경아(2016)는 2000~2013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과 시·도별 교육비 예산 자료를 이용해 소득불평등과 공교육 지출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소득격차가 심화될수록 학생 일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4. 주민참여

1) 상대권력이론과 갈등이론

소득불평등과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권력이론(relative power)과 갈등이론(conflict theory)이라는 두 가지 핵심이론으로 양분된다. 상대권력이론의 옹호자들은 소득불평등이 정치참여를 감소시킨다고 주장(Goodin&Dryzek, 1980; Verba et al, 1972; 1978; Anderson&Beramendi, 2005; Lister, 2007; Gabvraith&Hale, 2008; Mahler, 2008; Solt, 2008)하고, 이와 반대로 갈등이론의 지지자들은 소득불평등이 정치참여를 자극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de Tocqueville, 1945; Oliver, 2001; Brady, 2004).

상대권력이론은 경제적 자원이 정치권력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부유한 사람은 더 큰 정치권력에 접근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확대될수록 정치적 세력의 양극화가 심화된다. 부유한 사람들은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의제조정이나 정치적 후원 등을 통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허재석, 2015). Bartels(2008)는 민주주의가 1인 1표(one person, one vote)라는 정치적 평등에 기초하고 있으나 경제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상황에서는 1불 1표(one dollar, one vote)로 변질되어 결국엔 정부정책이 부유한 사람들의 이익에 더욱 부합하는 방식으로 채택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은 정치과정을 통해 좌절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참여가 자신들의 이익 실현에 유의미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치참여에 소극적이게 된다는 것이다(Lukes, 2005).

반면, 갈등이론은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정치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불평등이야말로 갈등 유발에 가장 효과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유권자들은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과 신념을 지키려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de Tochoqueville(1945) 역시 미국이 프랑스와 같은 혁명을 겪지 않은 이유를 사유재산의 고른 배분상태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갈등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Gurr, 1968; Tilly, 1978; Skocpol, 1979). 혁명, 반란, 소요와 같은 사건들은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제도불신의 확대나 기회구조의 개방 등 정치적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과 정치참여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Stockmer&Scruggs, 2012; 박영득, 2016). 박영득(2016)은 1960~2014년 동안 서양의 17개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자 간의 관계가 정치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소득불평등이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 소득불평등과 주민참여

소득불평등과 주민참여의 관계를 다룬 연구의 상당수가 지역 내 소득불평등이 주민참여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인다(Alesina&La Ferrara, 2000; Brady, 2004; Solt, 2008; Anderson&Beramendi, 2008). 그러나 대부분이 주민 개인의 참여정도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수준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지, 혹은 지역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나마 Coffe & Geys(2006)와 Galbrith & Hale(2008)의 연구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소득불평등과 주민참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나, 투표율과 같은 주민참여의 일부분만을 분석하고 있어 주민참여 유형 간 차별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현승숙·금현석(2011)은 소득불평등과 주민참여 간의 관련성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의 유형을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로 구분하고 양자에 대한 소득불평등의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불평등 수준

7) 이제까지 살펴본 논의들은 여러 가지 정치참여의 방식들을 언급하고 있다. 투표참여가 주로 거론되었으나, 투표는 정치참여 중 일부로 전부를 대표할 수 없다. Varba&Nie(1972)는 아래 <표> 와 같이 정치참여의 양식(modes of participation)을 제시하고 있다.

<표> 정치참여의 양식

| | 행위양식 | 갈등의 차원 | 결과의 범위 | 주도자 여부 |
|------|----------|-----------|------------|--------|
| 선거적 | 투표 | 갈등적 | 집합적 결과 | 약함 |
| | 캠페인 | 갈등적 | 〃 | 약간 있음 |
| 비선거적 | 협력활동 | 보통은 갈등 없음 | 〃 | 많음 |
| | 시민주도의 접촉 | 갈등 없음 | 집합적/특수적 결과 | 매우 많음 |

자료: Verva&Nie(1972)

이 사회참여 중 봉사단체 수와 정치참여 중 지방선거 투표율과 모두 양(+)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주민참여의 정의 및 유형

- o 주민참여의 정의 (Adler&Goggin, 2015)
 - 주민 스스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
- o 주민참여의 유형 (Brady, 1999; Uslaner&Brown, 2005; Zukin, 2006)
 - 사회참여(civic engagement)
 - : 주민이 지역 내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행위
 -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 : 지역 내 주민이 자원배분 과정에 관여할 목적에서 지방정부 정책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제반 행위

자료: 현승숙·금현섭(2011) 참조

주민참여의 한 유형으로써 사회참여는 시민사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참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국가와 사적 부문의 중간 영역으로서 정당이나 조합, 자발적 결사체 등 다양한 집단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현승숙·금현섭, 2011). 그러나 이러한 집단들 중에서 지역 내 주민을 대변하는 집단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운영하는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라고 할 수 있다(Warren, 2001). 기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주민 개인의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참여 여부는 지역 내 소득 불평등 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Alesina&La Ferrara, 2000; Costa&Kahn, 2003). 주민 간의 소득격차가 작고 지역 내 동질성이 클수록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한 자발적 결사체의 결성 등 제반활동이 수월할 수 있으나, 계층 분화가 심해 동질성이 떨어지면 결사체 결성조차 어려워지고 주민 간 교류의 기회마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Knack&Keefe, 1997). 그러나 소득불평등이 심한 지역의 자발적 결사체 수가 적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La Ferrara(2002)의 연구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이 심할수록 소득수준이 각기 다른 계층들 모두가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를 조직하는 것은 어려우나, 비슷한 계층과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끼리 결사체를 구성할 수 있다. 여성단체, 농업조합, 상조회 등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불평등이 심한 지역에서도 자발적 결사체의 총수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참여의 또 다른 유형인 정치참여는 선거기간에 투표를 통해 공직자 선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관계없이 선출된 공직자가 정책결정을 할 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는 자발적 정치활동(political voluntary activity)으로써 투표를 제외한 선거캠페인, 시위, 지역공동체 활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Verba&Nie, 1972). 정치참여는 정책결정자를 통해 간접적으

로 공공문제를 해결하려한다는 면에서 주민이 자발적 결사체를 조직해 활동하는 사회참여와 구별된다. 그러나 정치참여는 돈, 시간, 의사전달 능력과 같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Verba, Scholzman&Brady, 1995). 이러한 자원들은 대체로 부유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여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은 소득계층 간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Brady, 2004). Galbraith&Hale(2008)은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저조한 것을 실증한 바 있으며, 그 외의 연구들도 소득불평등이 커질수록 주민의 정치참여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rady, 2004; Solt, 2008; Coff&Geys, 2006; Anderson&Beramendi, 2008).

5.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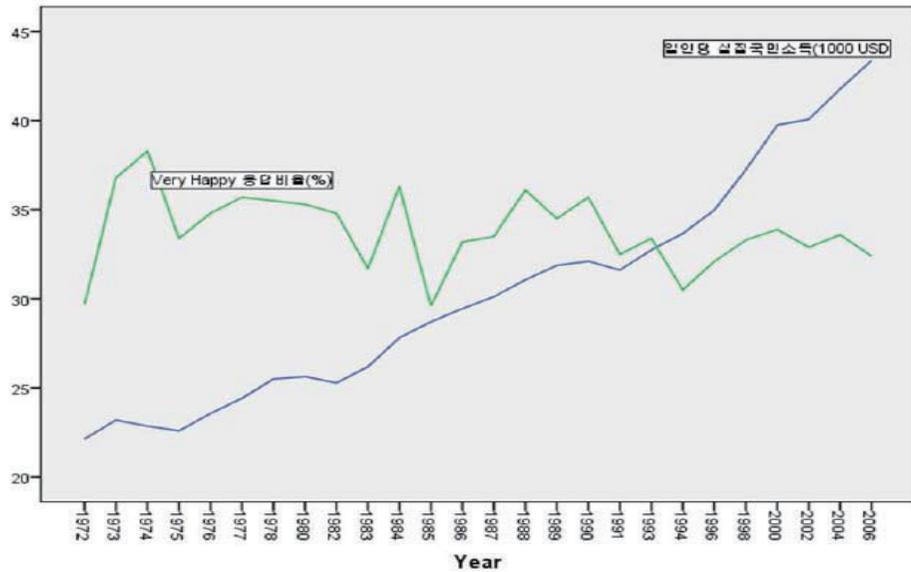
1)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

그간 많은 연구들이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왔다. 특히 경제학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소득함수로 이해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개인이나 국가의 소비능력이 향상되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개인, 가계, 그리고 국가의 행복이 증가한다고 가정해 왔다(문진영, 2012).

그러나 상대소득가설은 소득의 단순한 증가가 행복의 증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Duesenberry(1949)는 소득을 기반으로 한 행복은 개인의 상대적 위치에는 변함없기 때문에 소득 향상이 행복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이다. 첫째, 소득으로 인한 행복은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소득분포 상에서 본인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결정된다. 둘째, 소득으로 인한 행복은 자신의 과거소득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경제가 성장하여 모든 사람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소득향상이 개인 행복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즉, 개인의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소비규범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Easterlin, 1974; 문진영, 2012).

Easterlin(1974)은 상대소득가설을 기반으로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밝히고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포함한 19개국 국민들의 주관적 행복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소득의 증가가 반드시 행복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그는 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소득과 행복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국가 간에 비교할 경우에는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아져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가의 국민보다 더 행복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국민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경우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게 되면 소득이 계속 증가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료: 문진영(2012)

<그림 3-3> 소득증가와 행복의 관계 (美, 1972-2006)

또한 Easterlin(1974)은 특정시점(cross-section analysis)에서 볼 때,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평균적으로는 더 행복하지만,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도달한 후에는 소득이 계속 증가하더라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가 단층 분석과 시계열 분석 간에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현상을 ‘이스털린 역설(The Easterlin Paradox)’ 이라고 한다. Easterlin(1974)의 연구를 계기로 경제학계에서는 행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자리 잡게 되고, 행복경제학(Economics of Happiness)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문진영, 2012).

Hagerty & Veenhoven(2003)은 이스털린의 역설을 비판하며 소득이 행복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시간에 따른 장기효과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간, 부국과 빈국 간의 단기적 차이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이는 Easterlin(1974)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Easterlin et al(2010)은 한국, 중국, 칠레의 사례를 들어 이를 반박했다. 한국, 중국, 칠레의 일인당 실질국민소득이 두 배가 되던 해에 한국은 삶의 만족도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중국과 칠레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스털린의 역설과 같이 준거집단과 비교한 상대소득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수렴하고 있다(임보영·마강래, 2016).

2) 소득불평등과 행복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소득불평등과 행복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Delhey & Dragolov(2014)와 Hagerty(2000), Oshio & Kobayashi(2011) 등은 소득불평등이 심할수록 개인의 행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Connell(2004)과 Haller & Hadler(2006) 등은 경제적 불평등과 행복 간에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거나 오히려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더 행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록 행복불평등도 증가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 간에 관련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Ott, 2005; Stevenson & Wolfers, 2008; Beccetti et al, 2011; 서인석, 2015).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Stevenson & Wolfers(2008)이 있다. Stevenson & Wolfers(2008)는 1972~2006년 동안 미국의 행복 수준과 그 분산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미국인의 평균적인 행복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룹 간 격차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는데, 흑인과 백인 간의 행복 격차가 약화되었으며 성별 간의 격차는 거의 사라졌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행복 격차는 감소한 것으로 보였으나 교육에 의한 소득분포와 행복 격차 간의 변화 폭이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육과 같은 비금전적 요인이 행복을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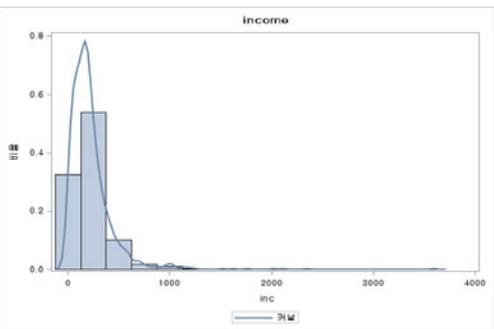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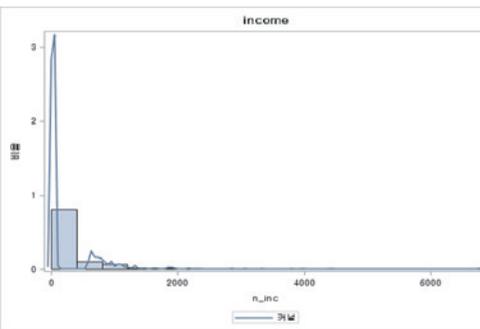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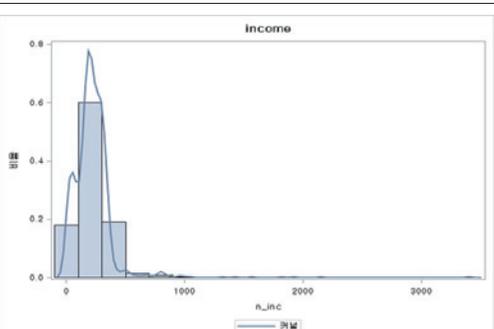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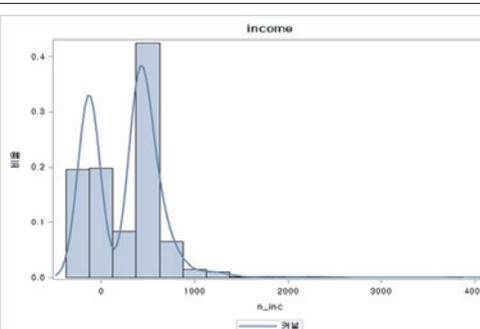
Beccetti et al(2011)는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행복불평등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는데, 고소득계층은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행복불평등이 낮았으며, 저소득계층에서는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행복 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자 간의 뚜렷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 간에 유의미한 관계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었다.

국내에서는 서인석(2015)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12년 지니계수를 토대로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두 불평등간에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입증했다. 임보영·마강래(2016)는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의 상관관계 분석과 함께,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소득 분포를 극단적 양극화 상태인 승자독식 구조와 소득재분배 상황, 그리고 양극화 상황으로 나누어 각 시나리오별 불평등 값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 <표 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 소득분포에서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 간의 관계는 앞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승자독식 구조에서는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재분배 상황에서는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양극화 상황에서는 승자독식 구조와 마찬가지로 양자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세 가지 시나리오들 중에서 소득불평등은 승자독식 구조, 양극화 구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재분배 구조에서는 소득불평등이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되어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7> 시나리오별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 간의 관계

| 기본적인 소득분포 상태 | | | 소득의 승자독식 구조 | | |
|---|---------|-----------|--|---------|----------|
|  | | |  | | |
| 변 수 | 표준편차 | 상관관계 | 변 수 | 표준편차 | 상관관계 |
| 소득 | 232.049 | 0.125*** | 소득 | 488.608 | 0.327*** |
| 행 복 | 0.927 | | 행 복 | 0.282 | |
| 소득의 재분배 구조 | | | 소득의 양극화 구조 | | |
|  | | |  | | |
| 변 수 | 표준편차 | 상관관계 | 변 수 | 표준편차 | 상관관계 |
| 소득 | 187.692 | -0.056*** | 소득 | 372.503 | 0.359** |
| 행 복 | 0.280 | | 행 복 | 0.280 | |

주1) *p<0.10, **p<0.05, ***p<0.01
 자료: 임보영 · 마강래(2016) 재구성

제3절 총 론

지역사회 불평등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 불평등도 측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변동계수나 지니계수, 노동소득분배율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시·도(광역자치단체)단위에서의 소득불평등도 변화를 분석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김성태 · 정초시 · 노근호, 1991; 노근호 · 정초시 · 김성태, 1995; 황규선 · 현영남, 2003; 박성복, 1997; 윤형호 · 임병인, 2012; 임병철, 2012 등).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노동소득 불평등도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KDI, 2013; 한국노동연구원, 2014; 이병희, 2016).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의 소득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환경, 건강, 교육, 주민참여, 행복도 5개 분야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 주요 이론과 선행연구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3-8>과 같다.

<표 3-8> 지역사회 소득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정리

| 분야 | 주요 이론 및 내용 | 소득불평등과의 관계 | 종속변수 | 주요 선행연구 |
|----|--|------------------|---------------------------------|---|
| 환경 | •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 - 경제발전 초기엔 환경문제가 증가하나,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높아지면 환경문제가 감소하게 됨 | 불평등 증가 → 환경 악화 | 1인당 CO ₂ 배출량 등 | Drabo(2000), 조강희(2016) |
| | | 불평등 증가 → 환경 개선 | 용존산소, 1인당 CO ₂ 배출량 등 | Scruggs(1998), Torras&Boyce(1998), Ravallion et al.(2000) |
| | | 관계 X | 1인당 CO ₂ 배출량 | Borghesi(2000), 황진영 · 임운순(2013) |
| 건강 | • 절대소득가설 - 개인의 건강은 소득불평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 상대소득가설 - 소득불평등과 개인의 건강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 불평등 증가 → 건강 악화 | 주관적 건강 | Fiscella&Frank(1997), 이금이(1999), 신호성 · 김동진(2008), 강영주 · 정광호(2012) 등 |
| | | 관계 X | 주관적 건강, 사망률 등 | Judge(1995) 등 |
| 교육 | • 인적자본이론 - 교육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더 높은 임금을 받게 하므로 교육과 소득은 양(+)의 관계임 • 선별이론 - 교육이 노동시장에서 잠재적 생산력을 구분하는 신호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교육과 소득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불평등 증가 ↔ 교육격차 증가 | 학업성취 능력 | Coleman(1996), Hauser et al.(1971), Berstein(1973), 강희돈(1988), 강태중(2004), 김경근(2005) 등 |
| | | | 사교육비 | 김인숙 · 여정성(1996), 이성림(2002, 2005), 모수원(2005), 양정호(2006), 통계청(2015) 등 |
| | | | 공교육비 | 노경아(2016) |

제4장 소득 불평등 현황 분석

제1절 대한민국 소득 불평등 현황

1.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소득분배율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60~70년대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용구조 변화와 함께 꾸준히 상승하여 1996년에는 62.4%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0년에 57.8%까지 하락한 후, 잠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0, 2011년에 잠시 하락한 후 2016년에 다시 64%까지 상승했다.

<표 4-1> 노동소득분배율(1953~2016)

| 연도 | 노동소득분배율 | 연도 | 노동소득분배율 | 연도 | 노동소득분배율 | 연도 | 노동소득분배율 |
|------|---------|------|---------|------|---------|------|---------|
| 1953 | 27.3 % | 1969 | 39.3 % | 1985 | 52.5 % | 2001 | 58.9 % |
| 1954 | 32.7 % | 1970 | 40.1 % | 1986 | 52.3 % | 2002 | 58.2 % |
| 1955 | 31.7 % | 1971 | 40.6 % | 1987 | 52.4 % | 2003 | 59.6 % |
| 1956 | 29.9 % | 1972 | 39.7 % | 1988 | 53.5 % | 2004 | 59.1 % |
| 1957 | 31.3 % | 1973 | 40 % | 1989 | 55.5 % | 2005 | 61.2 % |
| 1958 | 35.2 % | 1974 | 38.2 % | 1990 | 56.8 % | 2006 | 61.8 % |
| 1959 | 40 % | 1975 | 39.7 % | 1991 | 57.9 % | 2007 | 61.2 % |
| 1960 | 38.4 % | 1976 | 40.9 % | 1992 | 58.2 % | 2008 | 61.9 % |
| 1961 | 35.5 % | 1977 | 43.1 % | 1993 | 58.4 % | 2009 | 61.9 % |
| 1962 | 36.9 % | 1978 | 45.3 % | 1994 | 57.9 % | 2010 | 59.4 % |
| 1963 | 31.1 % | 1979 | 47.8 % | 1995 | 60.2 % | 2011 | 59.9 % |
| 1964 | 28.5 % | 1980 | 50.6 % | 1996 | 62.4 % | 2012 | 60.9 % |
| 1965 | 32.6 % | 1981 | 50.5 % | 1997 | 60.8 % | 2013 | 61.7 % |
| 1966 | 34.2 % | 1982 | 51.5 % | 1998 | 60.2 % | 2014 | 62.8 % |
| 1967 | 38.3 % | 1983 | 53.1 % | 1999 | 58.3 % | 2015 | 63.2 % |
| 1968 | 39 % | 1984 | 52.6 % | 2000 | 57.8 % | 2016 | 64 %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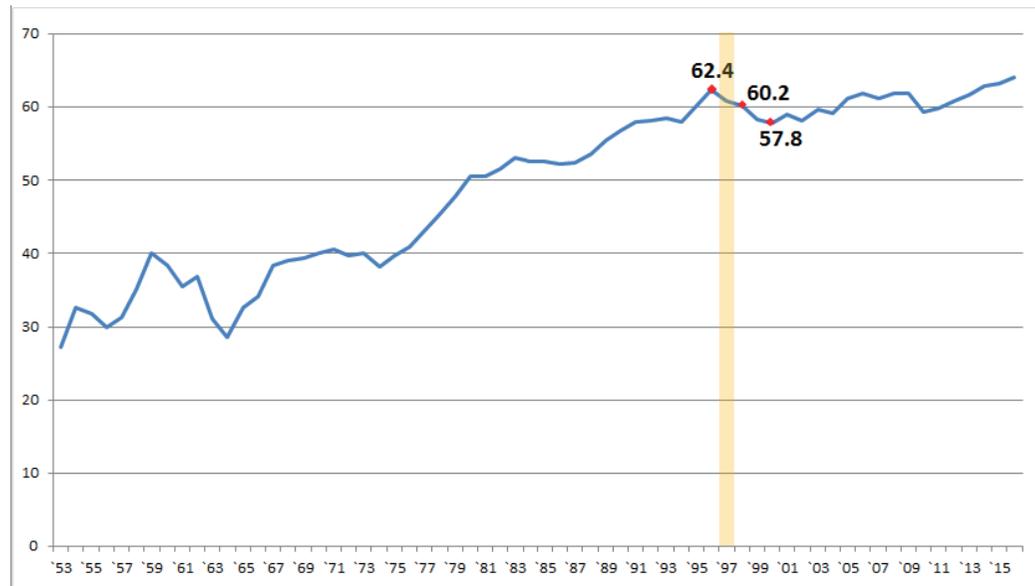
산업구조가 농업 중심에서 광공업 중심으로 전환되던 1970년대에는 낮은 수준에 머물던 노동소득분배율이 1970년 40.1%에서 1980년 50.6%로 10%p 이상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 | | | | |
|------|---|------------------|-----------------|--|
| 주민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권력이론 - 부자일수록 정치권력을 더욱 많이 소유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주민의 정치참여가 감소함 • 갈등이론 -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주민의 정치참여를 유발하여 양자 간에 양(+)의 관계를 보임 | 불평등 증가 → 주민참여 저조 | 투표율, 자발적결사체 수 등 | Knack&Keefe(1997), Verba et al.(1995), Brady(2004), Galbraith&Hale(2008) 등 |
| | | 불평등 증가 → 주민참여 활발 | 투표율, 봉사단체 수 등 | Alesina&La Rerrara(2000), Costa&Kahn(2003), 현승숙·금현섭(2011) 등 |
| | | 관계 X | 투표율 등 | Stockmer&Scruggs(2012), 박영득(2016) 등 |
| 행복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털린의 역설 - 일정시점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증가하나, 일정수준 이상에서는 행복이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게 됨 | 불평등 증가 → 행복도 증가 | 삶의 만족도 등 | O' connell(2004), Haller&Hadler(2006) |
| | | 불평등 증가 → 행복도 감소 | | Hagerty(2000), Oshio&Kobayashi(2011), Delhey&Dragolov(2014) 등 |
| | | 관계 X | | Ott(2005), Beccetti et al.(2011), Stevenson&Wolfers(2008) 서인석(2015) 등 |

선행연구 분석 결과, 현재까지는 소득불평등과 환경, 주민참여, 행복도의 관계에 있어서 합치된 견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건강의 경우, 소득불평등 증가가 건강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불평등과 교육 간에는 단방향 관계가 아닌 교육수준이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격차가 교육 격차의 원인이 되는 등 양자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및 수원시의 소득불평등 현황과 수원시의 소득 불평등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980년대 초반에는 50% 초반 수준을 유지하다 1987년 이후 노동조합 조직 확대에 따른 임금교섭력 강화로 꾸준히 상승하여 1996년에는 62.4%를 기록하였다(한국은행, 2003). 외환위기를 겪으며 2000년에는 57.8%까지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였으나 2008, 2009년에는 61.9%를 기록하여 외환위기 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그림 4-1> 노동소득분배율(1953~2016)

2. 외환위기 전후의 소득 집중도

아래 <표 4-2>는 우리나라의 1979년부터 2010년⁸⁾까지 상위 0.01%부터 10%에 이르는 소득계층별 소득 비중을 보여준다. 1997년 이전까지 상위소득계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8년에는 잠시 하락했으나 1년 만에 증가세에 돌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에 전체 20세 이상 인구 1인당 평균소득이 1,638만원(전체 개인소득 638조원 ÷ 3,985만 명)일 때, 상위 1%(약 39만 명)의 소득비중은 11.9%이고, 평균소득은 전체 평균의 11.9배인 1억 9,553만원이 된다. 상위 0.01%의 경우에는 소득비중이 1.67%이고, 평균소득이 전체의 167배인 27억 3,80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낙년, 2012).

8) <표 4-2>의 자료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정리된 자료로 1986년부터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다가 1995년부터 다시 실리게 되어, 부득이하게 공백 기간 동안의 자료는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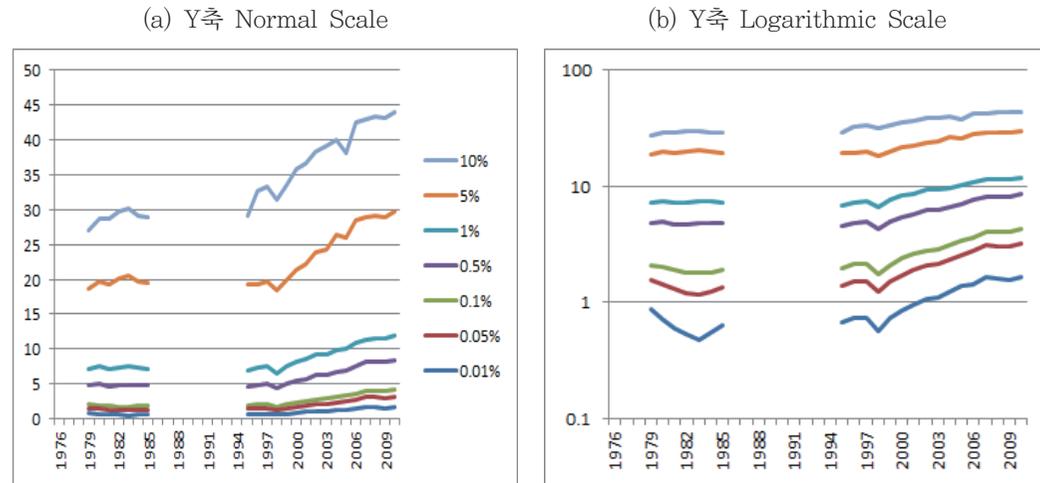
<표 4-2> 우리나라 상위 소득 비중 (1979-2010)

| | P99.99~100 | P99.95~100 | P99.9~100 | P99.5~100 | P99~100 | P95~100 | P90~100 |
|------|------------|------------|-----------|-----------|---------|---------|---------|
| 1979 | 0.86 | 1.56 | 2.06 | 4.79 | 7.17 | 18.66 | 27.03 |
| 1980 | 0.72 | 1.43 | 1.99 | 4.95 | 7.47 | 19.78 | 28.8 |
| 1981 | 0.6 | 1.3 | 1.89 | 4.71 | 7.14 | 19.29 | 28.63 |
| 1982 | 0.53 | 1.2 | 1.78 | 4.73 | 7.27 | 20.05 | 29.66 |
| 1983 | 0.47 | 1.17 | 1.78 | 4.84 | 7.46 | 20.49 | 30.18 |
| 1984 | 0.55 | 1.23 | 1.8 | 4.76 | 7.35 | 19.79 | 29.19 |
| 1985 | 0.64 | 1.33 | 1.91 | 4.75 | 7.16 | 19.4 | 28.84 |
| ... | | | | | | | |
| 1995 | 0.67 | 1.4 | 1.96 | 4.57 | 6.88 | 19.18 | 29.2 |
| 1996 | 0.72 | 1.5 | 2.1 | 4.87 | 7.27 | 19.36 | 32.64 |
| 1997 | 0.73 | 1.52 | 2.14 | 4.96 | 7.49 | 19.8 | 33.37 |
| 1998 | 0.56 | 1.23 | 1.76 | 4.3 | 6.58 | 18.44 | 31.43 |
| 1999 | 0.72 | 1.49 | 2.1 | 4.97 | 7.55 | 19.9 | 33.45 |
| 2000 | 0.85 | 1.7 | 2.37 | 5.42 | 8.26 | 21.47 | 35.77 |
| 2001 | 0.96 | 1.91 | 2.6 | 5.69 | 8.63 | 22.3 | 36.64 |
| 2002 | 1.07 | 2.09 | 2.8 | 6.22 | 9.25 | 23.82 | 38.42 |
| 2003 | 1.11 | 2.16 | 2.87 | 6.32 | 9.32 | 24.38 | 39.14 |
| 2004 | 1.23 | 2.34 | 3.14 | 6.67 | 9.74 | 26.4 | 39.96 |
| 2005 | 1.36 | 2.57 | 3.4 | 6.99 | 10.07 | 25.91 | 38.18 |
| 2006 | 1.43 | 2.74 | 3.63 | 7.53 | 10.9 | 28.57 | 42.43 |
| 2007 | 1.62 | 3.07 | 4.03 | 8.07 | 11.41 | 28.86 | 42.88 |
| 2008 | 1.59 | 3.05 | 4.04 | 8.13 | 11.51 | 29.17 | 43.38 |
| 2009 | 1.57 | 3.01 | 4 | 8.12 | 11.47 | 28.98 | 43.13 |
| 2010 | 1.67 | 3.2 | 4.24 | 8.47 | 11.93 | 29.64 | 43.9 |

ex) P99.99~100은 상위 0.01%를 의미

자료: 국세청

<그림 4-2>는 1979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소득집중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 공백은 있었으나, 동일 기간의 종합소득 추이 등을 비추어볼 때 소득집중도에 큰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김낙년, 2012). 그래프를 살펴보면 상위 1%의 소득 집중도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까지는 7%로 유지되다 1998년에 잠시 주춤했으나 2008년까지 다시 꾸준히 상승하였고, 조금 하락하다 2010년에는 11.93%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상위계층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의 우측 그래프는 로그함수로 변환하여 그래프의 기울기로 증가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최상위계층일수록 기울기가 가파른 것으로 보아 소득집중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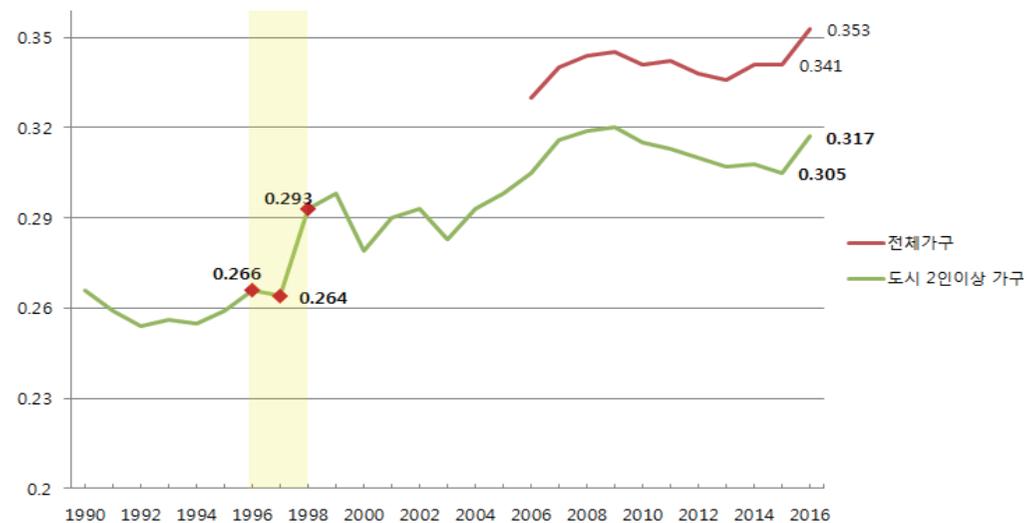


자료: 김낙년(2012)

<그림 4-2> 소득 집중도(1979~2010)

3. 외환위기 전후의 지니계수

지니계수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0.25~0.26 수준에 머물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98년 0.293, 1999년 0.298을 기록했다. 곧바로 2000년에는 0.279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몇 차례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6년에 0.317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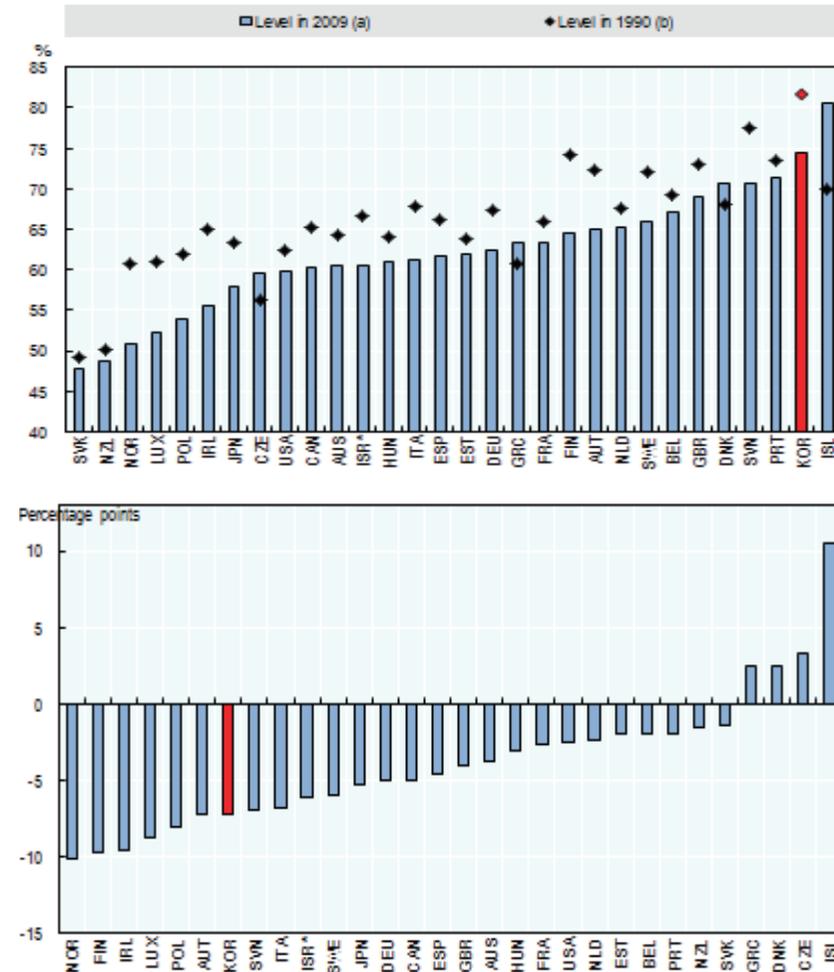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4-3> 지니계수⁹⁾ (1990~2016)

4. 국제적 비교 및 쟁점

1) 노동소득분배율의 국제비교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그림 4-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2009년)이 세계 30개국 중에서 2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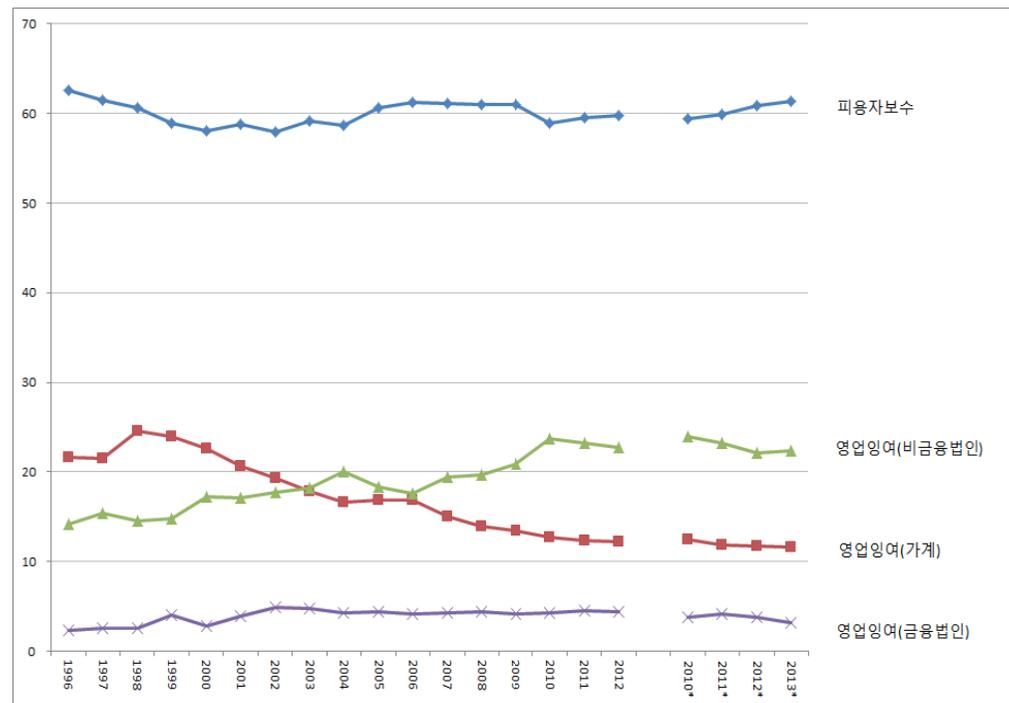
자료: OECD(2012)

<그림 4-4> OECD의 노동소득분배율 국제비교 (1990~2009)

9)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작성되는데, 2001년까지 가계동향조사는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나, 2002년부터는 2인 이상 비농가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되었고 2006년부터는 1인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림 4-3>에 제시된 지니계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시장소득(세전)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OECD통계가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1인당 노동소득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추계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을 과대 측정하게 된다. 반면 자영업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경제 부문의 것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 앞선 OECD통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이병희, 2015).

또한 1990~2009년 기간에 대다수 국가의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폭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 부문의 감소와 소득 하락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5>는 피용자보수와 부문별 영업잉여가 요소비용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임금근로자가 증가(63.3%→71.8%)하였음에도 피용자보수의 비중은 매우 조금 감소하였다. 또한 가계 부문의 영업잉여가 1996년 21.6%에서 2012년에 12.3%로 9.3%p 급감했음에도 법인 부문의 영업잉여는 8.5%p 증가하였으며, 금융 법인의 영업잉여 역시 증가했다. 즉,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에 자영업 부문의 쇠퇴와 법인이윤소득의 증가가 함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병희, 2015).



자료: 이병희(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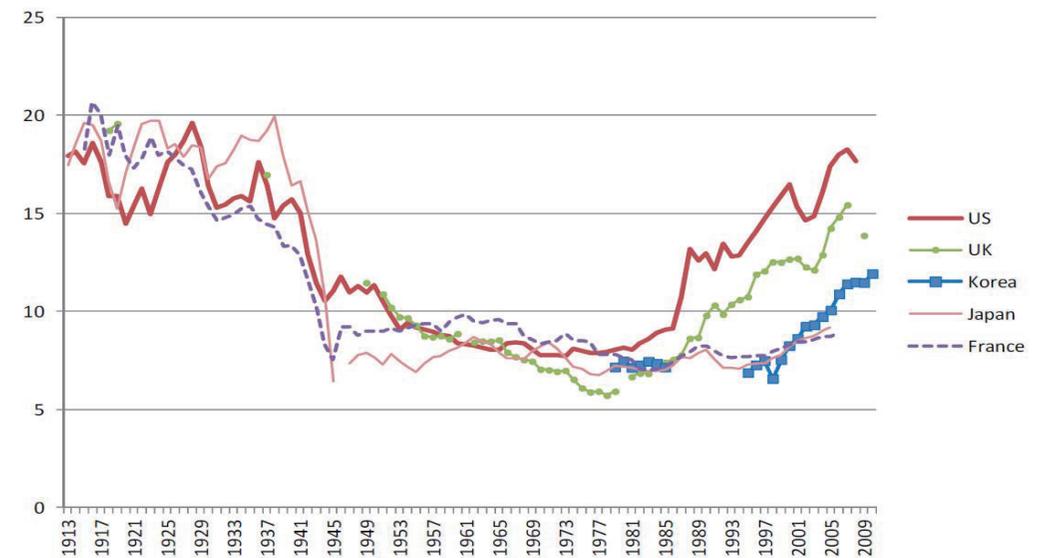
<그림 4-5> 요소비용 국민소득의 구성항목별 비중 (%)

2) 소득 집중도의 국제비교

아래 <그림 4-6>은 1913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위 1%의 소득 집중도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이전(1939~1945)에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는 15~20%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각 국의 소득 집중도는 거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1970년대까지는 일정수준을 유지하였다.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 일본과 프랑스 간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영국은 1970년대에 소득 집중도가 최저점을 찍은 후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1980년대에 더욱 가파르게 상승해 2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사례는 경제가 성숙단계에 이르러 소득 집중도의 추이가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간에 역U자형 관계를 보인다는 쿠즈네츠(1955) 가설에 반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 집중도는 1970~90년대에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왔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분배에 있어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World Bank, 1993)받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 집중도의 급격한 증가와 노동소득분배율(<그림 4-4>)의 하락세로 미루어 보아, 노동과 자본 간의 불균형이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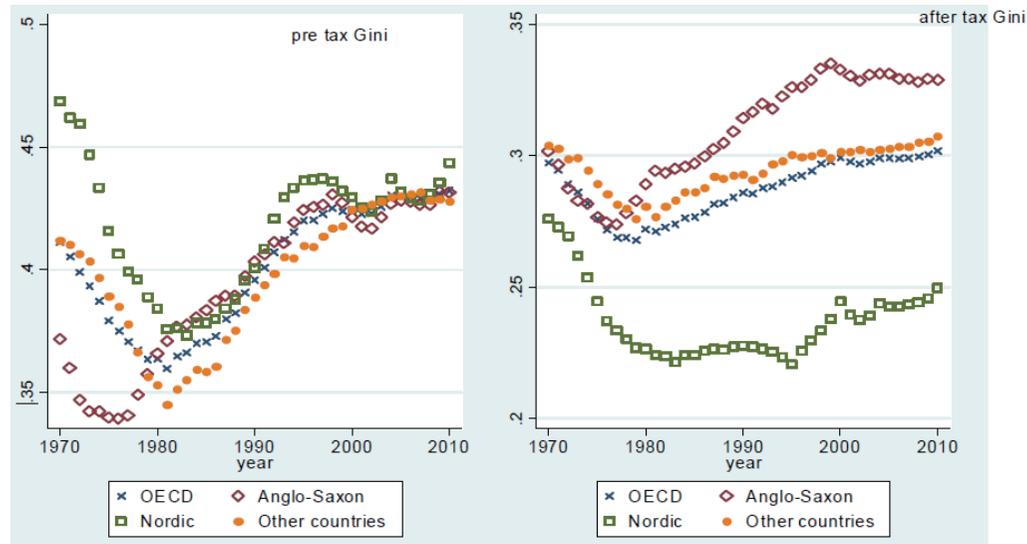


자료: 김낙년(2012)

<그림 4-6> 상위1%의 소득 집중도 국제비교 (1913~2010)

3) 지니계수의 국제비교

1970년부터 2010년까지 OECD 주요 국가들의 지니계수 추이를 살펴보면, 좌측의 세전지니계수의 경우, 1970~1980년 동안 그룹별¹⁰⁾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1980년대 이후 거의 모든 그룹들이 유사하게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세후지니계수를 보면 1980년대 이후 그룹 간 소득불평등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Nordic그룹을 제외하고는 세전·세후지니계수 추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ordic그룹의 세후지니계수는 0.25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Nordic그룹 내 국가들이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각 그룹별 소득 집중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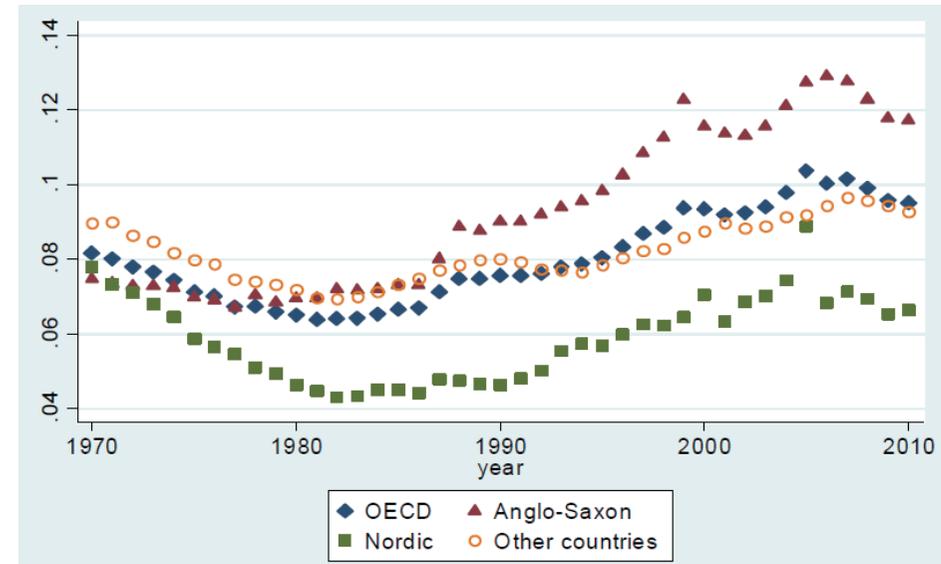
자료: 서한석(2015)

<그림 4-7> OECD 19개 국가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1970~2012)

OECD 19개 국가의 상위 1% 소득 집중도(<그림 4-8>)를 보면 1980년대 이후 Anglo-Saxon 그룹의 상위 1% 소득점유율이 여타 OECD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고, 이에 반해 Nordic그룹의 상위 1% 소득점유율이 1% 미만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OECD 19개 국가그룹 분류

| | |
|-----------------|---|
| Anglo-Saxon | 뉴질랜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
| Nordic |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
| Other countries |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



자료: 서한석(2015)

<그림 4-8> OECD 19개 국가의 상위 1% 소득 집중도

우리나라는 지니계수(세전:0.26~0.32, 세후:0.245~0.295)가 OECD 평균(세전:0.38~0.42, 세후:0.26~0.30)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그림 4-9>와 같이 Anglo-Saxon이나 Other countries그룹과 같이 세전·세후지니계수 추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상위 1% 소득 집중도가 2000년대 후반부터 10%를 넘어서고 있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4-9> 우리나라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1990~2012)

제2절 경기도 및 수원시의 소득 불평등

1. 경기도 시군 간 소득 격차

경기도 시군간의 소득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지니계수의 변형으로 측정될 수 있다(임병철, 2012). 경기도 내 31개 시군들을 별개의 소득자로 간주하고 개별 시군의 지역 GDP(GRDP) 간의 격차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다 긴 시계열로 비교하기 위해 우선 GRDP를 소득의 대체변수로 삼아서 불평등도를 측정하였다.

$$G = \frac{1}{2n^2\mu} \times \sum_{i=1}^n \sum_{j=1}^n |Y_i - Y_j|$$

n=시군수, Yi=시군의 1인당 GRDP, μ=평균 1인당 GRDP

혹은 n=시도수, Yi=시도의 1인당 GRDP, μ=평균 1인당 GRDP

나아가 국가 전체 시도 간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지니계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2003년에서 2013년까지 16개 광역시도 지니계수, 경기도 지니계수는 아래와 같았다.

<표 4-3> 국가 지니계수와 경기도 지니계수

| | 지니계수 | | |
|------|-------|----------|-------|
| | 국가 | 16개 광역시도 | 경기도 |
| 2003 | 0.283 | 0.165 | 0.216 |
| 2004 | 0.293 | 0.181 | 0.233 |
| 2005 | 0.298 | 0.178 | 0.227 |
| 2006 | 0.305 | 0.173 | 0.239 |
| 2007 | 0.316 | 0.179 | 0.243 |
| 2008 | 0.319 | 0.186 | 0.214 |
| 2009 | 0.320 | 0.179 | 0.206 |
| 2010 | 0.315 | 0.200 | 0.219 |
| 2011 | 0.313 | 0.205 | 0.227 |
| 2012 | 0.310 | 0.203 | 0.216 |
| 2013 | 0.307 | 0.189 | 0.220 |

자료: 통계청 지역계정

분석결과 경기도 내 지자체 간의 소득불평등도는 국가 내 지자체 간의 소득불평등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국가 지니계수가 지난 10년 간 0.024p 증가한 반면 경기도의 지니계수는 10년 간 정체해오면서 둘의 격차는 줄어들었다.

2. 수원시 가구 소득분포 현황

1) 수원시 사회조사

매해 조사되는 수원시 사회조사에서 100만 원 미만에서 700만 원 이상까지 100만 원 단위의 소득구간별로 수원시 가구의 (세전)소득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수원시 사회조사의 가구주 소득구간 설문은 1600 가구(장안구 380가구, 권선구 480가구, 팔달구 320가구, 영통구 42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행정구별로 소득구간별 가구분포를 알 수 있다. 수원시 사회조사는 비록 가구별로 정확한 소득 액수를 묻지는 않으나 수원시 사회조사의 소득구간 자료를 통해 우리는 대략적으로라도 수원시의 소득분포와 불평등 현황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수원시 사회조사에서는 수원시 가구의 ‘주된 소득원’을 물어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대략적인 분포를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사회조사 소득 자료를 통해 수원시의 소득분포와 불평등 지수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가 지니는 한계점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고 다음의 3가지 가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첫째, 각 소득구간에 속한 가구의 소득은 각 소득구간의 중간 값으로 균등분포를 따른다.

둘째, 수원시 사회조사에 응한 가구의 최고소득 구간 상한치는 월 800만 원이다.

셋째, 모든 가구의 ‘주된 소득원’은 각 가구의 소득 전체를 이룬다.

첫 번째는 그룹화된 자료의 평균값을 도출할 때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국세청 자료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원시민들의 각 100만 원 단위 소득구간별 소득분포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채택한 가정이다. 한편, 이러한 방식으로 지니계수를 추정할 경우 소득구간 내의 소득격차를 과소평가함으로써 지니계수의 과소추정을 불러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매우 보수적인 가정이지만, 수원시 지역사회 고소득층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참고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뤄진 가계조사 응답자 중 최고소

득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했다. 한편, 통계청의 2015년 가계동향조사에서는 600만 원 이상 소득을 버는 가구(도시, 2인 이상)의 평균소득이 약 82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더 나아가 600만 원 이상 소득계층의 가구분포와 소득규모 분포를 구간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추정하기 위해 Piketty & Saez(2003) 등에 의해 제안된 파레토 보간법(pareto interpolation)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서 가구 수와 가구소득의 분포를 700만 원 이상 3100만 원 미만의 구간까지 추정했을 때, 월 7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약 월 960만 원의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일 수원시 사회조사에서 최고소득 구간의 ‘총소득’ 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분포를 추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정확한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역시 비현실적인 가정이나 주된 소득원과 주된 소득원이 아닌 소득이 개별 소득유형별로 서로 상계된다고 봄으로써 분석의 편의를 도모했다. 일반적인 경우, 극단적인 하위소득계층과 극단적인 상위소득계층일수록 가구 소득 중 자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가정들을 감안하여 가공된 수원시의 사회조사 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령 특정 소득구간이나 소득원의 가구 수와 비율에 비해 특정 소득구간이나 소득원의 소득액수나 전체 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해석은 더욱 유의해야 한다.

2) 수원시의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1) 수원시 전체

<표 4-4> 수원시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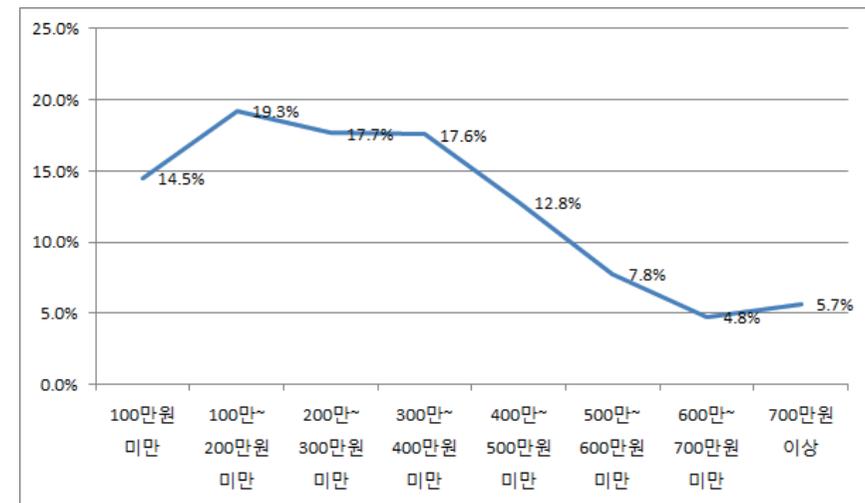
| | 인원 | 비율 | 총소득 | 비율 | 누적비율 |
|-----------------|------|--------|--------|-------|--------|
| 100만 원 미만 | 232 | 14.5% | 11600 | 2.3% | 2.3% |
| 100만~ 200만 원 미만 | 308 | 19.3% | 46200 | 9.1% | 11.4% |
| 200만~ 300만 원 미만 | 283 | 17.7% | 70750 | 14.0% | 25.5% |
| 300만~ 400만 원 미만 | 281 | 17.6% | 98350 | 19.5% | 44.9% |
| 400만~ 500만 원 미만 | 205 | 12.8% | 92250 | 18.3% | 63.2% |
| 500만~ 600만 원 미만 | 124 | 7.8% | 68200 | 13.5% | 76.7% |
| 600만~ 700만 원 미만 | 76 | 4.8% | 49400 | 9.8% | 86.5% |
| 700만 원 이상 | 91 | 5.7% | 68250 | 13.5% | 100.0% |
| 총합 | 1600 | 100.0% | 505000 | 100% | |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2015)

먼저 수원시의 소득구간별 가구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월 100만 원 이하에서 700만 원 이상까지 100만 원 단위로 나눈 8개의 소득구간별 가구수와 가구비율은 위의 <표 4-4>와 같다.

월 700만 원 즉, 연 소득이 84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수원시 전체 가구수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원시 고소득 가구의 상위 5.7% 안에 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구소득이 연 8400만 원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고소득 상위 5.7%의 가구가 수원시 전체 소득의 약 13.5% ‘이상’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소득자들의 소득분포가 일반적으로 멱함수의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고소득 상위 5.7%가 13.5%를 훨씬 상회하는 소득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보통 소득이 증가할수록 확률밀도함수는 긴 꼬리(Long-tail)를 그리는 멱함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그림 4-10>에서 마지막 소득구간인 ‘700만 원 이상’ 구간에 속한 가구수가 바로 직전의 구간에 속한 가구수보다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아래 <그림>의 점선은 2인 이상 도시가구에 대한 가계동향조사를 파레토 보간법을 이용하여 1200만 원 구간까지 확장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월 700만 원 이후부터는 소득분포가 꼬리 형태로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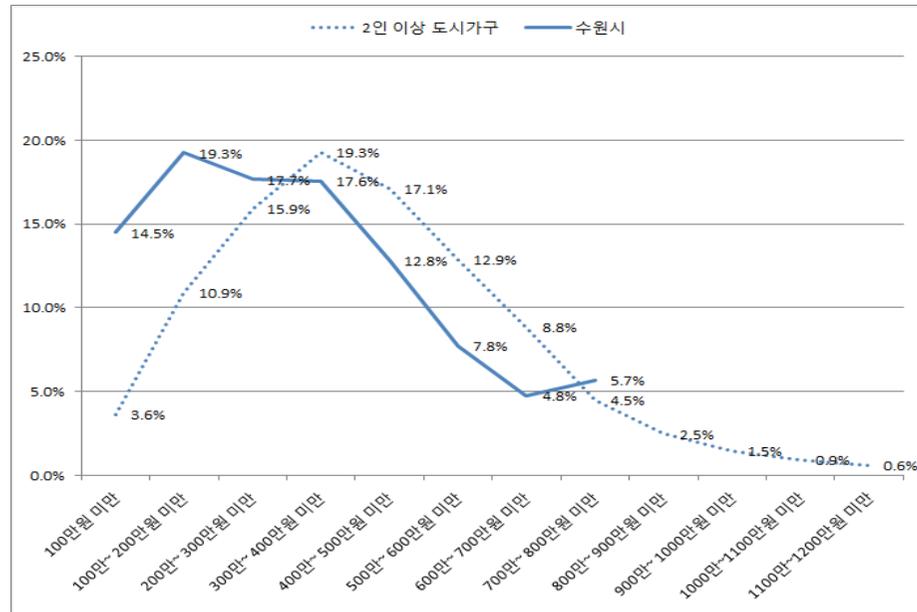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2015)

<그림 4-10> 수원시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소득 자료 대부분의 확률밀도함수 역시 이러한 멱함수 분포를 따른다. 이는 수원시의 경우에도 월7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의 분포가 그 이상의 소득구간들에 걸쳐 더 길게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실이 그러할 경우, 현재의 수원시 사회조사의 설

문문항은 고소득층에 대한 많은 정보를 누락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설문문항에서 소득 구간을 늘려 잡든가 아니면 최고 소득구간 응답자들의 월 소득을 주관식으로 묻는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4-11> 수원시와 전국 2인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또한 가계동향조사에서 조사된 전국 2인 이상 도시가구 전체의 소득분포와 비교해보면, 수원시는 다른 도시보다 저소득층의 비중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저소득층 중에서 1인 가구 형태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이는 2인 이상 도시가구 자료에서 1인 가구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 효과일 가능성도 있다.

(2) 장안구

수원시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수원시의 행정구별, 소득구간별 가구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의 순서대로 그 분포를 도표와 그래프로 정리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 4-5>와 같다.

월 700만 원, 연 8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가구는 장안구 가구의 3.9%를 차지한다. 이는 다시 말해 장안구 고소득 가구의 상위 3.7% 안에 들기 위해서 적어도 가구 전체가 84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월 700만 원, 연 8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가구가 수원시 가구의 5.7%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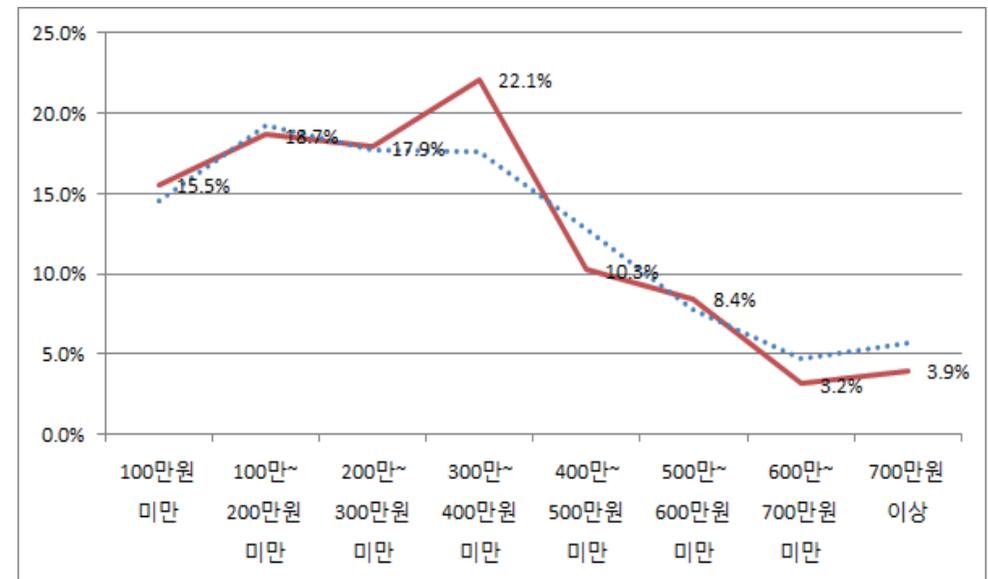
를 통해 장안구가 수원시 평균보다 고소득 가구가 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기할 사항으로, 월 200만 원 미만을 버는 장안구의 가구비율은 수원시와 비슷한 반면 월 300~400만 원 이상을 버는 소득계층의 가구비율이 수원시보다 더 두터운 것이다. 월 300~400만 원을 버는 가구비율이 장안구의 경우 22.1%로서 17.6%인 수원시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5> 장안구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 | 인원 | 비율 | 누적비율 |
|----------------|-----|-------|--------|
| 100만 원 미만 | 59 | 15.5% | 15.5% |
| 100만~200만 원 미만 | 71 | 18.7% | 34.2% |
| 200만~300만 원 미만 | 68 | 17.9% | 52.1% |
| 300만~400만 원 미만 | 84 | 22.1% | 74.2% |
| 400만~500만 원 미만 | 39 | 10.3% | 84.5% |
| 500만~600만 원 미만 | 32 | 8.4% | 92.9% |
| 600만~700만 원 미만 | 12 | 3.2% | 96.1% |
| 700만 원 이상 | 15 | 3.9% | 100.0% |
| | 380 | 100% | |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그림 4-12> 수원시 장안구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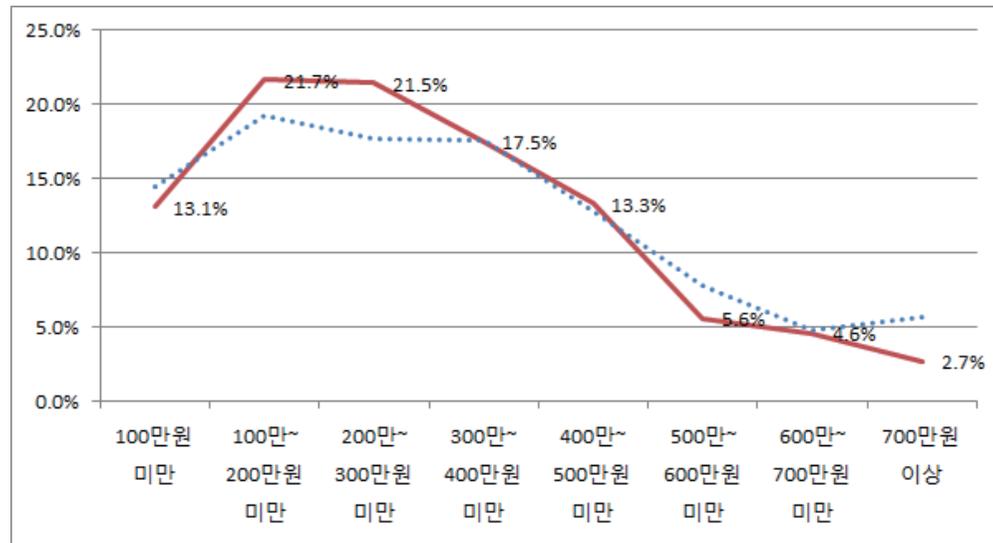
(3) 권선구

권선구의 소득구간별 가구분포는 아래의 <표 4-6>, <그림 4-13>과 같다.

<표 4-6> 권선구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 | 인원 | 비율 | 누적비율 |
|-----------------|-----|-------|--------|
| 100만 원 미만 | 63 | 13.1% | 13.1% |
| 100만~ 200만 원 미만 | 104 | 21.7% | 34.8% |
| 200만~ 300만 원 미만 | 103 | 21.5% | 56.3% |
| 300만~ 400만 원 미만 | 84 | 17.5% | 73.8% |
| 400만~ 500만 원 미만 | 64 | 13.3% | 87.1% |
| 500만~ 600만 원 미만 | 27 | 5.6% | 92.7% |
| 600만~ 700만 원 미만 | 22 | 4.6% | 97.3% |
| 700만 원 이상 | 13 | 2.7% | 100.0% |
| 총합 | 480 | 100% | |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그림 4-13> 수원시 권선구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월 700만 원, 연 8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가구는 권선구 전체 가구의 2.7%를 차지하며 이는 다시 말해 권선구 고소득 가구의 상위 2.7% 안에 들기 위해서 적어도 가구 전체가 84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월 700만 원, 연 8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가구가 수원시 가구의 5.7%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며, 이를 통해 수원시 전체와 비교하여 권선구에는 고소득 가구가 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원시 권선구는 수원시에 비해 소득구간별 가구분포(점선) 상에서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 비율이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권선구는 수원시 평균에 비해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고 고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비중이 낮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300만 원 미만 소득의 가구비중이 수원시 전체의 경우 51.4%인 반면 권선구는 56.3%에 달한다. 또한 200만 원 미만 소득의 가구비중이 수원시 전체의 경우 11.4%에 불과한 반면 권선구 34.8%에 이른다. 한편 500만 원 이상 소득가구의 비중이 수원시 전체는 18.2%인 반면, 권선구의 경우에는 12.9%에 불과했다.

(4) 팔달구

팔달구의 소득구간별 가구분포는 아래의 <표 4-7>, <그림 4-14>와 같다.

<표 4-7> 팔달구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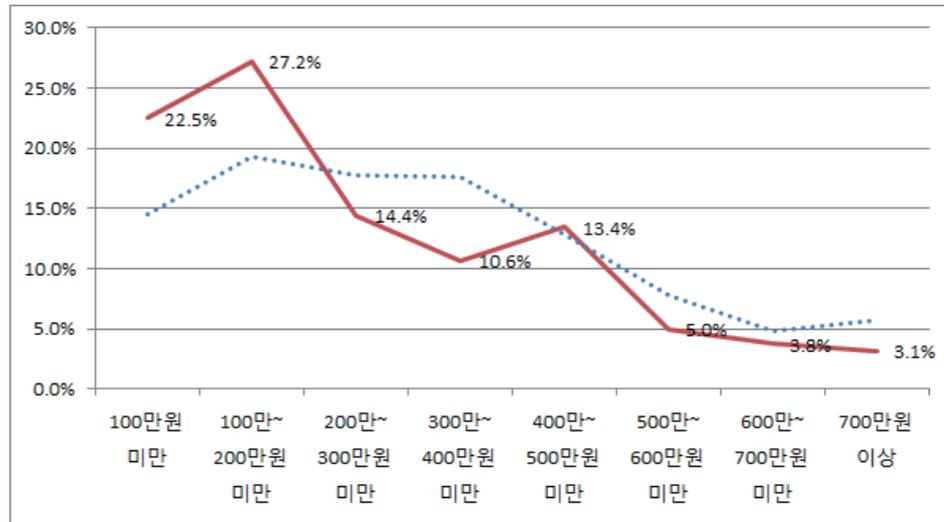
| | 인원 | 비율 | 누적비율 |
|-----------------|-----|-------|--------|
| 100만 원 미만 | 72 | 22.5% | 22.5% |
| 100만~ 200만 원 미만 | 87 | 27.2% | 49.7% |
| 200만~ 300만 원 미만 | 46 | 14.4% | 64.1% |
| 300만~ 400만 원 미만 | 34 | 10.6% | 74.7% |
| 400만~ 500만 원 미만 | 43 | 13.4% | 88.1% |
| 500만~ 600만 원 미만 | 16 | 5.0% | 93.1% |
| 600만~ 700만 원 미만 | 12 | 3.8% | 96.9% |
| 700만 원 이상 | 10 | 3.1% | 100.0% |
| 총합 | 320 | 1 | |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월 700만 원, 연 8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가구는 팔달구 가구의 3.1%를 차지한다. 이는 다시 말해 장안구 고소득 가구의 상위 3.1% 안에 들기 위해서 적어도 가구 전체가 84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월 700만 원, 연 8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가구가 수원시 가구의 5.7%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이를 통해 권선구가 수원시 평균보다 고소득 가구가 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팔달구의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하위소득 가구계층의 비율이 가장 두텁다는 것이다. 월 200만 원 미만을 버는 팔달구의 가구비율은 49.7%로서 과반에 육박하며 33.8%인 수원시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0만 원 이상의 소득계층 가구비율은 국지적인

구간을 제외하면 전부 다 수원시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팔달구 지역 일부가 수원의 낙후된 구도심을 형성하고 있고, 지동, 행궁동, 고등동 등의 개발이 여전히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그림 4-14> 수원시 팔달구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5) 영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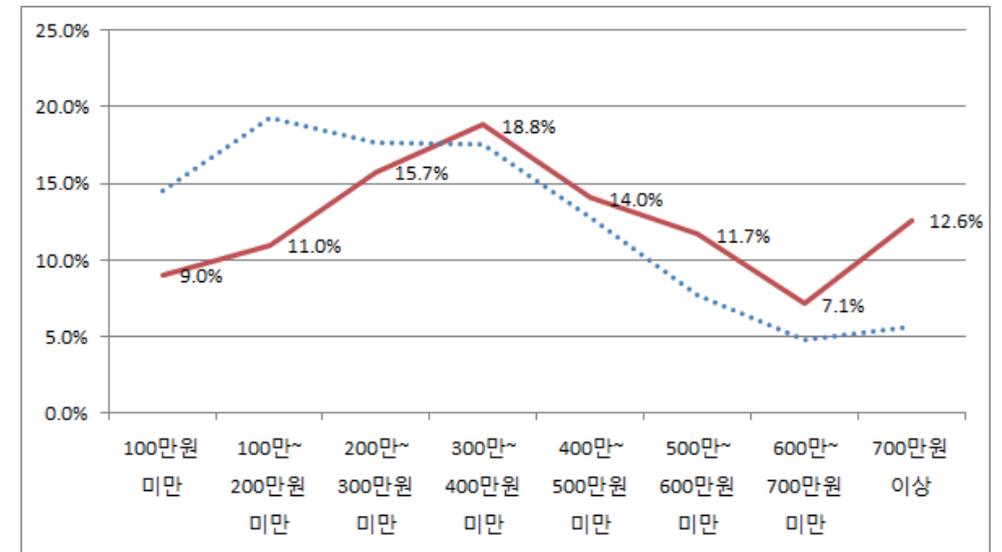
영통구의 소득구간별 가구분포는 아래의 <표 4-8>, <그림 4-15>와 같다.

<표 4-8> 영통구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 소득구간 | 인원 | 비율 | 누적비율 |
|----------------|-----|-------|--------|
| 100만 원 미만 | 38 | 9.0% | 9.0% |
| 100만~200만 원 미만 | 46 | 11.0% | 20.0% |
| 200만~300만 원 미만 | 66 | 15.7% | 35.7% |
| 300만~400만 원 미만 | 79 | 18.8% | 54.5% |
| 400만~500만 원 미만 | 59 | 14.0% | 68.6% |
| 500만~600만 원 미만 | 49 | 11.7% | 80.2% |
| 600만~700만 원 미만 | 30 | 7.1% | 87.4% |
| 700만 원 이상 | 53 | 12.6% | 100.0% |
| 총합 | 420 | 100% | |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한편, 영통구의 경우에는 월 700만 원, 연 8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가구가 영통구 전체 가구의 12.6%를 차지하며 이는 다시 말해 가구 구성원 전체가 84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버는 것으로 영통구 고소득 가구의 상위 12.6% 안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월 700만 원, 연 8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가구가 수원시 전체 가구의 5.7%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치이며 영통구에 고소득 가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그림 4-15> 수원시 영통구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또한, 영통구는 수원시 평균에 비해 저소득층의 비중이 낮고 고소득층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만 원 미만 소득의 가구비중이 수원시 전체의 경우 33.8%인 반면 영통구의 경우에는 20%에 불과했다. 한편 500만 원 이상 소득가구의 비중이 수원시의 경우 18.3%인 반면 영통구의 경우에는 31.5%나 되어 수원시에서 고소득층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영통구는 중간소득 계층도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소득계층 비율이 영통구의 경우 32.8%가 됨으로써 30.4%인 수원을 상회했다. 이러한 영통구의 전반적인 특성은 매탄동 등지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와 삼성 관련 계열사들이 입지해 있고 젊은 고소득 직장인과 전문직이 몰려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수원시 가구의 소득원

(1)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별 현황

수원시 사회조사에서는 가구주의 ‘주된’ 소득원에 대해 1. 근로(사업)소득 2.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3. 공적/사적연금 및 퇴직금, 4. 정부보조금, 5. 종교 또는 복지단체 보조금, 6. 친인척의 보조금, 7. 기타로 나누어 설문을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 가구의 주된 소득원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된 소득원이 근로(사업)소득이라고 답한 가구는 1,282 가구로서 전체 1,600 가구 중 80.1%를 차지함으로써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공적/사적연금 및 퇴직금(6.1%)과 재산소득(4.6%)이 수원시 가구의 주된 소득원의 다수를 차지한다. 근로사업소득, 연금 및 퇴직금, 재산소득이 주된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가구를 모두 합하면 수원시 가구 중 총 90.8%에 이른다.

<표 4-9>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별 현황: 가구수

| 단위: 가구수 | | | | | | | | | |
|--------------------|-------------------------|-------------------------------|----------|--------------------------|-----------|----------------------|-----------------|----|-------|
| | 가구주 근로 (사업) 소득 | 기타 가구원 근로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 정부 보조금 | 종교 또는 복지단체 보조금 | 친인척 의 보조금 | 기타 | 합계 |
| 100만 원 미만 | 52 | 9 | 18 | 35 | 48 | 1 | 69 | 0 | 232 |
| 100만~ 200만 원 미만 | 203 | 23 | 29 | 25 | 1 | 0 | 27 | 0 | 308 |
| 200만~ 300만 원 미만 | 232 | 16 | 14 | 21 | 0 | 0 | 0 | 0 | 283 |
| 300만~ 400만 원 미만 | 246 | 20 | 7 | 7 | 0 | 0 | 1 | 0 | 281 |
| 400만~ 500만 원 미만 | 183 | 16 | 1 | 5 | 0 | 0 | 0 | 0 | 205 |
| 500만~ 600만 원 미만 | 110 | 10 | 3 | 1 | 0 | 0 | 0 | 0 | 124 |
| 600만~ 700만 원 미만 | 69 | 6 | 0 | 1 | 0 | 0 | 0 | 0 | 76 |
| 700만 원 이상 | 85 | 2 | 1 | 3 | 0 | 0 | 0 | 0 | 91 |
| 합계 | 1,180 | 102 | 73 | 98 | 49 | 1 | 97 | 0 | 1,600 |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표 4-10>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별 현황: 가구비율

| 단위: % | | | | | | | | | |
|--------------------|-------------------------|-------------------------------|----------|--------------------------|-----------|----------------------|-----------------|------|--------|
| | 가구주 근로 (사업) 소득 | 기타 가구원 근로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 정부 보조금 | 종교 또는 복지단체 보조금 | 친인척 의 보조금 | 기타 | 합계 |
| 100만 원 미만 | 3.3% | 0.6% | 1.1% | 2.2% | 3.0% | 0.1% | 4.3% | 0.0% | 14.5% |
| 100만~ 200만 원 미만 | 12.7% | 1.4% | 1.8% | 1.6% | 0.1% | 0.0% | 1.7% | 0.0% | 19.3% |
| 200만~ 300만 원 미만 | 14.5% | 1.0% | 0.9% | 1.3% | 0.0% | 0.0% | 0.0% | 0.0% | 17.7% |
| 300만~ 400만 원 미만 | 15.4% | 1.3% | 0.4% | 0.4% | 0.0% | 0.0% | 0.1% | 0.0% | 17.6% |
| 400만~ 500만 원 미만 | 11.4% | 1.0% | 0.1% | 0.3% | 0.0% | 0.0% | 0.0% | 0.0% | 12.8% |
| 500만~ 600만 원 미만 | 6.9% | 0.6% | 0.2% | 0.1% | 0.0% | 0.0% | 0.0% | 0.0% | 7.8% |
| 600만~ 700만 원 미만 | 4.3% | 0.4% | 0.0% | 0.1% | 0.0% | 0.0% | 0.0% | 0.0% | 4.8% |
| 700만 원 이상 | 5.3% | 0.1% | 0.1% | 0.2% | 0.0% | 0.0% | 0.0% | 0.0% | 5.7% |
| 합계 | 73.8% | 6.4% | 4.6% | 6.1% | 3.1% | 0.1% | 6.1% | 0.0% | 100.0% |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한편 위와 같은 소득구간의 평균소득을 중간 값으로 정의하고(예를 들어 월 100만 원 미만 소득구간에 위치한 가구의 평균소득은 월 50만 원) 최고소득 구간의 평균소득을 750만 원으로 산정하면 소득구간별, 소득원별로 소득액의 분포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초고소득층의 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4-11>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별 현황: 총소득

단위: 백만 원

| | 가구주 근로 (사업) 소득 | 기타 가구원 근로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 정부 보조금 | 종교 또는 복지단 체 보조금 | 친인척 의 보조금 | 기타 | 합계 |
|-----------------|-------------------------|-------------------------------|----------|--------------------------|-----------|-----------------------------|-----------------|----|---------|
| 100만 원 미만 | 2,600 | 450 | 900 | 1,750 | 2,400 | 50 | 3,450 | 0 | 11,600 |
| 100만~ 200만 원 미만 | 30,450 | 3,450 | 4,350 | 3,750 | 150 | 0 | 4,050 | 0 | 46,200 |
| 200만~ 300만 원 미만 | 58,000 | 4,000 | 3,500 | 5,250 | 0 | 0 | 0 | 0 | 70,750 |
| 300만~ 400만 원 미만 | 86,100 | 7,000 | 2,450 | 2,450 | 0 | 0 | 350 | 0 | 98,350 |
| 400만~ 500만 원 미만 | 82,350 | 7,200 | 450 | 2,250 | 0 | 0 | 0 | 0 | 92,250 |
| 500만~ 600만 원 미만 | 60,500 | 5,500 | 1,650 | 550 | 0 | 0 | 0 | 0 | 68,200 |
| 600만~ 700만 원 미만 | 44,850 | 3,900 | 0 | 650 | 0 | 0 | 0 | 0 | 49,400 |
| 700만 원 이상 | 63,750 | 1,500 | 750 | 2,250 | 0 | 0 | 0 | 0 | 68,250 |
| 합계 | 428,600 | 33,000 | 14,050 | 18,900 | 2,550 | 50 | 7,850 | 0 | 505,000 |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표 4-12>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별 현황: 소득비율

단위: %

| | 가구 주 근로 (사업) 소득 | 기타 가구 원 근로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 금 | 정부 보조 금 | 종교 또는 복지 단체 보조 금 | 친인 척의 보조 금 | 기타 | 합계 |
|-----------------|-----------------------------|-----------------------------------|----------|------------------------------|---------------|---------------------------------|---------------------|------|--------|
| 100만 원 미만 | 0.5% | 0.1% | 0.2% | 0.3% | 0.5% | 0.0% | 0.7% | 0.0% | 2.3% |
| 100만~ 200만 원 미만 | 6.0% | 0.7% | 0.9% | 0.7% | 0.0% | 0.0% | 0.8% | 0.0% | 9.1% |
| 200만~ 300만 원 미만 | 11.5% | 0.8% | 0.7% | 1.0% | 0.0% | 0.0% | 0.0% | 0.0% | 14.0% |
| 300만~ 400만 원 미만 | 17.0% | 1.4% | 0.5% | 0.5% | 0.0% | 0.0% | 0.1% | 0.0% | 19.5% |
| 400만~ 500만 원 미만 | 16.3% | 1.4% | 0.1% | 0.4% | 0.0% | 0.0% | 0.0% | 0.0% | 18.3% |
| 500만~ 600만 원 미만 | 12.0% | 1.1% | 0.3% | 0.1% | 0.0% | 0.0% | 0.0% | 0.0% | 13.5% |
| 600만~ 700만 원 미만 | 8.9% | 0.8% | 0.0% | 0.1% | 0.0% | 0.0% | 0.0% | 0.0% | 9.8% |
| 700만 원 이상 | 12.6% | 0.3% | 0.1% | 0.4% | 0.0% | 0.0% | 0.0% | 0.0% | 13.5% |
| 합계 | 84.9% | 6.5% | 2.8% | 3.7% | 0.5% | 0.0% | 1.6% | 0.0% | 100.0% |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위와 같은 결과를 아래처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사적연금 및 퇴직금, 공적/사적 보조금이라는 보다 더 간단한 분류체계로 정리할 수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주된 소득원이 근로(사업)소득이라고 답한 가구는 1,282 가구이며, 전체 1,600 가구 중 80.1%를 차지함으로써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공적/사적연금 및 퇴직금(6.1%)과 재산소득(4.6%)이 수원시 가구들의 주요 소득원을 차지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4%로서 전체 소득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공적/사적연금 및 퇴직금(3.7%)과 재산소득(2.8%)이 수원시 전체 소득 중 주된 소득원의 다수를 차지한다.

한편 근로(사업)소득의 전체가구 비율(80.1%)보다 전체소득 비율(91.4%)이 더 크게 나타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수원시의 불평등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가장 유력한 소득범주는 근로(사업)소득임을 알 수 있다.

<표 4-13>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별 현황 요약: 가구수

단위: 명

|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 공적/사적 연금 및 퇴직금 | 공적/사적 보조금 | 총합 |
|-----------------|-------------|--------------------|----------------|-----------|------|
| 100만 원 미만 | 61 | 18 | 35 | 118 | 232 |
| 100만~ 200만 원 미만 | 226 | 29 | 25 | 28 | 308 |
| 200만~ 300만 원 미만 | 248 | 14 | 21 | 0 | 283 |
| 300만~ 400만 원 미만 | 266 | 7 | 7 | 1 | 281 |
| 400만~ 500만 원 미만 | 199 | 1 | 5 | 0 | 205 |
| 500만~ 600만 원 미만 | 120 | 3 | 1 | 0 | 124 |
| 600만~ 700만 원 미만 | 75 | 0 | 1 | 0 | 76 |
| 700만 원 이상 | 87 | 1 | 3 | 0 | 91 |
| 총합 | 1282 | 73 | 98 | 147 | 1600 |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표 4-14>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별 현황 요약: 가구비율

단위: %

|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 공적/사적 연금 및 퇴직금 | 공적/사적 보조금 | 총합 |
|-----------------|-------------|--------------------|----------------|-----------|--------|
| 100만 원 미만 | 3.8% | 1.1% | 2.2% | 7.4% | 14.5% |
| 100만~ 200만 원 미만 | 14.1% | 1.8% | 1.6% | 1.8% | 19.3% |
| 200만~ 300만 원 미만 | 15.5% | 0.9% | 1.3% | 0.0% | 17.7% |
| 300만~ 400만 원 미만 | 16.6% | 0.4% | 0.4% | 0.1% | 17.6% |
| 400만~ 500만 원 미만 | 12.4% | 0.1% | 0.3% | 0.0% | 12.8% |
| 500만~ 600만 원 미만 | 7.5% | 0.2% | 0.1% | 0.0% | 7.8% |
| 600만~ 700만 원 미만 | 4.7% | 0.0% | 0.1% | 0.0% | 4.8% |
| 700만 원 이상 | 5.4% | 0.1% | 0.2% | 0.0% | 5.7% |
| 총합 | 80.1% | 4.6% | 6.1% | 9.2% | 100.0% |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표 4-15>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별 현황 요약: 소득

단위: 백만 원

|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 공적/사적 연금 및 퇴직금 | 공적/사적 보조금 | 총합 |
|-----------------|-------------|--------------------|----------------|-----------|--------|
| 100만 원 미만 | 3050 | 900 | 1750 | 5900 | 11600 |
| 100만~ 200만 원 미만 | 33900 | 4350 | 3750 | 4200 | 46200 |
| 200만~ 300만 원 미만 | 62000 | 3500 | 5250 | 0 | 70750 |
| 300만~ 400만 원 미만 | 93100 | 2450 | 2450 | 350 | 98350 |
| 400만~ 500만 원 미만 | 89550 | 450 | 2250 | 0 | 92250 |
| 500만~ 600만 원 미만 | 66000 | 1650 | 550 | 0 | 68200 |
| 600만~ 700만 원 미만 | 48750 | 0 | 650 | 0 | 49400 |
| 700만 원 이상 | 65250 | 750 | 2250 | 0 | 68250 |
| 총합 | 461600 | 14050 | 18900 | 10450 | 505000 |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표 4-16>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별 현황 요약: 소득비율

단위: %

|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 공적/사적 연금 및 퇴직금 | 공적/사적 보조금 |
|-----------------|-------------|--------------------|----------------|-----------|
| 100만 원 미만 | 0.6% | 0.2% | 0.3% | 1.2% |
| 100만~ 200만 원 미만 | 6.7% | 0.9% | 0.7% | 0.8% |
| 200만~ 300만 원 미만 | 12.3% | 0.7% | 1.0% | 0.0% |
| 300만~ 400만 원 미만 | 18.4% | 0.5% | 0.5% | 0.1% |
| 400만~ 500만 원 미만 | 17.7% | 0.1% | 0.4% | 0.0% |
| 500만~ 600만 원 미만 | 13.1% | 0.3% | 0.1% | 0.0% |
| 600만~ 700만 원 미만 | 9.7% | 0.0% | 0.1% | 0.0% |
| 700만 원 이상 | 12.9% | 0.1% | 0.4% | 0.0% |
| 총합 | 91.4% | 2.8% | 3.7% | 2.1% |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2) 소득원별 가구수 및 소득분포

수원시 사회조사는 협의의 의미에서 재산소득을 측정하고 있다. 이 때, 재산소득이란 배당금, 이자, 임대료를 의미한다. 한편 재산소득과 공적/사적 연금 및 퇴직금을 합쳐 ‘자산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연금은 다수의 연구(전병유, 2015 등)에서 재산소득으로도 분류된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적/사적 연금 및 퇴직금도 넓은 의미에서의 자산소득으로 분류하였다. 지금까지는 소득구간별로 소득액과 분포를 살펴보았으나 이번에는 각각의 소득유형이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가구 기준과 금액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의 소득원별로 살펴본 소득구간별 가구수 및 비중과 소득액 및 소득비중이다. 먼저 재산소득이 각 소득구간별로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7> 재산소득의 소득구간별 가구수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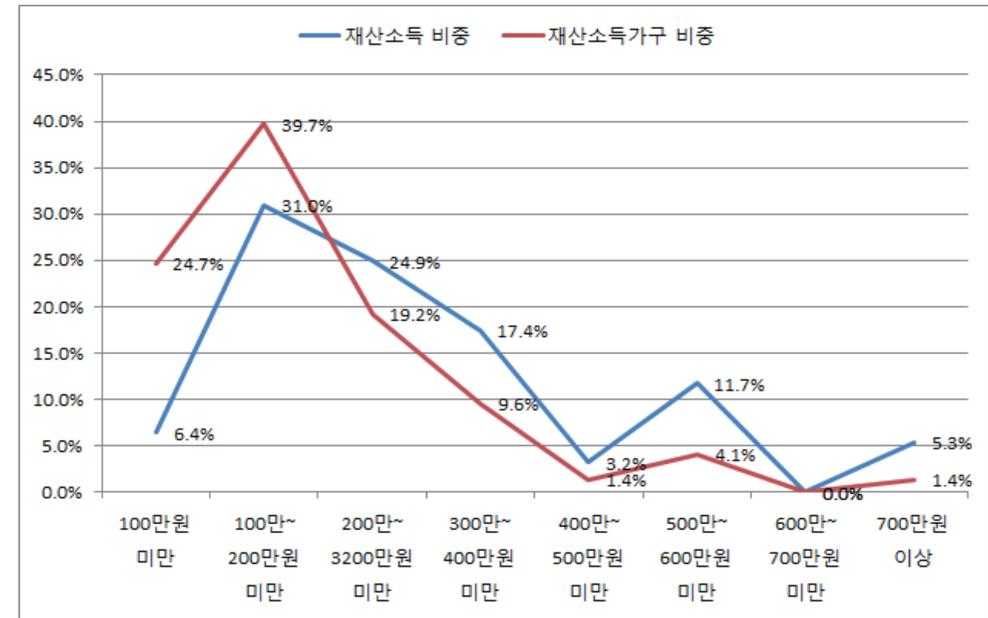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 소득구간별 재산소득 가구수 | 소득구간별 재산소득 가구비중 | 소득구간별 재산소득 총합 | 소득구간별 자산소득 소득비중 |
|-------------------|-----------------------|------------------|-----------------------|
| 100만 원 미만 | 18 | 900 | 6.4% |
| 100만~ 200만 원 미만 | 29 | 4350 | 31.0% |
| 200만~ 300만 원 미만 | 14 | 3500 | 24.9% |
| 300만~ 400만 원 미만 | 7 | 2450 | 17.4% |
| 400만~ 500만 원 미만 | 1 | 450 | 3.2% |
| 500만~ 600만 원 미만 | 3 | 1650 | 11.7% |
| 600만~ 700만 원 미만 | 0 | 0 | 0.0% |
| 700만 원 이상 | 1 | 750 | 5.3% |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주1) 자산소득: 재산소득 + 공적·사적연금 및 퇴직금

수원시민들의 재산소득은 소득구간별로 꽤 불규칙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보통 노동소득과 대립되는 의미에서의 재산소득은(연금 등의 소득으로 연명하는 인구가 많은) 저소득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중산층에서 그 비중이 떨어지고 고소득층으로 가면 다시 그 비중이 약간 올라가는 ‘약한 U자 모양’ (전병유, 2015)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된다.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그림 4-16>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재산소득 분포

그러나 수원시는 이러한 예측과 달리, 재산소득의 소득구간별 분포는 소득기준으로 보든 가구수 기준으로 보든 명확한 U자 형태를 나타내지 않는다. 여기에는 수원시 사회조사에서 고소득층의 자본소득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와 더불어 수원시 사회조사 상에서도 재산소득의 범위를 다소 협소하게 잡은 이유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원시 소득원 비중 중에서 2위를 차지하는 공적/사적 연금 및 퇴직금을 재산소득에 포함시켜 이를 광의의 ‘자산소득’으로 보도록 한다. 그리고 수원시 전체의 자산소득이 각 소득구간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예측대로 가구수 기준이든 소득액 기준이든 최고소득계층(월 700만 원 이상)에서 자산소득의 비중이 반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가구의 5.7%인 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수원시 전체 자산소득의 9.1%를 차지한다. 물론 수원시 사회조사 설문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정보가 많이 누락되어 있는 관계로 실제로 자산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클 것이다. 특히 소득액 기준으로 보면 반등의 정도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자산소득이 소수의 최고소득계층에 더 집중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일 소득구간의 범위를 더 늘려서 설문을 한다면 재산소득이 집중된 정도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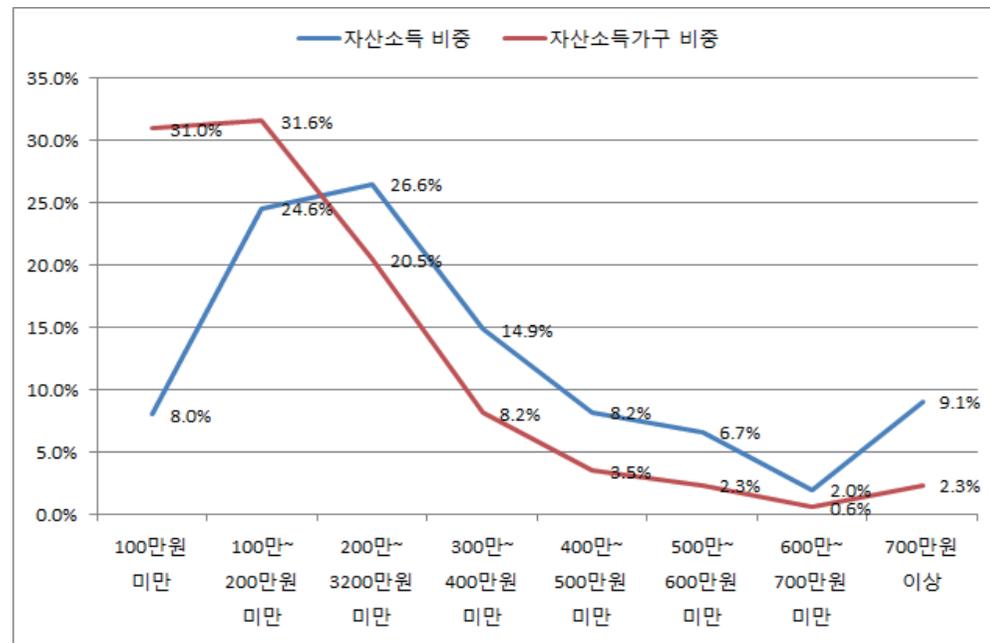
<표 4-18> 자산소득의 소득구간별 가구수 및 비중

단위: %, 백만 원

| | 소득구간별 자산소득 가구수 | 소득구간별 자산소득 가구비중 | 소득구간별 자산소득 총합 | 소득구간별 자산소득 소득비중 |
|-----------------|----------------------|-----------------------|---------------------|-----------------------|
| 100만 원 미만 | 53 | 31.0% | 2650 | 8.0% |
| 100만~ 200만 원 미만 | 54 | 31.6% | 8100 | 24.6% |
| 200만~ 300만 원 미만 | 35 | 20.5% | 8750 | 26.6% |
| 300만~ 400만 원 미만 | 14 | 8.2% | 4900 | 14.9% |
| 400만~ 500만 원 미만 | 6 | 3.5% | 2700 | 8.2% |
| 500만~ 600만 원 미만 | 4 | 2.3% | 2200 | 6.7% |
| 600만~ 700만 원 미만 | 1 | 0.6% | 650 | 2.0% |
| 700만 원 이상 | 4 | 2.3% | 3000 | 9.1% |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주1)자산소득: 재산소득 + 공적·사적연금 및 퇴직금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그림 4-17>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자산소득 분포

더 나아가 고소득층의 자산소득 집중은 그 배후에 자산 내지는 부의 집중이라는 현상이 내재되어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월 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수원시 5.7%의 가구가 수원시 전체 자산 내지는 부의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근로(사업)소득을 보면 근로(사업)소득은 가구비중 기준이든 소득비중 기준이든 소득중간 계층에 더 몰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월 300~400만 원의 소득을 버는 계층이 전체 근로(사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비중(20.8%)과 소득비중(20.7%)이 각각 모든 소득계층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중위소득(300만 원~500만 원) 이상의 소득계층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다가 월 700만 원 이상을 버는 최고소득계층에서부터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이 반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CEO의 경영소득이나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종의 근로(사업)소득이 최고소득 계층에 몰려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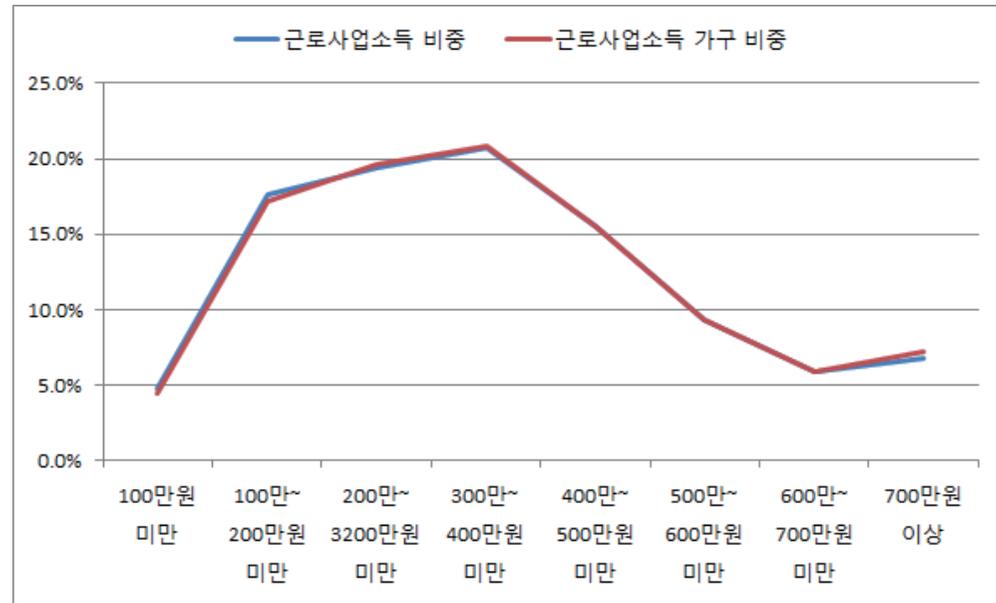
<표 4-19> 근로(사업)소득의 소득구간별 가구수 및 비중

단위: %, 백만 원

| | 소득구간별 근로(사업)소득 가구 수 | 소득구간별 근로(사업)소득 가구비중 | 소득구간별 근로(사업)소득 총합 | 소득구간별 근로(사업)소득 소득비중 |
|-----------------|---------------------------|---------------------------|-------------------------|---------------------------|
| 100만 원 미만 | 52 | 4.4% | 3050 | 4.8% |
| 100만~ 200만 원 미만 | 203 | 17.2% | 11300 | 17.6% |
| 200만~ 300만 원 미만 | 232 | 19.7% | 12400 | 19.3% |
| 300만~ 400만 원 미만 | 246 | 20.8% | 13300 | 20.7% |
| 400만~ 500만 원 미만 | 183 | 15.5% | 9950 | 15.5% |
| 500만~ 600만 원 미만 | 110 | 9.3% | 6000 | 9.4% |
| 600만~ 700만 원 미만 | 69 | 5.8% | 3750 | 5.9% |
| 700만 원 이상 | 85 | 7.2% | 4350 | 6.8% |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주1)자산소득: 재산소득 + 공적·사적연금 및 퇴직금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그림 4-18>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 분포

(3) 소득구간별 소득원의 분포

이번에는 각각의 소득구간별로 소득유형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개별 소득구간마다 어떤 소득원에 의존해서 생활을 영위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한 소득구간에서 중간소득을 중심으로 균등분포하고 있다는 가정을 채택했으므로 가구수 비중 기준으로만 살펴보았다.

먼저 최하위 소득계층인 월 100만 원 미만 소득가구에서는 국가나 비영리단체에서 지급하는 공적/사적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비율은 2015년에 50.9%로 나타났다. 그 이후의 계층에서는 근로(산업)소득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구간이 올라감에 따라 근로(사업)소득이 각 소득구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월 600~700만 원 소득계층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700만 원 이상 소득계층에서부터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최상위소득계층에 가까워질수록 근로(사업)소득이 아닌 자산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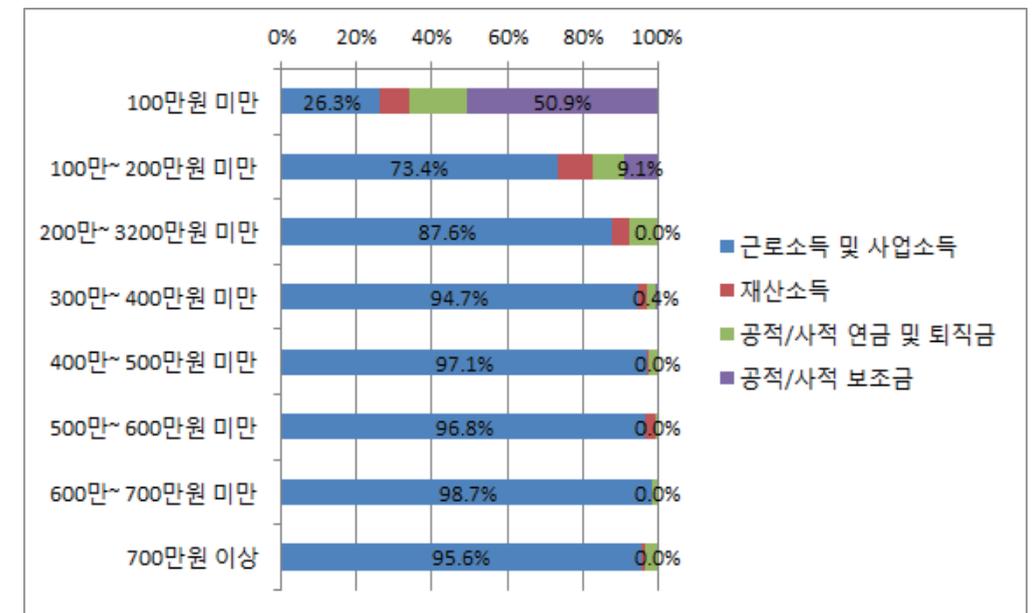
한편 최고소득계층에서도 근로(사업)소득은 여전히 큰 비중(전체 소득 중 95.6%)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는 CEO 등 전문경영인의 사업소득이나 고위임원 등의 연봉, 고소득 전문직종의 근로소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사항을 자세히 알아내기 위해서는 향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해서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4-20>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 분포

단위: 백만 원

| 소득구간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 공적/사적 연금 및 퇴직금 | 공적/사적 보조금 | 총합 |
|----------------|-------------|--------------------|----------------|-----------|--------|
| 100만 원 미만 | 26.3% | 7.8% | 15.1% | 50.9% | 100.0% |
| 100만~200만 원 미만 | 73.4% | 9.4% | 8.1% | 9.1% | 100.0% |
| 200만~320만 원 미만 | 87.6% | 4.9% | 7.4% | 0.0% | 100.0% |
| 300만~400만 원 미만 | 94.7% | 2.5% | 2.5% | 0.4% | 100.0% |
| 400만~500만 원 미만 | 97.1% | 0.5% | 2.4% | 0.0% | 100.0% |
| 500만~600만 원 미만 | 96.8% | 2.4% | 0.8% | 0.0% | 100.0% |
| 600만~700만 원 미만 | 98.7% | 0.0% | 1.3% | 0.0% | 100.0% |
| 700만 원 이상 | 95.6% | 1.1% | 3.3% | 0.0% | 100.0% |
| 총합 | 80.1% | 4.6% | 6.1% | 9.2% | 100.0% |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그림 4-19> 수원시 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원 분포

3. 수원시의 행정구별 지니계수와 지역격차

1) 수원시 지니계수 측정방법

한 집단 내에서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개인별 소득자료에 기초하여 측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확하다. 그러나 현재 수원시 사회조사나 다른 지자체의 사회조사에서는 대개 구간별 소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런 분석이 쉽지 않다. 물론 구간별 소득 자료라 하더라도 각 소득구간마다의 총소득액이 주어진다면 나름의 방법대로 소득 불평등을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소득구간별 가구의 분포 자료에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수원시의 지니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앞서 이미 언급한 가정 중에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각 소득구간에 속한 가구소득은 각 구간의 중간값으로 균등분포를 따른다.

둘째, 수원시 사회조사에 응한 가구의 최소소득 구간 상한액은 월 800만 원이다.

위 가정을 따를 때, 다음과 같이 수원시의 지니 계수를 구할 수 있다.

$$G = \frac{1}{2n^2\mu} \times \sum_{i=1}^n \sum_{j=1}^n |Y_i - Y_j|$$

n=수원시 가구 수, Yi=수원시 가구의 월평균 소득, μ=평균 소득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최상위소득계층을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운 설문조사라는 한계 외에도 최고 소득계층의 정확한 소득액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 소득액을 보수적(월 750만 원)으로 잡았다는 점 그리고 각 소득구간별로 각각의 가구소득이 균등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가정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불평등의 정도를 상당히 과소 추정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소득구간별로 가구소득이 균등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은 각 소득구간 내의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와 추정방법의 차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 측정한 지니계수, OECD에서 측정한 지니계수, 대한민국에서 측정한 지니계수, 경기도에서 측정한 지니계수 등의 대등한 비교는 쉽지 않다. 본 연구의 지니계수 추정방법을 통해 적어도 수원시 행정구 간 지니계수의 비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수원시 각 행정구 간의 불평등도 비교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2) 수원시의 지니계수

2015년에 측정된 수원시와 대한민국의 지니계수 지표들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21> 2015년 수원시와 대한민국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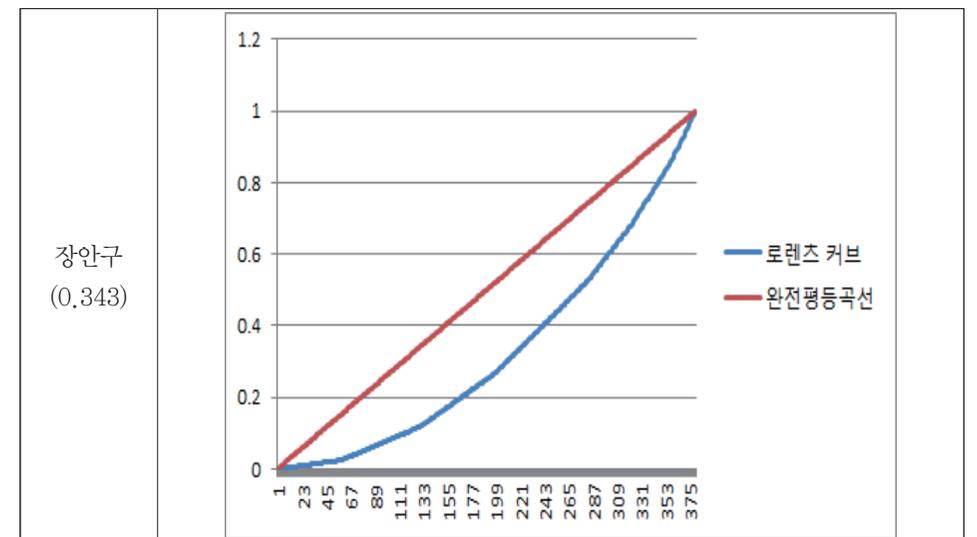
| | 수원시 | 대한민국 | | |
|------|------|-------|-----------|----------|
| | | 전체가구 | 2인 이상 비농가 | 도시 2인 이상 |
| 지니계수 | 0.35 | 0.341 | 0.307 | 0.3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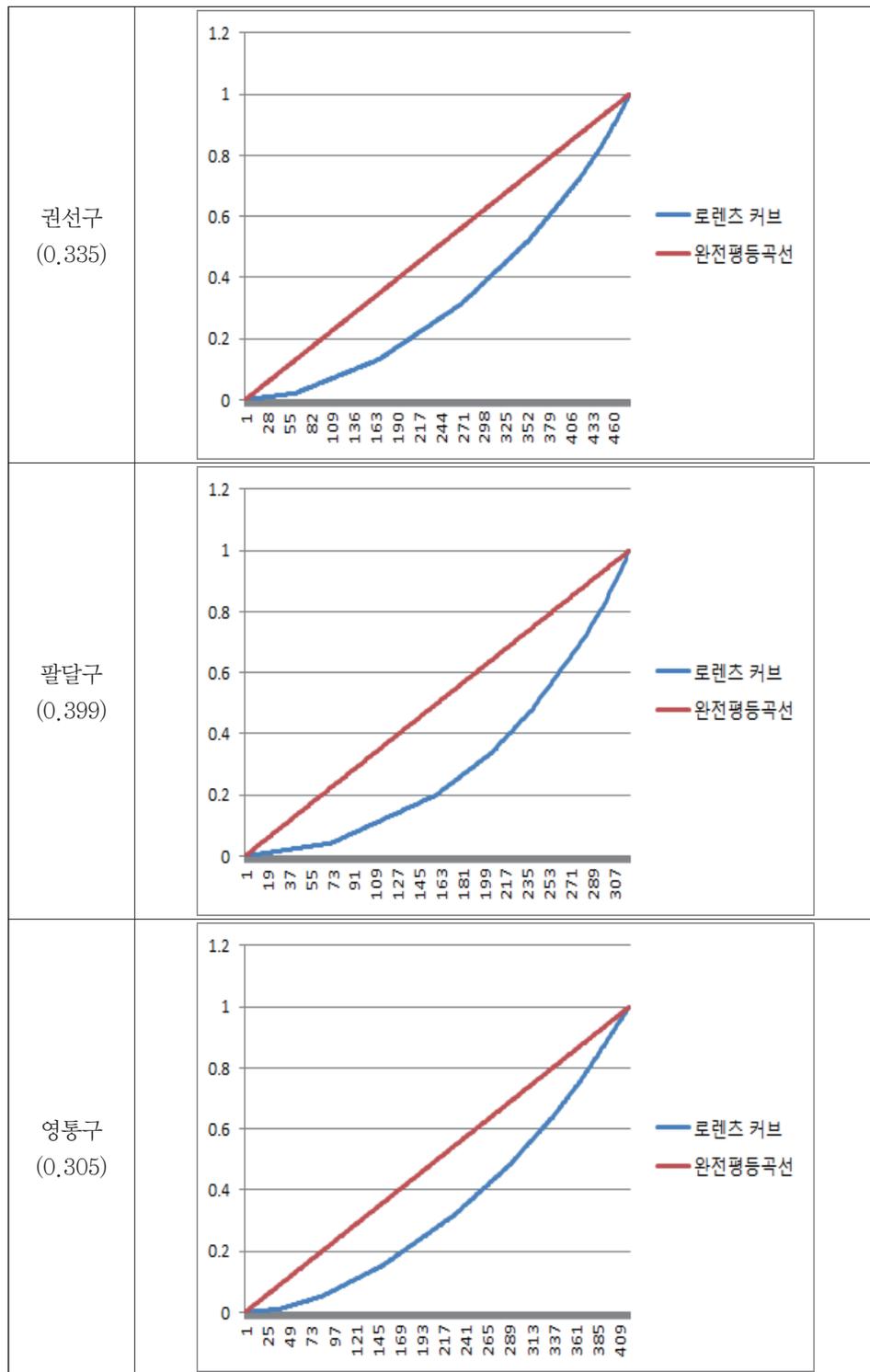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가계동향조사

수원시 가구의 전체 지니계수는 0.35로 계산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측정된 전국단위 전체가구, 2인 이상 비농가, 도시 2이상 가구로 측정된 지니계수보다 모두 더 높다. 앞서 언급했듯이 7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평균소득을 낮게 추정(750만 원)했고 특히 최상위계층 내에서의 소득격차를 크게 과소평가했음에도 전국단위 지니계수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수원시가 전국적으로 불평등도가 비교적 심한 도시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3) 수원시 각행정구별 지니계수

한편 이하에서는 각 행정구별로 지니계수를 추정하였고, 그 결과는 이하와 같다.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그림 4-20> 수원시 행정구별 지니계수

수원시 각 행정구별 지니계수를 추정해보면 장안구는 0.343, 권선구는 0.335, 팔달구는 0.399, 영통구는 0.305로 측정되었다.

<표 4-22> 2015년 수원시 및 수원시 각 구의 지니계수

| | 수원시 전체 | 수원시 | | | |
|------|--------|-------|-------|-------|-------|
| | | 장안구 | 권선구 | 팔달구 | 영통구 |
| 지니계수 | 0.35 | 0.343 | 0.335 | 0.399 | 0.305 |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가계동향조사

4) 수원시 각 구별 지니계수의 함의

두 사람만 존재하는 어떤 사회에서 두 사람의 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하면(두 사람 모두 동일한 소득을 올린다면) 이 사회의 지니계수는 0이 된다. 반면, 두 사람 중 한사람만 소득을 올리고 다른 한 사람은 소득이 없다면 이 사회의 지니계수는 1이 된다. 즉 소득 불평등이 이루어질수록 지니계수는 1에 가깝게 높은 수로 나타난다.

지니계수가 크다는 것은 비교대상인 동일한 지역의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로렌즈 곡선은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할 때 기울기가 1인 대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분석 결과, 수원시에서는 팔달구의 지니계수가 0.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계수의 크기가 나타내는 의미는 수원시에서 팔달구의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팔달구가 수원시에서 낙후된 구도심의 특성을 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팔달구는 행궁동,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동, 화서2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등 10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행궁동은 화성행궁으로 인하여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지동, 고등동 등은 여전히 수원시에서 개발이 더딘 지역이다. 반면, 인계동 등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속한다. 이런 지역 간의 격차가 높은 지니계수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대부분이 아파트 밀집 지역인 영통구는 소득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원시 4개구 중에서 가장 낮은 지니계수(0.305)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지니계수의 대소가 집단의 부유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부의 분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상대적인 부의 분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 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지니계수는 단순히 소득분배 상황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지니계수를 통하여 비교대상인 동일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암시하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지니계수는 최고의 재능을 가진 자들만이 생존하는 프로스포츠 시장, 연예인 시장 등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보통의 사람들과는 달리 기본적인 특정 분야에 기본적인 재능을 지니고 많은 관문을 통과하여 해당 분야에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시장지배력을 점유하는 슈퍼스타 시장에서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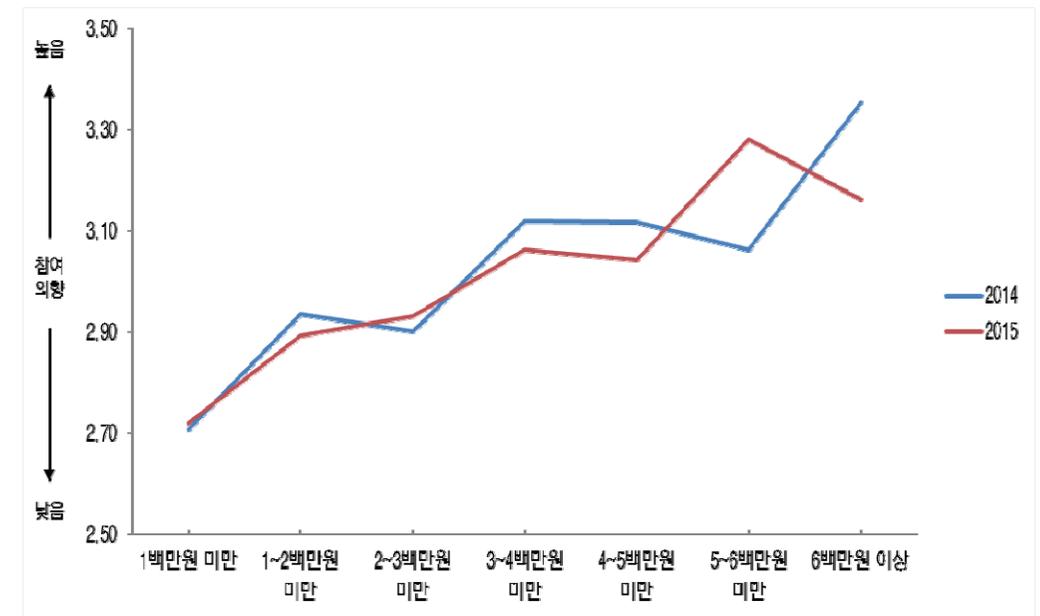
제5장 수원시의 소득격차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제1절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소득과 환경의 관계

Scruggs(1998)는 부유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고, 환경보호에 대해 더 큰 지불의사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수원시민들의 ‘환경수도11)’ 조성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 참여의사와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관계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래 <그림 5-1>과 같이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환경수도실천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증가하고 있어, Scruggs(1998)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구별 지니계수만을 가지고 해당구의 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구별 절대소득을 도출하여 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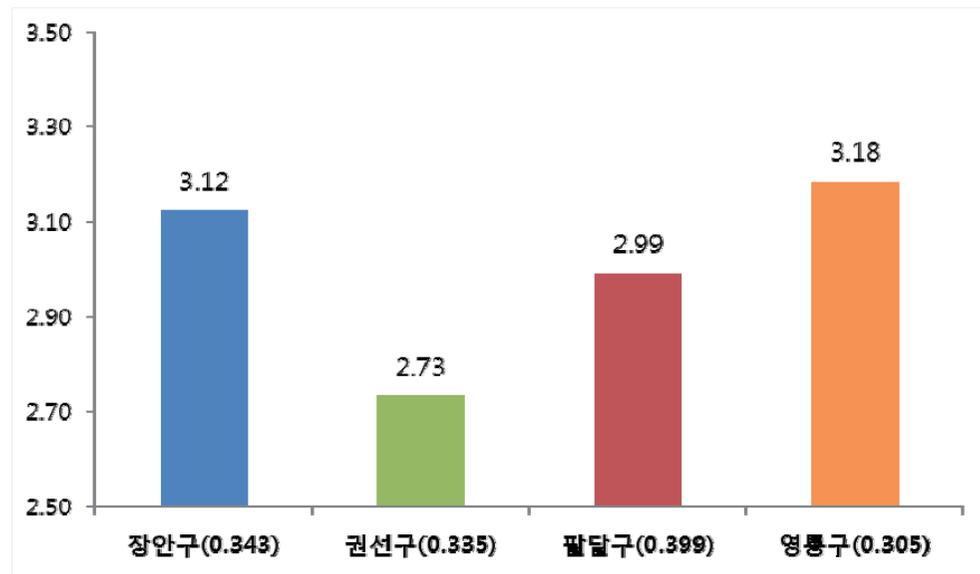


<그림 5-1> 소득수준별 환경수도실천운동 참여의향

11) 수원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등을 목표로 2011년 9월, ‘환경수도 수원’ 을 선언하고, 수원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환경도시를 만들고자 중점추진과제와 시민실천과제 등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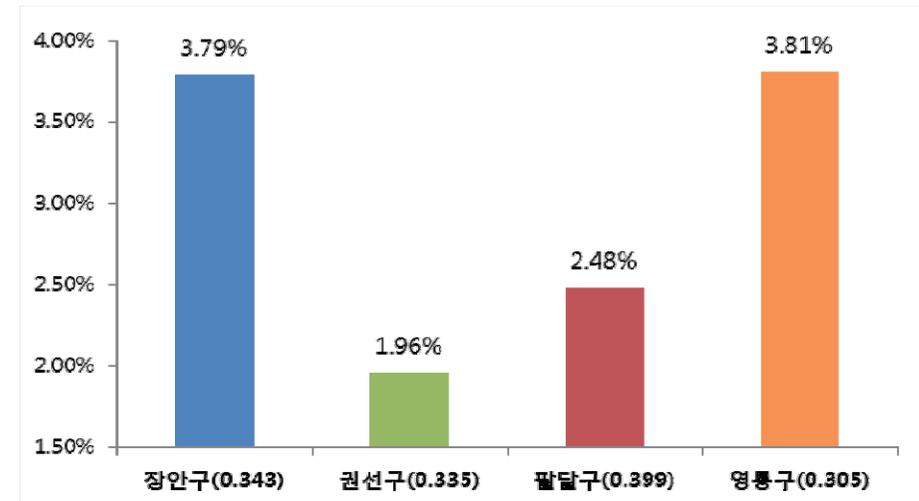
2. 소득격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앞서 도출한 지니계수 결과 값에 따르면 수원시의 4개 행정구(區) 중에서 가장 큰 소득 격차를 보이는 곳은 팔달구였으며,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 순으로 소득격차가 감소했다. 이를 토대로 행정구(區) 수준에서의 소득격차와 환경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환경수도실천 운동에 대한 참여의향¹²⁾이 소득격차가 가장 낮은 영통구에서 가장 높고,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5-2>에도 나타나듯 소득불평등과 환경운동 참여 의향 간에 관계성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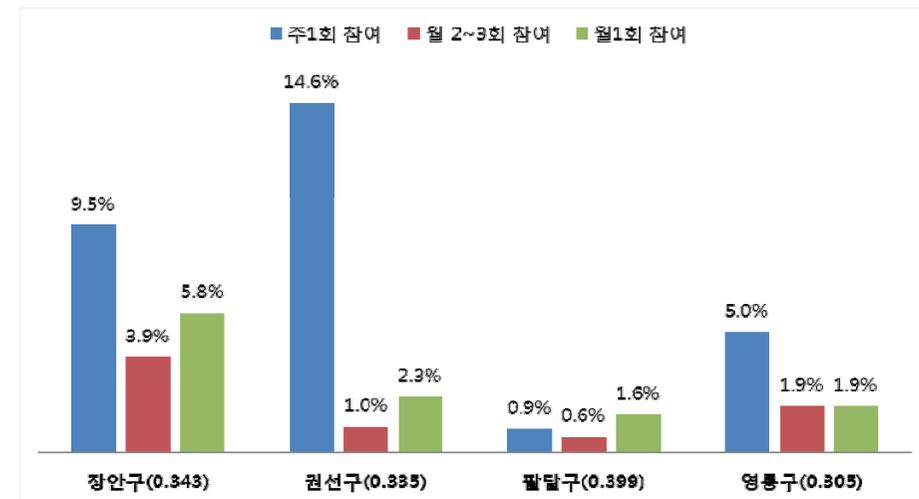
<그림 5-2> 환경수도실천운동 참여 의향(2015)

또한 <그림 5-3>에서도 각 구(區)별 조사응답자 중 환경운동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¹³⁾ 역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3> 환경보전(마을청소) 등 관련 봉사활동 참여 비율(2015)

2014년 조사 결과(<그림 5-4>¹⁴⁾는 권선구, 장안구, 영통구, 팔달구 순으로 환경보호활동 참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과 환경운동 간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5-4> 환경보호활동 참여 비율(2014)

12) 환경수도실천운동 참여의향은 2015년도 수원시 사회조사의 46-1번 문항(귀하는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에 참여하고 싶습니까?)의 선택지인 ‘①적극참여한다, ②약간 참여한다, ③보통, ④조금 참여하지 않는다, ⑤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에 각각 5, 4, 3, 2, 1점을 부여하고 이를 각 행정구(區)별 응답 결과의 평균값으로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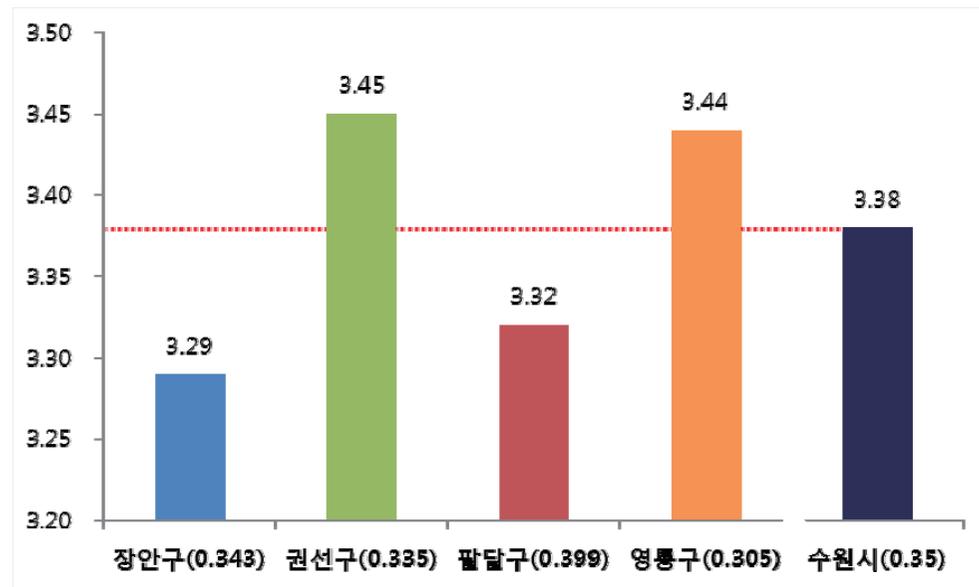
13) 환경보전 관련 봉사활동 참여 비율은 2015년 수원시 사회조사 27-2번 문항(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마을청소, 방범 활동 등))의 연간 참여횟수에 대해 1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수를 구(區)별 총 응답자 수로 나뉘어 그 비율(%)을 도출하였다.

| | 장안구 | 권선구 | 팔달구 | 영통구 |
|---------------------|------------|------------|------------|------------|
| 환경보전 봉사활동 참여자 (명/%) | 32 (3.79%) | 21 (1.96%) | 16 (2.48%) | 35 (3.81%) |
| 전체 응답자 수 (명) | 844 | 1,074 | 644 | 919 |

14) 환경보호활동의 참여비율(2014)은 2014년 수원시 사회조사 전체 응답자 수에서 13번 문항(귀 닥은 수원시의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의 ‘①주1회 참여, ②월1회 참여, ③월2~3회 참여’ 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로 구하였다.

제2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

소득불평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록 건강이 악화된다는 견해와 소득불평등과 건강 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수원시 소득불평등과 건강 간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우선적으로 2014년도 수원시 사회조사¹⁵⁾를 이용해 행정구(區)별로 주민들의 주관적 건강상태¹⁶⁾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불평등도가 낮은 영통구와 권선구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장안구와 팔달구에 비해 더 좋은 것으로 조사¹⁷⁾되었다.



<그림 5-5> 각 행정구(區)별 주관적 건강상태(2014)

그러나 소득격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강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15) 2015년도 수원시 사회조사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를 묻는 문항이 없어, 2014년 사회조사의 9번 문항(귀하는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의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16)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는 건강지표의 하나로 미래 사망률 예측에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조사 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병원 임상기록과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혜련 외, 2004; 강영주·정광호, 2012)

17) 각 행정구별 주관적 건강상태는 2014년 수원시 사회조사의 9번 문항의 선택지인 ‘①매우 좋다, ②좋은 편이다, ③보통, ④나쁜 편이다, ⑤매우 나쁘다’에 각각 5, 4, 3, 2, 1점씩 부여한 후, 이를 각 행정구(區)별로 평균값으로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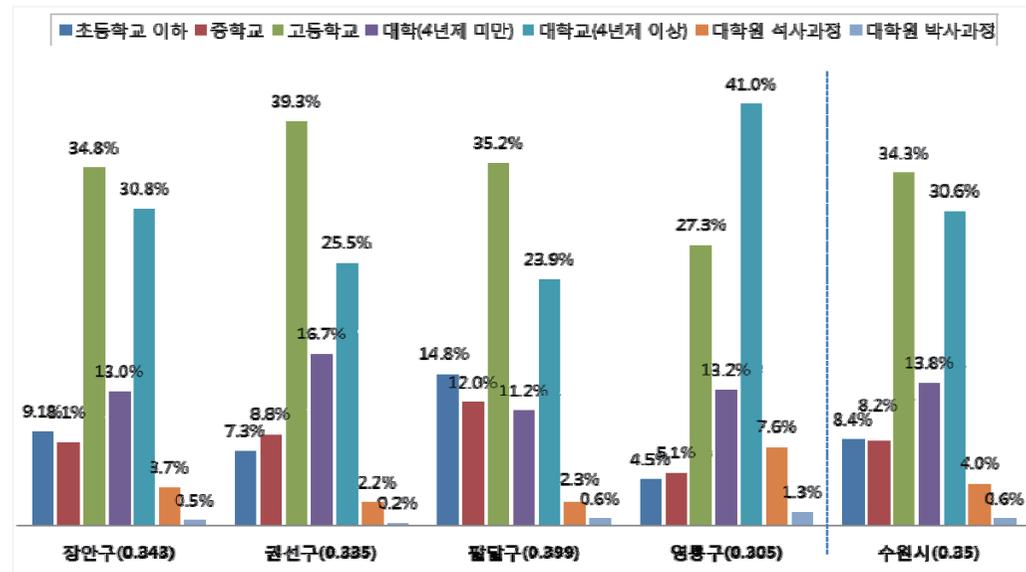
제3절 교육에 미치는 영향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소득불평등과 교육격차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는 종속변수로 학업성취능력이나 사교육비, 공교육비 등을 설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2014년, 2015년 수원시 사회조사 응답자의 교육정도를 토대로 수원시의 소득격차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5-1> 2015년 수원시 사회조사(가구원) - 교육정도

| | | 장안구 | 권선구 | 팔달구 | 영통구 | 총합계 |
|-------------|----|-----|-----|-----|-------|-------|
| 안 받았음 | | 20 | 18 | 14 | 11 | 63 |
| 초등학교 | 중퇴 | 8 | 3 | 26 | 5 | 42 |
| | 졸업 | 49 | 57 | 55 | 25 | 186 |
| 중학교 | 중퇴 | 8 | 9 | 2 | 4 | 23 |
| | 재학 | 7 | 11 | 13 | 8 | 39 |
| | 졸업 | 53 | 75 | 62 | 35 | 225 |
| 고등학교 | 중퇴 | 10 | 15 | 9 | 12 | 46 |
| | 재학 | 36 | 54 | 19 | 44 | 153 |
| | 휴학 | 1 | - | - | - | 1 |
| | 졸업 | 247 | 353 | 199 | 195 | 994 |
| 대학(4년제 미만) | 재학 | 13 | 15 | 2 | 10 | 40 |
| | 휴학 | 2 | - | 1 | 2 | 5 |
| | 수료 | 1 | 4 | - | 2 | 7 |
| | 졸업 | 94 | 160 | 69 | 107 | 430 |
| 대학교(4년제 이상) | 중퇴 | 2 | - | - | - | 2 |
| | 재학 | 43 | 38 | 35 | 53 | 169 |
| | 휴학 | 3 | 4 | 5 | 3 | 15 |
| | 수료 | 2 | 1 | 1 | 3 | 7 |
| | 졸업 | 210 | 231 | 113 | 318 | 872 |
| 대학원 석사과정 | 재학 | 2 | 2 | - | 6 | 10 |
| | 휴학 | - | - | - | 3 | 3 |
| | 수료 | 1 | 1 | - | 7 | 9 |
| | 졸업 | 28 | 21 | 15 | 54 | 118 |
| 대학원 박사과정 | 휴학 | - | - | 1 | - | 1 |
| | 수료 | - | - | - | 1 | 1 |
| | 졸업 | 4 | 2 | 3 | 11 | 20 |
| 총합계 | | 844 | 919 | 644 | 1,074 | 3,481 |

2015년 수원시 사회조사 결과(<표 5-1>)를 토대로 수원시의 학력수준별¹⁸⁾ 분포를 그리면 아래 <그림 5-7>과 같이 도출된다. 수원시 전체적으로는 고등학교 재학·졸업자의 비중이 가장 크고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4년제 미만),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구(區) 중에서는 장안구가 수원시 전체와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나머지 구(區) 역시 고등학교 재학·졸업자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통구만 유일하게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졸업자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6> 수원시 및 행정구(區)의 학력수준별 분포(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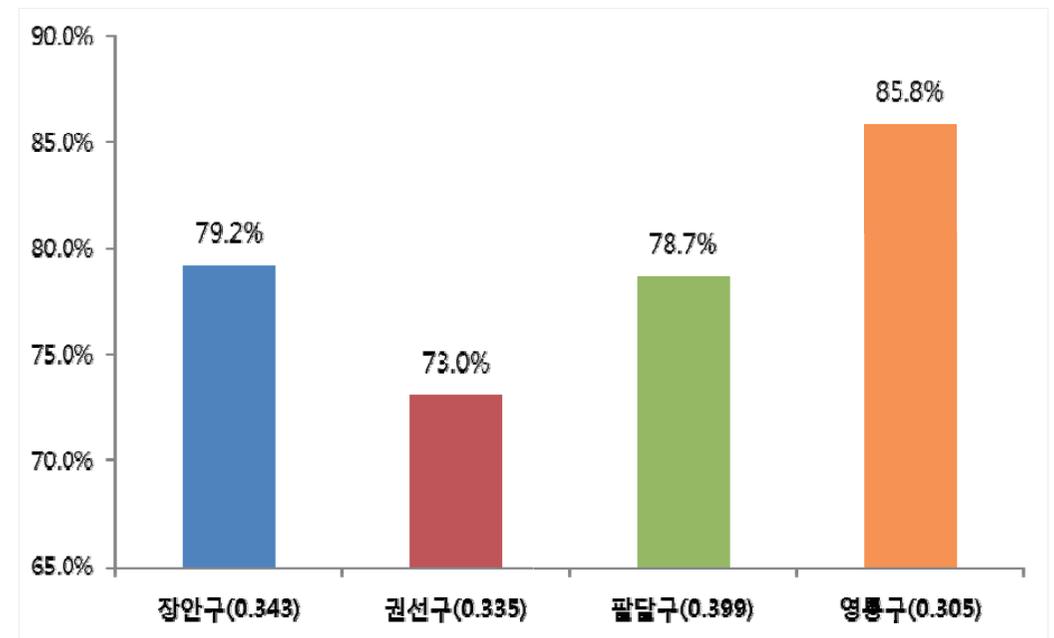
수원시 행정구(區)별 학력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표 5-2>)를 살펴보면 학력수준은 영통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의 크기를 통해 각 구(區)의 교육격차를 가늠해볼 수 있는데, 표준편차가 가장 작은 곳은 권선구였으며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순이었다. 2015년 결과에서는 소득불평등과 교육격차 간의 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장안구와 팔달구의 학력수준에 대한 표준편차가 큰 것으로 보아 일정부분 관계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18) 학력수준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으로 <표 5-1>에 ‘안 받았음’ 과 ‘초등학교 중퇴·졸업’, ‘중학교 중퇴’ 는 초등학교 이하로 구분하고, ‘중학교 재학·졸업’ 과 ‘고등학교 중퇴’ 는 중학교로, ‘고등학교 재학·휴학·졸업’, ‘대학교(4년제 이상) 중퇴’ 는 고등학교로 구분하고, 그 외 대학(4년제 미만)과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은 기존대로 분류하였다.

<표 5-2> 행정구(區)별 학력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2015)

| | N | 평균 ¹⁹⁾ | 표준편차 |
|-----|-------|-------------------|-------|
| 장안구 | 844 | 3.59 | 1.380 |
| 권선구 | 1,074 | 3.50 | 1.262 |
| 팔달구 | 644 | 3.25 | 1.432 |
| 영통구 | 919 | 4.08 | 1.330 |

소득격차와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사교육비 지출격차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는 사교육비 지출비용 대신 사교육 참여율을 통해 양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2014년 수원시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행정구(區)별 사교육 참여율²⁰⁾을 살펴본 결과, 영통구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평등과 사교육 참여율 간에는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교육비 지출격차가 아닌 사교육 참여율을 본 것이므로 소득격차와 교육격차 간의 관계를 쉽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림 5-7> 행정구(區)별 사교육 참여율(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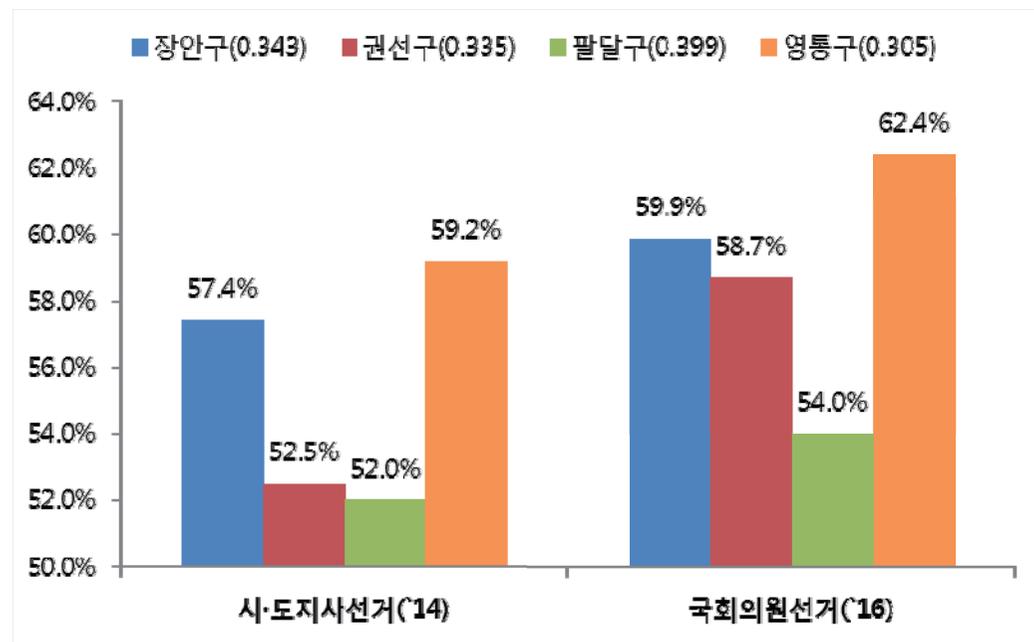
19) 학력수준에 대한 평균은 초등학교 이하(1), 중학교(2), 고등학교(3), 대학(4), 대학교(5), 석사과정(6), 박사과정(7)로 계산한 결과이며, 평균값이 클수록 학력수준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0) 2014년 수원시 사회조사에서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총 451개 가구 중에서 자녀들 중 한 명이라도 학업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사교육 참여율을 도출하였다.

제4절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소득불평등과 주민참여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합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도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주민의 정치참여를 감소시킨다는 상대권력이론과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참여를 증가시킨다는 갈등이론이 대립하고 있으나, 실증적으로 양자 간에 아무런 관계성이 없음을 증명한 연구도 있었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의 정도를 보기 위해 제6회 시·도지사선거(2014년 6월)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4월)의 투표율²¹⁾과 수원시 사회조사 결과(2014년 정당 활동 참여도, 2015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²²⁾)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 5-8> 행정구(區)별 선거투표율

2014년과 2016년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영통구,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의 순으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영통구(0.305)의 투표율이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불평등이 가장 큰 팔달구(0.399)의 투표율이 가장 낮게

21) 본 연구에서의 지니계수 측정 시점은 2015년이지만 당해연도에 투표율을 활용할만한 선거가 없어 2015년의 바로 직전·후인 2014년 제6회 시·도지사선거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을 활용하였다.
 22) 봉사활동은 유재원(2000), Costa&Kahn(2003), 현승숙·금현섭(2011) 등의 선행연구에서 주민의 사회참여 유형 중 하나로서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Costa&Kahn(2003)은 봉사단체가 지역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행동으로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나타났으나, 권선구(0.335)와 장안구(0.343)를 볼 때 불평등과 투표율 간에는 별다른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역 주민의 연령 및 신·구도심 등의 지역적인 특징이 투표율을 좌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3> 행정구(區)별 제6회 시·도지사선거 투표율(2014.6.)

| | 선거인수 | 투표수 | 투표율 |
|-----|---------|---------|-------|
| 장안구 | 236,664 | 135,841 | 57.4% |
| 권선구 | 230,904 | 121,183 | 52.5% |
| 팔달구 | 203,541 | 105,744 | 52.0% |
| 영통구 | 240,776 | 142,435 | 59.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info.nec.go.kr>)

2014년 6월 실시된 전국 시·도지사 선거에서 경기도 전체의 투표율은 53.3%를 기록했다. 영통구(59.2%)와 장안구(57.4%)에서는 경기도 평균보다 각각 5.9%p, 4.1%p 높게 나타났으나, 권선구(52.5%)와 팔달구(52.0%)에서는 경기도 평균보다 각각 0.8%p, 1.3%p 낮게 나타났다.

<표 5-4> 행정구(區)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2016.4.)

| | 선거인수 | 투표수 | 투표율 |
|-----|---------|---------|-------|
| 장안구 | 202,592 | 121,454 | 59.9% |
| 권선구 | 186,350 | 109,288 | 58.7% |
| 팔달구 | 166,543 | 89,967 | 54.0% |
| 영통구 | 181,891 | 113,590 | 62.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info.nec.go.kr>)

2016년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를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의 투표율은 57.5%를 기록했다. 영통구(62.4%), 장안구(59.9%), 권선구(58.7%)에서는 경기도 평균보다 각각 4.9%p, 2.4%p, 1.2%p 높게 나타났으나, 팔달구(54.0%)에서는 경기도 평균보다 3.5%p 낮게 나타났다.

제6회 시·도지사 선거(2014.06) 투표율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04) 투표율을 단순비교해보면 수원시의 4개 행정구에서 모두 국회의원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선거 종류별 역대 투표율 및 연대별 이슈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해야 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 분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수원시민들의 정치(선거 참여)활동은 수원시 전체의 시장을 선출하는 것보다 각 지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인 것만큼은 확실하다. 이는 지역 현안 및 이익에 대한 기대감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5-5> 제6회 시·도지사 선거 투표율 VS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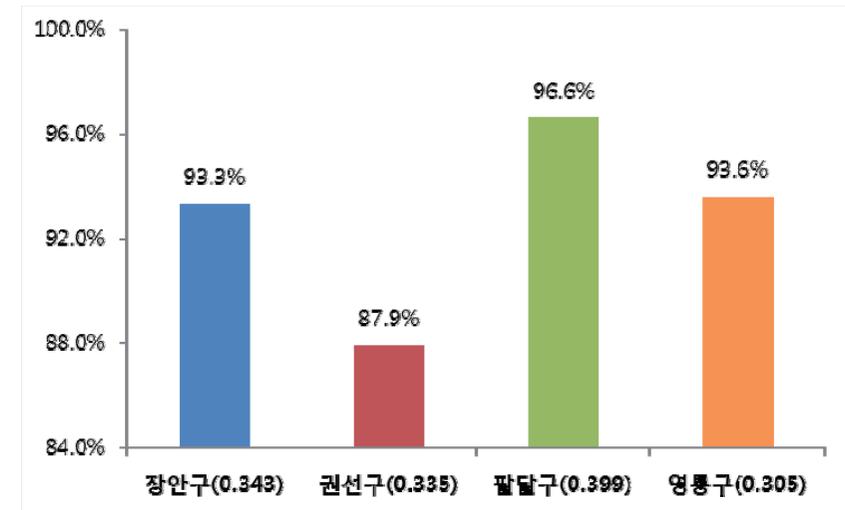
| | 제6회 시·도지사 투표율 | 제20대 국회의원 투표율 | 차이(%p) |
|-----|---------------|---------------|--------|
| 장안구 | 57.4% | 59.9% | 2.5 |
| 권선구 | 52.5% | 58.7% | 6.2 |
| 팔달구 | 52.0% | 54.0% | 2.0 |
| 영통구 | 59.2% | 62.4% | 3.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info.nec.go.kr>)

정당(정치단체)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조사 결과(<표 5-6>)를 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적극 참여함’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을 각 행정구(區)별로 살펴보면, ‘적극 참여함’의 응답자 비율이 팔달구, 영통구, 장안구, 권선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팔달구의 경우 앞선 선거의 투표율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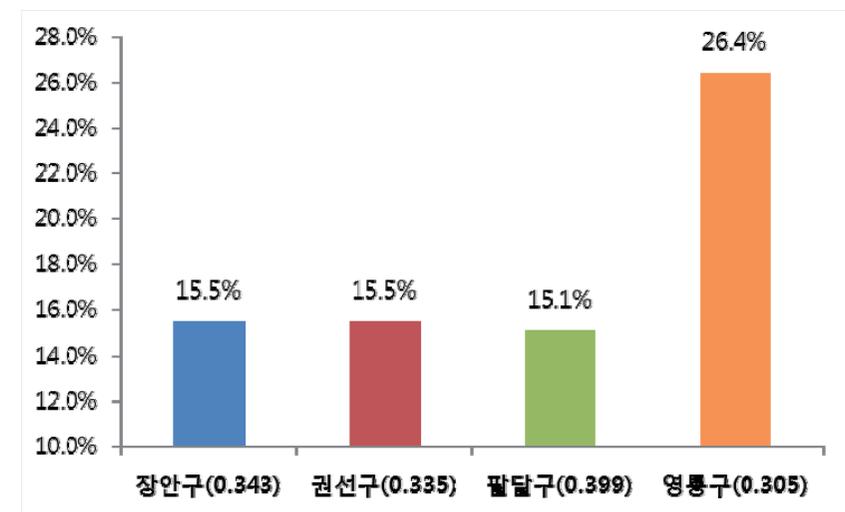
<표 5-6> 정당(정치단체)활동 참여 정도(2014)

| | 장안구 | 권선구 | 팔달구 | 영통구 |
|------------|-----|-------|-----|-----|
| 적극 참여함 | 824 | 960 | 633 | 888 |
| 조금 참여함 | 23 | 59 | 9 | 29 |
| 보통 | 31 | 65 | 10 | 20 |
| 약간 참여함 | 3 | 3 | 3 | 8 |
| 전혀 참여하지 않음 | 2 | 5 | - | 4 |
| 총 합 계 | 883 | 1,092 | 655 | 949 |



<그림 5-9> 행정구(區)별 정당(정치단체)활동 참여율(적극참여)(2014)

봉사활동 참여율의 경우에는 소득불평등이 낮은 영통구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고, 권선구와 장안구의 참여율이 15.5%로 동일했으며, 팔달구가 15.1%로 낮게 나타났다.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영통구의 참여율이 11%p 이상 높게 나타나 소득불평등과 주민의 사회참여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투표율과 정치단체 참여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불평등과 주민참여 간에 뚜렷한 관계성은 발견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0> 행정구(區)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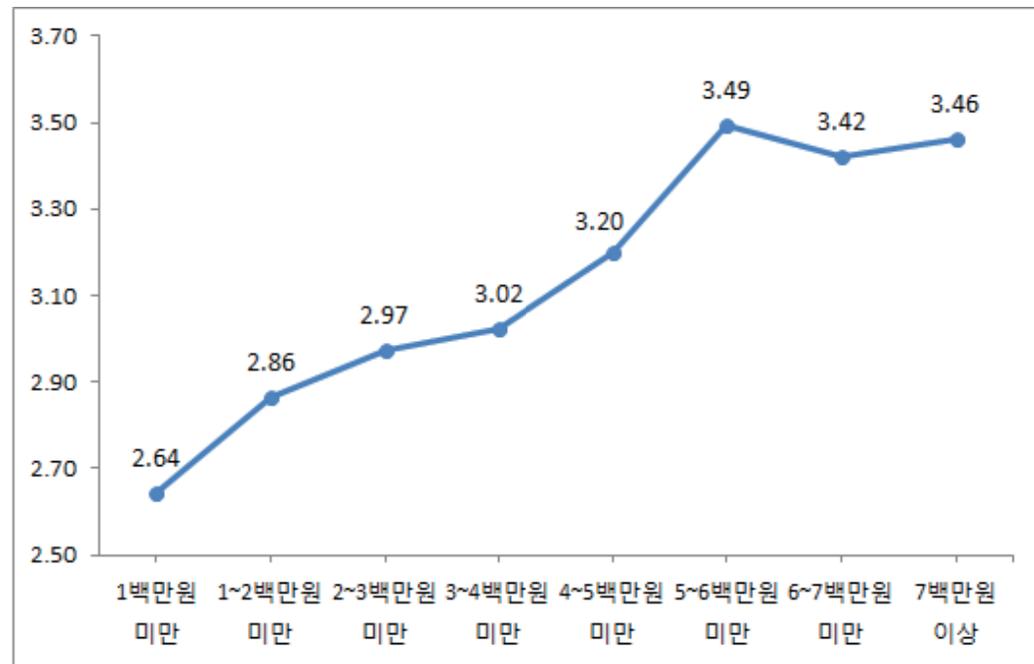
제5절 행복에 미치는 영향

1. 소득과 행복의 관계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은 단일 시점에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지만, 시계열적으로는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증가하고 나면 더 이상 행복이 증가하지 않거나 증가하더라도 그 수준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아래 <그림 5-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보다는 높은 경우에 행복도²³⁾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가구소득이 ‘5~6백만 원 미만’ 이상부터는 더 이상 행복도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이 수원시의 소득과 행복관계에는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해의 조사결과만으로는 수원시 소득불평등도와 행복의 관계가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과 맞아 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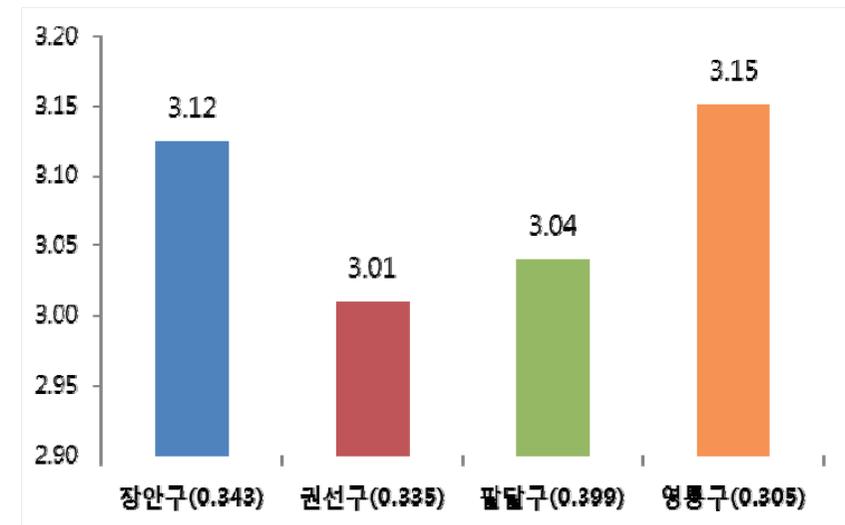
<그림 5-11> 소득수준별 행복도(2015)

23) 삶에 대한 만족도는 2015년 수원시 사회조사 25번 문항(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의 선택지(①매우 만족, ②약간 만족, ③보통, ④약간 불만족, ⑤매우 불만족)에 만족도가 높은 순서대로 5~1점씩 부여하여 전체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2. 소득격차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소득격차와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일관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 사용한 2015년 수원시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행정구(區)별 행복도의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 <그림 5-12>와 같이 소득불평등이 가장 낮은 영통구의 행복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순으로 도출되어 소득불평등이 행복도와는 정확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행복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12> 행정구(區)별 행복도(평균)(2015)

<표 5-7> 행정구(區)별 행복도(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과 표준편차(2015)

| | N | 평균 | 표준편차 |
|-----|-------|------|------|
| 장안구 | 844 | 3.12 | 0.86 |
| 권선구 | 1,074 | 3.01 | 0.74 |
| 팔달구 | 644 | 3.04 | 0.84 |
| 영통구 | 919 | 3.15 | 0.81 |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불평등의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사회전체에 심각한 계층갈등을 유발시키며 이는 전반적인 사회적 불만으로 확대되어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대립과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는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며 그 중 소득불평등은 소득자체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변수들과 결합하여 삶의 질 문제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 문제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추진되었다.

측정의 한계는 있지만 수원시 4개구의 각 구(區)별 지니계수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지니계수를 소득불평등의 지표로 활용하고 이 지표와 환경, 건강, 정치활동, 교육, 행복도 등의 조합이 시민들의 삶속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고 도출된 결론을 통해 향후 수원시의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소득분배율>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60~70년대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용구조 변화와 함께 꾸준히 상승하여 1996년에는 62.4%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0년에 57.8%까지 하락한 후, 2016년에 다시 64%까지 상승했다.

산업구조가 농업 중심에서 광공업 중심으로 전환되던 1970년대에는 낮은 수준에 머물던 노동소득분배율이 1970년 40.1%, 1980년 50.6%, 1996년 62.4%, 2000년 57.8%를 기록하다가 2009년에는 61.9%를 기록하여 외환위기 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외환위기 전후의 소득집중도>

1979년부터 2010년²⁴⁾까지 상위 0.01%부터 10%에 이르는 소득계층별 소득 비중을 살펴보면, 1997년 이전까지 상위소득계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8년에는 잠시 하락 후 1년 만에 증가세에 돌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4) 자료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정리된 자료로 1986년부터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다가 1995년부터 다시 실리게 되어, 부득이하게 공백 기간 동안의 자료는 제외되었다.

2010년에 전체 20세 이상 인구 1인당 평균소득이 1,638만원일 때, 상위 1%(약 39만 명)의 소득비중은 11.9%이고, 평균소득은 전체 평균의 11.9배인 1억 9,553만원이 된다. 상위 0.01%의 경우에는 소득비중이 1.67%이고, 평균소득이 전체의 167배인 27억 3,80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우리나라 소득집중도 추이를 살펴보면, 1986년부터 1994년까지 공백은 있었으나 동일 기간의 종합소득 추이 등을 비추어볼 때 소득집중도에 큰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1997년 7%로 유지되다 1998년에 잠시 주춤했으나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0년에는 11.93%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상위계층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득불평등과 환경〉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과도하게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고소득층의 사람들은 국내 자원의 보호보다 외국 투자를 선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모두의 환경을 악화시키게 되므로 소득불평등이 환경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유한 사람이 환경 보호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환경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에 더 큰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불평등이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시키는 반면에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기도 하며, 동시에 개선시키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OECD국가와 비 OECD국가를 분리하여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소득불평등과 건강〉

소득불평등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군소지역단위보다는 광역단위로 측정단위가 변환되어야 한다. 소득불평등도와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개인의 소득, 성별, 직종, 흡연, 비만 등 개인 특성 변수를 고려한 후 분석한 결과, 소득 분포 상의 불평등 정도가 개인의 건강 수준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건강형평성 수준을 측정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건강 불평등도를 지수화하여 개인 소득과 건강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약 30%정도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건강형평성 지수

가 비례한다고 분석하였다.

윌킨슨 가설(Wilkinson Hypothesis)²⁵⁾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토대로 소득 불평등이 개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이 국민 건강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과 교육〉

소득불평등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과 선별이론(screening theory)이 있다. 인적자본이론은 교육을 사람에 대한 투자행위로 보고 교육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는 높은 임금소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력별 임금격차가 학력별 생산성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선별이론은 교육이 능력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신호(signal)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즉, 노동시장에서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은 경우, 교육은 개인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능력에 따라 쉽게 왜곡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가정환경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이나 교사의 질과 같은 요인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수준, 즉 학업 성취력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오랜 명제이다.

소득불평등은 사교육비로 연결되고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교육격차의 원인이 된다는 실증연구들이 존재한다. 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소득계층 간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점차 확대되었음을 발견했다.

〈소득불평등과 주민참여〉

소득불평등과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두 가지 상반된 견해로 나누어진다. 상대권력이론(relative power)의 옹호자들은 소득불평등이 정치참여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갈등이론(conflict theory)의 지지자들은 소득불평등이 정치참여를 자극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권력이론은 경제적 자원이 정치권력의 원천이며, 부유한 사람은 더 큰 정치권력에

25)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접근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확대될수록 정치적 자원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1인 1표(one person, one vote)’가 ‘1불(\$) 1표(one dollar, one vote)’로 변질되어 정부정책이 부유한 사람들의 이익에 더욱 부합하는 방식으로 채택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은 정치과정을 통해 좌절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참여에 소극적이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갈등이론은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정치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불평등이야말로 갈등 유발에 가장 효과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유권자들은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과 신념을 지키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소득불평등과 정치참여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소득불평등이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불평등과 행복도〉

경제학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소득함수로 이해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개인이나 국가의 소비능력이 향상되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개인, 가계, 그리고 국가의 행복이 증가한다고 가정해 왔다. 그러나 상대소득가설은 소득의 단순한 증가가 행복의 증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소득을 기반으로 한 행복은 개인의 상대적 위치에는 변함없기 때문에 소득 향상이 행복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소비규범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시점(cross-section analysis)에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지만,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도달한 후에는 소득이 계속 증가하더라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다.²⁶⁾ 이 연구를 계기로 경제학에서는 행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자리 잡게 되고, 행복경제학(Economics of Happiness)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 중국, 칠레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일인당 실질국민소득이 두 배가 되던 해에 한국은 삶의 만족도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중국과 칠레는 오히려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스털린의 역설과 같이 준거집단과 비교한 상대소득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12년 지니계수를 토대로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불평등간에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입증했다.

제2절 결론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고, 환경보호에 대해 더 큰 지불의사를 갖는다는 주장을 토대로 수원시 4개구(區)의 지니계수와 환경보호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앞서 도출한 수원시 4개 행정구(區)의 지니계수 결과 값은 팔달구,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수도 시민 실천운동 참여의사와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뚜렷한 관계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각 구(區)별 조사응답자 중 환경운동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²⁷⁾은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14년 조사 결과에서는 권선구, 장안구, 영통구, 팔달구의 순으로 환경보호활동 참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과 환경운동 간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니계수는 소득수준에 대한 결과 값이 아니고 상대적 소득격차에 대한 결과 값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수원시민의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환경수도실천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뚜렷이 관찰되었다. 조사대상 개수가 4개이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조사의 연도별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매년 꾸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시민들의 소득불평등과 건강 간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우선 2014년도 수원시 사회조사²⁸⁾를 이용해 행정구(區)별로 주민들의 주관적 건강상태²⁹⁾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불평

27) 환경보전 관련 봉사활동 참여 비율은 2015년 수원시 사회조사 27-2번 문항(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마을 청소, 방범 활동 등))의 연간 참여횟수에 대해 1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수를 구(區)별 총 응답자 수로 나누어 그 비율(%)을 도출하였다.

| | 영통구 | 권선구 | 장안구 | 팔달구 |
|---------------------|------------|------------|------------|------------|
| 환경보전 봉사활동 참여자 (명/%) | 35 (3.81%) | 21 (1.96%) | 32 (3.79%) | 16 (2.48%) |
| 전체 응답자 수 (명) | 919 | 1,074 | 844 | 644 |

28) 2015년도 수원시 사회조사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를 묻는 문항이 없어, 2014년 사회조사의 9번 문항(귀하는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의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9)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는 건강지표의 하나로 미래 사망률 예측에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 주관적

26) 이와 같이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가 단층 분석과 시계열 분석 간에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현상을 ‘이스털린 역설(The Easterlin Paradox)’ 이라고 한다.

등도가 낮은 영통구와 권선구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장안구와 팔달구에 비해 더 좋은 것으로 조사³⁰⁾되었다.

그러나 소득격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강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소득불평등과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수원시 전체적으로는 고등학교 재학·졸업자의 비중이 가장 크고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4년제 미만),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구(區) 중에서는 장안구가 수원시 전체와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나머지 구(區) 역시 고등학교 재학·졸업자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통구만 유일하게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졸업자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수원시 행정구(區)별 학력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학력수준은 영통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의 크기를 통해 각 구(區)의 교육격차를 가늠해볼 수 있는데, 표준편차가 가장 작은 곳은 권선구였으며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순이었다. 결과에서는 소득불평등과 교육격차 간의 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장안구와 팔달구의 학력수준에 대한 표준편차가 큰 것으로 보아 일정부분 관계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소득격차와 사교육비 지출격차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본 연구는 사교육비 지출비용 대신 사교육 참여율을 통해 양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수원시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행정구(區)별 사교육 참여율³¹⁾을 살펴본 결과, 영통구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격차가 아닌 사교육 참여율을 변수로 설정한 것이므로 소득격차와 교육 격차 간의 관계를 쉽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소득불평등과 시민들의 정치참여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제6회 시·도지사선거(2014년 6월)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4월)의 투표율³²⁾을 변수로 사용하였고 주민참여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수원시 사회조사 결과에서 2014년 정당 활동 참여도,

2015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³³⁾를 활용하였다.

2014년과 2016년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영통구,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의 순으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영통구(0.305)의 투표율이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불평등이 가장 큰 팔달구(0.399)의 투표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권선구(0.335)와 장안구(0.343)를 볼 때 소득불평등과 투표율 간에는 별다른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역 주민의 연령 및 신·구도심 등의 지역적인 특징이 투표율을 좌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당(정치단체)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적극 참여함’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을 각 행정구(區)별로 살펴보면, ‘적극 참여함’의 응답자 비율이 팔달구, 영통구, 장안구, 권선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팔달구의 경우 앞선 선거의 투표율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봉사활동 참여율의 경우에는 소득불평등이 낮은 영통구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고, 권선구와 장안구의 참여율이 15.5%로 동일했으며, 팔달구가 15.1%로 낮게 나타났다.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영통구의 참여율이 11%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니계수와 같은 상대적 소득상태보다는 절대적 소득의 규모가 사회참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봉사 등의 사회참여활동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과 행복도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론은 이스털린의 역설(The Easterlin Paradox)이다. 일정 시점까지는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수준에서부터는 더 이상 행복이 증가하지 않거나 증가하더라도 그 수준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보다는 높은 경우에 행복도³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평균가구소득이 ‘5~6백만 원 미만’ 이상부터는 더 이상 행복도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 이스털린의 역설(The Easterlin Paradox)이 수원시의 소득과 행복관계에는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샘플 수가 적어 이스털린의 역설(The Easterlin Paradox)을 입증했다고

33) 봉사활동은 유재원(2000), Costa&Kahn(2003), 현승숙·금현섭(2011) 등의 선행연구에서 주민의 사회참여 유형 중 하나로서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Costa&Kahn(2003)은 봉사단체가 지역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행동으로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34) 삶에 대한 만족도는 2015년 수원시 사회조사 25번 문항(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의 선택지(①매우 만족, ②약간 만족, ③보통, ④약간 불만족, ⑤매우 불만족)에 만족도가 높은 순서대로 5~1점씩 부여하여 전체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건강상태는 조사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병원 임상기록과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혜련 외, 2004; 강영주·정광호, 2012)

30) 각 행정구별 주관적 건강상태는 2014년 수원시 사회조사의 9번 문항의 선택지인 ‘①매우 좋다, ②좋은 편이다, ③보통, ④나쁜 편이다, ⑤매우 나쁘다’에 각각 5, 4, 3, 2, 1점씩 부여한 후, 이를 각 행정구(區)별로 평균값으로 도출하였다.

31) 2014년 수원시 사회조사에서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총 451개 가구 중에서 자녀들 중 한 명이라도 학업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사교육 참여율을 도출하였다.

32) 본 연구에서의 지니계수 측정 시점은 2015년이지만 당해연도에 투표율을 활용할만한 선거가 없어 2015년의 바로 직전·후인 2014년 제6회 시·도지사선거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을 활용하였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별로 살펴보면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순으로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불평등 보다는 절대 소득의 순위가 행복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왔다. 자료 구득의 제한적 여건으로 인해 지니계수의 산출 및 정확한 상관관계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했지만, 향후 수원시 사회조사 자료를 토대로 매년 수원시의 지역별 절대소득, 상대소득(소득불평등)을 산출하는 것이 소득과 시민의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환경, 건강, 사회참여, 행복도 등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꾸준히 분석해야할 당위성을 발견했다.

| 참고 문헌 |

<국문 자료>

강영주·정광호(2012),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보, 46(4), pp.256-291.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제15권 제3호.

김기승(2012), 근로소득분배율 분석과 개선 방향, 한국노사관계학회.

김낙년(2012),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분석, 18권 3호, pp.75-114.

김낙년(2013), 식민지기 조선의 소득불평등, 1993-194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사학회, 55권, pp.249-279.

김낙년(2015), 불평등의 경제사: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경제사학, 58호, pp.105-145.

김낙년(2016),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한국경제의 분과, 22권 3호, pp.147-208.

김낙년·김종일(2013),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과, 19권 2호, pp.1-50.

김진일(2013),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소득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칼레츠키안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사회경제평론, 42호, pp.119-137.

김태형·권세원·이윤진(2012), 서울시민의 개인 및 지역 효과에 의한 건강불평등, 서울도시연구, 13권 3호, pp.15-35.

김현호(2007), 불평등지수와 다극화지수, 과학기술정책, 164호, pp.74-82.

노경아(2016), 지역 내 소득불평등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라부아(2016), 포스트케인스학과 경제학 입문, 후마니타스.

라부아·스톡해머(2012), 임금주도 성장론: 개념 이론 및 정책, 국제노동브리프, 2012년 12월호, pp.3-14.

밀라노비치(2017),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21세기북스.

박강우(2015),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의 총수요 효과: 대안 지표 및 OECD 국가와의 비교, 산업경제연구, 28권 5호, pp.1813-1845.

박만섭(2012), 경제학 더 넓은 지평을 향하여, 이슈투데이.

박명호(2016),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정, 한국경제포럼, 9권 2호, pp.55-77.

박소현·안영민·정규승(2013), 중산층 측정 및 추이 분석, 통계청.

스티글리츠(2013), 불평등의 대가, 열린책들.

스티글리츠(2017), 거대한 불평등, 열린책들.

신동균·전병유(2005), 소득 분포의 양극화 추이, 노동경제논집, 28권 3호, pp.77-109.

엣킨슨(2015), 불평등을 넘어, 글항아리.

우자와 히로후미(2015), 경제학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파라북스.

유경준(2007),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

윤형호·임병인(2012), 서울시의 권역 간 소득격차와 소득불평등 추이 분석(2001~2009년), 서울 도시연구, 13권 2호, pp.1-15.

이병희(2016),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구소득 불평등 관계, 산업노동연구, 22권 2호, pp.79-106.

이병희·황덕순·홍민기·오상봉·전병유·이상현(2014),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한국노동연구원.

이연우(1994), 소득분배론,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이현영(2015),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과 대응방안, KDB산업은행.

임병철(2012), 충남지역의 소득불평등 측정 및 추이분석, 충남경제, 5호, pp.12-16.

전병유(2015), 요소소득분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제발전연구, 21권 4호, pp.77-98.

전병유(2016), 한국의 불평등 2016, 페이퍼로드.

조복현(2015), 자본축적과 유효수요, 소득분배 : 마르크스와 칼레츠키, 한국사회경제학회 여름학술대회 자료집, pp.1~21.

주상영(2013),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 경제발전연구, 19권 2호, pp.151-182

피케티(2014),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통계청(2015),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한국노동연구원(2016), 2016 KLI 노동통계.

허석재(2015), 소득 불평등과 정치참여의 양식, 한국정당학회보, 14(3), pp.41-67.

현승숙·금현섭(2011), 지역 내 소득불평등도에 따른 주민참여, 한국행정학고, 45(2), pp.159-186.

홍민기(2016), 불평등 지표 개선연구,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한국노동연구원.

황규선·현영남(2003), 경제성장과 지역경제력 불평등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쿠즈네츠 가설의 검증, 통계연구, 8권 2호, pp.91-110.

<영문 자료>

Duclos, J.Y., Esteban, J.M. & Ray, D. (2004)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Vol.72, No.6, pp.1737-1772.

Esteban, J.M. & Ray, D. (1994),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Vol.62, No.4, pp.819-851.

Esteban, J.M., Gradin, C. & Ray, D. (2006), Extensions of a Measure of Polariz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he income distribution of five OECD countries, *Th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Vol.5, No.1, pp.1-19.

Graziani, A. (2003) *The Monetary Theory of P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obson, M. & Occhino, F. (2012) Labor's Declining Share of Income and Rising Inequality, *Economic Commentary*, Sep.

Kalecki, M. (1971) *Selected Essays on the Dynamics of the Capitalist Economy 1933-1970*(조복현 역, 『자본주의 경제 동학 에세이 1933-1970』, 지식을만드는지식, 2010).

Kalecki, M. (1990) *Essay on business cycle theory, Capitalism, Business Cycles and Full Employment*, Vol.1.

Piketty, T. & Saez, E. (2003)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3-1998,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8, No.1, pp.1-39.

Rowthorn, B. (1981) Demand, Real Wages and Economic Growth, *Thames Papers in Political Economy*, pp.1-39.

Wolfson, M.C. (1994) When Inequality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4, No.2, pp.353-358.

Abstract

A Basic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income Inequality in Suwon

It has been increasing that social interest in income inequality and income polarization in Korea since the IMF financial crisis. In recent years, the Gini coefficient of Korea has been denoted between 0.2 and 0.3. It is lower than that of OECD countries' Gini coefficient, but the Gini coefficient of Korea has been increased sharply in the long-term time series since 1990.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distribution ratio of labor income to have improved steadily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 bu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way of treating the income of self-employed persons is far from reality. In addition, it has been raised problems that the theoretical issues on the measurement of the inequality indicators arising from the problems of under representation of high income earners and the lack of report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 has been a worldwid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asset inequality beyond income inequality.

The authors, such as Tomapiquetti, argued that asset inequality accumulated in capitalism is the cause of income inequality. Furthermore, it has increased that the economic inequalities affect on the various inequalities in life such as health, education, environment, leisur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issue of inequality is a global issu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inequality in local level.

This paper would contain theories and methods of maintaining inequality in mainstream and non-mainstream economics, also analyze that aggravating the 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results from the rapid decline of the self-employ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And this paper would inquire into the distributional implications of the Gini coefficient

are discussed in more detail.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Gini coefficient in Suwon city based on the social survey of Suwon city in 2014 ~ 2015 years. Examining the proportion of property income and earned income in Suwon city and analyzing its policy implication.

Key words: Gini coefficient, Inequality, Polarization, Suwon city

| 저자 약력 |

조용준

경제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재정경제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naya@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2045 수원시 인구추계 모형 개발 및 예측연구」(2016,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실업률·고용률의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심화연구」(2016, 수원시정연구원)

신지윤

행정학석사

수원시정연구원 재정경제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jyshin@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규제·제도 개선 방안 연구」(201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지적제조사사업 예비타당성분석의 타당성 검토」(2014, 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